

2020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

진상·증여품을 통해서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

- 일시 : 2020. 11. 12. (목)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2호관 현석재 (구 진양현석관)
- 주최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

2020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 인사말

계절의 변화는 여지없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옵니다. 별판의 벼도 황금색으로 변해 머리를 숙이고 있고, 나뭇잎들도 무게를 못 이겨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어느 멋진 날, 본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아젠다인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와 관련하여 “진상·증여품을 통해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주는 고대부터 근세까지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주요 거점의 하나로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굴 등 독특한 지역물품의 진상을 통해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금번 학술발표회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물품의 진상 문제를 염두에 두고, 동유라시아 각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진상·증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본 학술대회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및 성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단장 서인범

진상·증여품을 통해서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

- 일시 : 2020. 11. 12. (목)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2호관 현석재 (구 진양현석관)
- 주최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사회 : 김택경(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13:30~13:50 업무협약식

13:50~14:00 개회사
서인범(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단장)

14:00~14:10 환영사
전영준(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원장)

제1부 발표

사회 : 장창은(제주대학교)

14:10~14:40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품과 교류양상
발표자 : 고수미(탐라문화연구원)

14:40~15:10 고려는 특수했는가? : 몽골제국 부세 체제와 고려
발표자 : 설배환(전남대학교)

15:10~15:30 휴식

15:30~16:00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품목
발표자 : 이승호(경희대학교)

16:00~16:30 조선시대 야교와 어교의 진상과 소비
발표자 : 김병모(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16:30~17:00 근세 동북아시아 해역과 '전복'의 길 : 제주도 진상품 전복과 포작인을 중심으로
발표자 : 임경준(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17:00~17:20 휴식

제2부 종합토론

좌장 : 노대환(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17:20~18:20 전영준(탐라문화연구원)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박연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이승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신경미(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목 차

-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품과 교류양상 1
고수미(탐라문화연구원)

- 고려는 특수했는가? : 몽골제국 부세 체제와 고려 17
설배환(전남대학교)

-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품목 19
이승호(경희대학교)

- 조선시대 아교와 어교의 진상과 소비 35
김병모(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근세 동북아시아 해역과 '전복'의 길 : 제주도 진상품 전복과 포작인을 중심으로 57
임경준(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토론문 73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과 교류 양상

고수미(탐라문화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고려전기 진상과 교류 양상
- III. 고려후기 진상과 성격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탐라에 관한 기록은 진헌과 팔관회 참가를 통해 처음 확인된다. 탐라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925년(태조 8)으로, 11월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는 기사이다.¹⁾ 아마 八關會에 참가하여 방물 등을 進上하고 下賜品을 받았을 것이다. 고려전기 탐라는 외국의 지위로 팔관회를 비롯한 국가행사에 참여하였으면 이는 朝賀儀式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후로 탐라는 1153년까지²⁾ 팔관회 외에도 30여 차례 진헌을 했던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된 후에도 일정 기간 耽羅國의 지위로 고려와 進獻 貿易의 형태로 교류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가 고려의 지방정부로 완전히 복속된 후 탐라에서는 貢賦와 進上이라는 이중적 수취구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반발로 수차례의 民亂이 일어났다. 특히 元 지배기는 원의 직할령이 되어 원에서의 수탈까지 첨가되어 보다 중층적인 수탈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공물 수취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고려 후기에 성행한 ‘私藏庫’와 ‘膳’, ‘禮獻’ 등의 현상은 기존의 貢賦와 더불어 또 다른 수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탐라는 고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進上의 양상과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후기 탐라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반란은 과도한 貢賦와 지방관과 토호세력 간 갈등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고, 여기에 탐라가 元의 직할령이 되면서 고려 정부와 元과 탐라, 이후 明과의 관계가 얽혀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탐라의 進上和 관련된 기록들을 고찰하여 양상의 변화와 성격을 살피는 과

1) 『고려사』 세가 권 1.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2) 『고려사』 세가 권 18. 1153(의종 7)년 팔관회에 耽羅縣의 명칭으로 方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1105년(숙종 10)에 ‘耽羅郡’으로 편제되었지만 일정 기간 외국의 지위로 진헌 무역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 탐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고려후기 탐라가 지방으로 완전히 편제되었지만 고려말까지 土官 세력은 星主 · 王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³⁾ 따라서 공물 수취와 진상, 지방관과 토관 세력 간의 권력 구조 등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의 갈등상황은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배경 안에서 고려시기 탐라의 진상에 대해, 고려전기 탐라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행해진 진헌 무역의 성격과 고려후기 고려의 지방으로 복속된 후 원 지배기를 거치며 탐라의 진상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교류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⁴⁾

Ⅱ. 고려 전기 진상품과 교류 양상

탐라는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되기 이전에도 탐라와 고려 정부는 938년(태조 21) 탐라국의 太子 末老가 내조하여 星主 · 王子의 爵位를 받으면서⁵⁾ 영속관계가 이루어진다. 탐라의 성주와 왕자의 호칭은 高厚 · 高靑 등 세 형제가 신라의 왕을 만났을 때 신라왕이 큰 아들을 星主, 둘째 아들을 王子, 막내아들에게 都內의 지위를 주었던 데서 시작되었다.⁶⁾ 탐라국의 성주는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국왕으로써 주변국과 대외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고려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이는 탐라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지위로 팔관회에 참석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이후 1011년(현종 2) 탐라가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내려주기를 청하여 朱記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는 탐라가 고려정부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29년(현종 20) 탐라의 世子 孤烏弩가 來朝한 기록과⁸⁾ 1057년(문종 11) 고유가 고려의 과거시험에서 외국인들이 응시하였던 빈공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한 사례⁹⁾에서 보이듯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후 1105년(숙종 10)에 毛羅를 耽羅郡으로 고쳤으며, 毅宗 때 縣令官이 되었다. 1153년(의종 7) 팔관회에 ‘耽羅縣’으로 진헌한 기록이 있어 1153년 이전 의종 초에 탐라현으로 편제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것 같다. 1211년(희종 7) 고을(탐라)의 石淺村을 歸德縣으로 삼아 주현과 속현의 관계가 되었으며 1216년(고종 3) 다시 ‘耽羅郡’으로 편제, 1220년경 탐라를 ‘濟州’로 邑號를 변경하고 副使와 判官을 파견하였다.¹⁰⁾

물론 이전에도 탐라가 고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 1052년(문종 6) 탐라의 歲貢額으로 굴 100包子를 정하였다는 내용과(표1의 13번)¹¹⁾ 1058년(문종 12) 왕이 탐라에서 배를 만드는 役을 부과하려 하자 그전에도 탐라의 목재와 탐라민들이 바다 건너 寺刹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하며 관료들이 반대하는 기록과(표 1의 18번)¹²⁾과

3) 1404년(태종 4) 濟州 土官의 칭호를 고쳐 星主를 都州官左都知管으로, 王子를 都州官右都知管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권7, 태종 4년 4월 21일 신묘.)

4) 본고에서 고려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시점은 일반적인 시기 구분이 아닌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진상의 성격이 진헌에서 공납의 성격으로 바뀌는 의종대 이후 무인집권기를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1년 12월.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6) 『고려사』 권57, 志11, 地理 2, 耽羅縣.

7) 『고려사』 권4, 世家4, 현종 2년 9월 을유. “乙酉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8)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0년 6월. “六月 癸丑 耽羅世子孤烏弩來朝, 授游擊將軍, 賜袍一襲.”

9) 『고려사』 권8 세가8 文宗 11년 1월. “己丑 以高維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

10) 『고려사』 권57, 志11, 地理2, 탐라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건치연혁.

11) 『고려사』 권7, 世家 7, 文宗 6년 3월 27일. 壬申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1079년(문종 33) 탐라에 파견된 勾當使 尹應均이 夜明珠 2枚를 바쳤다는 기록은¹³⁾ 최소한 1079년 이전에 탐라에 구당사가 파견되어 민정을 살폈으며 이는 당시에 고려후가 탐라에서 생산되는 物産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탐라가 지방정부로 완전히 편입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고려의 蕃國으로 위치하였고 고려와 탐라는 天子와 諸侯의 관계를 표명하였다.

<표 1>은 고려전기 탐라의 進上 사례를 추출한 것으로 34차례의 진헌 및 방물을 바쳤던 기록이다.

【표 1】 고려 전기 탐라와의 교류 사례¹⁵⁾

회	시 기	내 용
1	925년 11월 (태조 8)	11월 기축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2	1012년 8월 7일 (현종 3)	임인에 탐라인이 와서 큰 배 2척을 바쳤다.
3	1019년 9월 9일 (현종 10)	임술에 重陽節이었으므로 邸館에서 송과 탐라, 흑수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4	1021년 7월 3일 (현종 12)	병자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5	1022년 2월 9일 (현종 13)	기유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6	1027년 6월 15일 (현종 18)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
7	1029년 7월 1일 (현종 20년)	탐라에서 방을 바쳤다.
8	1030년 9월 1일 (현종 21)	9월 신해 초하루에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
9	1034년 11월 4일 (정종 원년)	팔관회를 열었는데, 神鳳樓 나아가 백관에게 술과 음식[醢]을 하사하였으며, 저녁에 법왕사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大會 때 또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 공연을 관람하였다. 東京·西京·東路兵馬使·北路兵馬使·4都護·8牧에서 각각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고, 宋의 商客과 東蕃·西蕃·耽羅國에서 또한 方物을 바쳤다. 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賜坐]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이후로 상례로 삼았다.
10	1036년 11월 15일	11월 기축에 팔관회를 열자, 송 상인과 동여진, 탐라에서 각각 방

12)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2년 8월.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13)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7년 1월. “己丑 禮賓省, 據于羅勾當使申狀奏, “星主游擊將軍加良仍死, 母弟陪戎副尉高福令繼之, 賙贖之物, 宜準舊例支送.” 制可.”

14) 944년(성종 13) 처음으로 압록도에 구당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8월) 이후 1011년(현종 2) 탐라가 州郡의 例에 따라 朱記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어(『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년 9월) 아마 1011년 이후 탐라에도 구당사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5) <표 1>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정종 2)	물을 바쳤다.
11	1043년 12월 27일 (정종 9)	12월 경신, 毛羅國 星主 游擊將軍 加利가 아뢰기를, “王子 豆羅가 최근에 죽었는데, 하루도 후계자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號仍을 왕자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이어서 방물을 바쳤다
12	1049년 11월 13일 (문종 3)	11월 임인에 탐라국 振威校尉 夫乙仍 등 77인과 北女眞 首領 夫舉 등 20인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3	1052년 3월 27일 (문종 6)	임신에 三司에서 아뢰기를,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을 100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항구한 제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14	1053년 2월 7일 (문종 7)	탐라국 왕자 殊雲那가 아들 陪戎校尉 古物 등을 보내어 우항·우각·우피·나육·비자·해조·구갑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이 왕자에게 中虎將軍을 除授하고 公服·은대·채단·약물을 하사하였다.
15	1054년 5월 (문종 8)	기묘에 … 탐라에서 使者을 보내어 태자를 책봉하여 세운 것을 하례하였으므로 사자 13인에게 관직을 주고 뱃사공과 수행원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16	1055년 2월 20일 (문종 9)	무신에 한식이므로 송 상인 葉德寵 등 87인은 娛賓館에서, 黃拯 등 105인은 迎賓館에서, 黃助 등 48인은 淸河館에서, 탐라국 首領 高漢 등 158인은 朝宗館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17	1056년 2월 27일 (문종 10)	기유, 耽羅國에서 방물을 바쳤다.
18	1058년 8월 7일 (문종 12)	을사에 宋의 상인 黃文景 등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재목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宋과 통하려고 하니,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 타는 것으로 집안을 경영하고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에는 목재를 베어 바다 건너 사찰을 새로 창건하여 피로가 이미 쌓여 있으므로, 지금 또 이 일로 거듭 괴롭히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왕이 이를 따랐다.
19	1062년 2월 27일 (문종 16)	을사, 탐라에서 高叶 등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0	1062년 10월 6일	겨울 10월 기묘에 탐라성주 高逸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21	1063년 3월 (문종 17)	신해에 耽羅星主 豆良이 來朝하였다. 특별히 明威將軍을 제수하였다.
22	1068년 3월 (문종 22)	정묘에 탐라성주 游擊將軍 加也仍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고려사절요에는 2월로 기록됨)
23	1073년 11월 12일 (문종 27)	신해에 팔관회를 열고 神鳳樓에서 觀樂하였다. 다음 날 대회일에 大宋·黑水·耽羅·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
24	1077년 12월 1일 (문종 31)	탐라국에서 方物을 바쳤다.
25	1079년 11월 8일 (문종 33)	임신에 탐라구당사 윤응균이 큰 진주 두 매(枚)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하였다.
26	1086년 2월 7일 (선종 3)	병인에 毛羅의 游擊將軍 加於乃 등이 와서 축하하고 方物을 바쳤다.

	1086년 2월 권88 열전 권제1 후妃	문종 후비 인예순덕태후 이씨 선종 3년 2월에 책봉되어 太后가 되자 각 道에서 모두 賀禮하는 表文을 올렸으며 州縣에서 아울러 바친 베가 무려 100,000여 匹이 었다. 耽羅에서도 또한 來賀하면서 토산물을 바쳤다.
27	1092년 2월 26일 (선종 9)	기묘에 탐라의 성주 懿仁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자, 定遠將軍을 더 하고 衣帶를 하사하였다.
28	1094년 6월 19일 (선종 11)	무자에 宋의 都綱 徐祐 등 69인과 毛羅의 高的 등 194인이 와서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29	1095년 7월 20일 (현종 원년)	계축에 毛羅의 高勿 등 8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0	1096년 9월 12일 (숙종 원년)	경자에 毛羅 星主가 사람을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31	1100년 11월 16일 (숙종 5년)	무인에 宋 상인과 毛羅 및 女眞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3	1101년 11월 14일 (숙종 6)	송의 상인과 탐라 및 東北蕃의 酋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4	1153년 11월 15일 (의종 7)	경자에 耽羅縣의 徒上 仁勇副尉 中連과 珍直 등 12인이 와서 방물 을 바쳤다.

탐라국 사신들은 고려의 연중 행사인 팔관회와 연등회 등 국가행사에 참여하여 진헌 무역을 행하였다. <표 1>에서 탐라에서 진헌했던 방물의 종류를 보면 선박, 굴, 牛黃, 牛角(쇠뿔), 牛皮(쇠가죽), 螺肉, 비자, 海藻, 龜甲, 진주, 말 등이며 제주의 특산물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고려는 公服, 銀帶, 綵段, 藥物 등을 하사하였다. 탐라는 외국의 지위로 方物 또는 土物을 바치면 고려는 下賜品을 내려주어 대외적으로 고려와 탐라는 天子와 諸侯로서 朝貢 관계를 맺었다. 1054년(문종 8) 탐라국이 고려에 使를 파견하여 태자의 冊立을 축하한 일¹⁶⁾, 1055년(문종 9) 한식 때 宋商은 娛賓館에, 탐라국 首領은 朝宗館에서 접대한 기록¹⁷⁾에서도 천자와 제후국 간의 조공 관계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八關會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팔관회는 태조가 ‘與民同樂’을 강조하며 訓要十條에 매년 실행할 것을 명시하여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례이다.¹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 안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축제로 이 과정에서 ‘고려인’으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의례가 진행되었고, 각종 禮樂과 百戲歌舞는 고려 문화의 결집체로 고려 문화를 유지해 가는 핵심적 장치였다. 또한 팔관회의 儀禮 안에서 외국인 조하의식에는 송·요·금·탐라·일본 등의 참가국이 고려를 중심으로 고려의 질서체계 안에 존재한다는 고려의 대외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은 팔관회의 조하의식을 통해 구현되었다. 즉 고려는 주변국과의 朝賀의식을 통해 天子와 諸侯 관계를 설정하여 天下觀을 드러냄과 동시에 진헌과 하사를 통해 진헌 무역을 실행하였다.¹⁹⁾ 더불어

16) 『고려사』 권7, 世家7, 문종 8년 5월. “五月 己卯 … 耽羅國遣使, 賀冊立太子, 加使者十三人職, 梢工儻從, 賜物有差.”

17) 『고려사』 권7, 世家7, 문종 9년 2월. “戊申 寒食, 饗宋商葉德寵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清河館,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18) 『고려사』 권2, 世家2, 太祖 26년. 팔관회는 헤량의 건의로 불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 551년(진흥왕 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전물군사를 위한 위령제로, 護國적 성격을 가진 국가행사로 실행되었으며, 궁예는 지역의 토속신들을 위한 제사의식으로, 고려는 국가축제로 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고려말까지 이어졌다.

19)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1쪽.

어 팔관회는 국제무역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팔관회는 서경에서 10월 15일 전후로, 개경에서 11월 15일 전후로 사흘 동안 개최되었다. 전국의 지방관들은 공물과 賀表를 가지고 참가하였고, 외국의 상인들 또한 使臣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팔관회는 대외무역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순기능도 갖게 되었다.²⁰⁾

고려는 동아시아의 각국을 대상으로 해상과 육로를 통해 활발하게 대외교류를 펼쳤다. 개경의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를 중심으로 탐라를 비롯한 송·일본·거란·여진·서역의 국가들과 교역하였으며 그들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고려에 내항 후 팔관회를 거치고 겨울철 북풍을 타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려를 찾았다.²¹⁾ 고려는 이런 국제적 무역 관계를 이용하여 1034년(정종 원년)부터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을 상례화 시켰다. 탐라도 역시 宋과 東·西蕃과 같은 외국의 지위로 팔관회의 朝賀儀式과 宴會에 참여하고 있다.²²⁾ 이후 민간무역에 종사하는 외국 상인들이 경제사절단의 지위로 팔관회에 참석하였으며 탐라 또한 팔관회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무역을 진행하였다. 탐라가 처음 『고려사』에 등장하는 시기가 925년(태조 8) 11월인데 아마 팔관회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것이다.²³⁾ 각국의 상인들은 고려의 왕실이나 관청, 관료들을 상대로 방물과 진귀한 물품을 바치고 임금의 하사품을 받아 가는 진헌 무역의 형태로, 탐라의 팔관회의 참여는 蕃國으로의 지위 유지와 진헌을 통한 무역의 한 방편이었으며 고려 황제의 德化를 받는 조공국의 사자로 예우받으며 고려를 기반으로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였다.²⁴⁾ 1153년(의종 7) 이미 耽羅縣으로 복속되었던 시점에도 팔관회에 방물을 진상했던²⁵⁾ 이유도 이러한 고려적 질서 안에 탐라가 속하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무인집권기와 江都期에도 팔관회는 설행되었지만 12세기 후반 元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탐라의 고려 복속과 원의 지배는 進上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Ⅲ. 고려 후기 진상 양상과 성격

1153년(의종 7) 탐라의 팔관회 진상 기록 이후 더이상 탐라국의 지위로 팔관회에 참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탐라는 고려의 縣으로 완전히 복속되었고 外官이 파견되었으며 탐라의 역할은 개경으로 진상할 貢物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다. 탐라군으로 편입되면서 공납이 매 해마다 이뤄지는 상공으로 바뀌고 여기에 지방관의 추가적인 공물 징수는 탐라민들의 공물 부담을 가중시켰다.

문종대 전시과를 완비함으로써 문무양반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문벌귀족사회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이후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고려 사회를 장악해감에 따라 관직 임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지방에서 진출한 신진 세력이 實職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

20) 고수미, 위의 논문, 2014, 14쪽.

21)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54~456쪽.

22) 『고려사』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 八關會. “十一月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翌日, 大會, 又賜醕, 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樂, 後以爲常.”

2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8년 11월.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24) 고수미, 위의 논문, 2014, 17쪽.

25)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7년 11월.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이 걸렸으며 薦擧나 후원의 배경이 없으면 승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인사 청탁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관들은 權貴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지방민들에 대한 수탈은 날로 증가하였다.²⁶⁾ 더불어 무인집권기 과도한 수탈은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였다.

1168년(의종 22) 탐라에서 일어났던 ‘良守의 亂’ 또한 그런 선상에서 볼 수 있다.

① 정축에 탐라안무사 趙冬曦가 入覲하였다. 탐라까지는 험준하고 멀어 攻戰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다 토지가 기름져서 나라의 재정에 충당되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貢賦가 煩多하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즐거워하였는데 근자에 들어와 관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도적의 우두머리 良守 등이 모반하여 수령을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왕이 조동희에게 명하여 持節로 宣諭하게 하자 적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양수 등 두 명과 그 무리 5인을 참수하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곡식과 布帛을 내려 이들을 위무하였다.²⁷⁾

‘良守의 亂’은 1153년 탐라의 팔관회 진헌 기록 후 처음 보이는 기사이다. 탐라가 고려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된 후 처음 발생한 민란이자 탐라의 지위가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중양에서 파견된 관리의 불법을 이유로 良守가 난을 일으켜 수령을 내쫓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과중한 부세 부담과 지방관과 토착 세력 간의 갈등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탐라가 지방으로 편제되면서 과중한 공물 수취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난이 정리된 후 탐라인들이 최척경을 다시 탐라현령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²⁸⁾ 이를 반증한다.

1234년(고종 21) 濟州判官으로 파견되었던 金堦는 ‘당시 제주의 경작지 경계가 불분명해 이웃의 경작지를 침범하기도 하고 지방 세력가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는 등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토지 소유의 경계로 돌을 이용해 담을 쌓도록 하였다’는 기록²⁹⁾으로 보아 당시 지방관이 제주의 토지와 물산 등을 조사하여 編籍을 만들어 중양에 보고하고 관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중양정부의 과도한 공물 수취는 탐라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토호세력과 지방관의 대립을 불러왔다. 고려 후기 문신인 鄭以吾가 朴德恭을 任地(탐라)로 보내는 序에, “그 풍속이 야만스럽고 거리도 먼 데다가 屋主·王子·土豪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使役을 시켜, 그것을 人祿이라 하여 백성을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³⁰⁾는 글을 보내는 상황으로 보아 탐라의 토호세력들과 지방관의 대립은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다.³¹⁾

③ 壬戌에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과 최의가 기르던 胡馬를 문무 4품 이상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³²⁾

26)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교육』 25집, 동국대학교 역사교육연구소, 2017, 114~129쪽.

27)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2년 11월. “丁丑 耽羅安撫使趙冬曦, 入覲.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 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 官吏不法, 賊首良守等, 謀叛, 逐守宰. 王命冬曦, 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 餘皆賜穀帛, 以撫之.”

28) 『고려사』 권99, 列傳12, 崔陟卿.

2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풍속조.

3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풍속조.

31) 이는 고려 정부가 탐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리고 원 지배기 탐라가 원의 직할령이었던 상황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32)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5년 5월. “壬戌 以濟州貢馬及崔堦所畜胡馬, 分賜文武四品以上.”

④ 김지석은 世係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高宗 말에 濟州副使가 되었다. 고을 풍속에 남자 나이 15세 이상이면 해마다 콩 한 섬[斛]을 바치고 관아의 서리 수백 인은 해마다 말 1필씩을 바치며, 副使와 判官이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런 까닭에 수령들은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를 쌓았다. 井奇·李著 두 사람은 일찍이 제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모두 뇌물을 받고 파면되기도 했다. 金之錫이 제주에 부임하자 곧 콩·말의 공납을 면제시키고 청렴한 관리 10인을 뽑아 관아의 서리로 임명하니, 정사가 물처럼 깨끗해져서 서리와 민이 진심으로 감복하였다.³³⁾

⑤ 乙亥, 濟州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4품 이상의 문·무 관리들에게 하사하였다.³⁴⁾

위 ③,④,⑤ 사료들은 탐라에서는 원의 목마장 설치 이전에도 고려 정부에 貢馬를 진상하고 있었고, 비중도 타지역에 비해 컸으며 주요 진상품이 貢馬였음을 알려주며 부정부패가 심했던 상황도 보여준다. ③과 ⑤는 탐라에서 바친 貢馬를 4품 이상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으로 ③은 1258년의 기록이고 ⑤는 1260년의 기록으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고위 관료들에게 말을 하사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이는 탐라에서 진상한 말을 4품 이상의 문무관료들에게 하사하는 선물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탐라에 郡이 설치되고 고려정부로부터 직접 수령이 파견되지만 성주와 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성주와 왕자의 지위를 세습하는 독자적인 토착 세력권을 인정하였으며 공물을 제외한 조세도 개경으로 보내지 않았고 탐라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1153년부터 탐라의 행정단위 서열이 높아져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외관의 급여를 감당해야 했다.³⁵⁾ 이외에도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歲貢으로 콩 1斛을 바치게 하였으며, 아전들에게도 말 1필을 바치게 하여 이를 현령과 현위가 나누어 가졌으며 이로 인해 부를 축적하였음을 ④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감당해야 할 탐라민들의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국가의례를 거행할 때 진상품도 의무적으로 바치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며 탐관오리가 부임할 경우는 세금을 빙자한 수탈이 가중되었다.³⁶⁾ 하지만 최척경의 경우에서 보듯 청렴한 관리 생활을 하였을 때 그 직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굶주림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³⁷⁾, 일반적으로 탐라에 온 관리들을 백성들을 수탈하여 치부하거나 수탈한 재물을 중앙에 바쳐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다.³⁸⁾

1267년(원종 13) 濟州 星主 梁浩가 원으로 가서 왕을 알현하면서³⁹⁾ 원과 탐라의 직접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원 황제는 1268년(원종 9) 5월 고려인과 남인이 남송에서 순풍을 타면 고려에 2~3일 만에 이를 수 있고 일본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⁴⁰⁾ 그해 10월에 고려에게 일본정벌을 위해 병력 1만, 선박 1,000척, 그리고 탐라에서 선박 100척

33) 『고려사』 권121, 列傳34, 良吏 김지석. “金之錫, 未詳其世係. 高宗末, 爲濟州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 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以故守宰雖貧者, 皆致富. 有井奇·李著二人, 嘗守是州, 俱坐贓免. 之錫到州日, 卽蠲貢豆·馬, 選廉吏十人, 以充衙吏, 政清如水, 吏民懷服.”

34)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7월. “乙亥 以濟州貢馬, 賜東西四品以上.”

35) 인종 때의 外職 邑祿에 따르면, 탐라현령의 녹봉은 연 26석 10두, 현위는 20석이다.

36)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7년 11월. “濟州星主來見. 遣正言玄錫以星主如蒙古.”

37) 『고려사』 권99, 列傳12, 崔陟卿.

38)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교육』 25집, 동국대학교 역사교육연구소, 2017, 133쪽.

39) 『고려사절요』 권18. “濟州星主來見 遣正言玄錫以星主如蒙古”

40) 여원관계사연구팀, 『역주 원고려기사』, 선인, 2008, 149쪽.

을 만들 것과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을 조사할 관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¹⁾ 그리고 1272년(원종13) 삼별초를 평정하기 위해 흑산도와 탐라의 바닷길을 조사하여 만든 지도를 바치자 먼저 탐라를 취하라고 하며 탐라의 선박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²⁾ 이는 원이 탐라에 대해 이미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주로 남송과 고려, 일본을 잇는 중간기지로, 군사적 요충지로 파악하고 있었다. 삼별초를 진압한 후 원은 고려와 달리 탐라를 직접 통치하려 하였다. 원의 탐라에 대한 직접 통치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탐라는 원 지배기 원의 직할령이었던 100여 년간 고려와 원에 이중으로 귀속되어 양국이 파견한 지방관과 군인들이 상당수 오고 갔다. 탐라는 일본과 남송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 원은 탐라를 일본정벌의 전진기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물자수탈을 위한 토제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일본정벌이 실패로 끝나자 물자수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목마장을 설치해 황실 목장으로 운영하였다. 이제 탐라민들은 원과 고려 정부 양쪽에서 이중으로 수탈을 당했다.⁴³⁾

원은 삼별초 토벌 직후 1273년(원종 14) 탐라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⁴⁴⁾ 아울러 탐라인 총관도 함께 임명하여⁴⁵⁾ 탐라민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원의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1273년 12월 ‘제주 백성 10,230인에게 모두 양식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고려정부에 전달해⁴⁶⁾ 탐라의 거주민 진휼을 고려정부에 전가하고, 1275년(충렬왕 원년)에는 고려정부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줄 양곡은 탐라에서 징발하게 한 사실⁴⁷⁾ 등이 그 예이다. 원의 탐라 경영은 물자 수탈에 중점이 두어졌고 초기에 탐라 인구를 파악하고 있었다.⁴⁸⁾ 원은 1278년(충렬왕 4)에 나주와 해남 방면에 驛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⁴⁹⁾ 이 지역에 설치된 역참은 한반도 남해안 및 탐라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 체계적인 물자 수탈이 이루어졌으며, 1293년 설치한 ‘水站’ 노선망에 탐라를 포함시켜 조운망 구축지점의 최남단에 탐라를 지정하였다. 이는 탐라가 물자 수탈의 기반으로 활용되었으면 원은 탐라를 일종의 ‘교통 요충지’, ‘교역 거점’으로 운영했음을 보여준다.⁵⁰⁾

【표 2】 원 지배기 탐라의 진상⁵¹⁾

	시 기	내 용
1	1268년 8월	<지원 5년(1268)> 8월, 조서에 이르기를, “경이 崔東秀를 보내어 와서

41)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9년 10월. “庚寅 蒙古遣明威將軍都統領脫朵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等十四人來 詔曰 卿遣崔東秀 來奏 備兵一萬 造船一千隻事 今特遣脫朵兒等就彼 整閱軍數 點視舟艦 其所造船隻 聽去官指畫 如耽羅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不與 卽令別造百艘 其軍兵船隻 整點足備 或南宋 或日本 逆命征討 臨時制宜 仍差去官先, 相視黑山·日本道路 卿亦差官 護送道達.”

42) 여원관계사연구팀, 『역주 원고려기사』, 선인, 2008, 278쪽.

43)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277~278쪽.

44)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4년 윤6월. “元置達魯花赤于耽羅.”

45) 『신중동국여지승람』 권38, 達魯花赤府·軍民安撫使府, “원에서 다루다치 총관부를 설치하고 高仁묘을 총관으로 삼아 府의 행정을 처리하가 조금 뒤에 파하였다.”

46) 『고려사』 권27, 세사27, 원종 15년 2월 甲子.

47) 탐라방호군에게 양곡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고려정부의 탄원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2월 丁卯)

48)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2월. 원이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은 해 탐라의 인구는 10,22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49)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4년 7월.

50)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 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89쪽.

51) 표 2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원고려기사』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원종 9)	병사 10,000명을 준비하고 선박 1,000척을 축조하는 일을 아뢰었으므로 ... 만약 耽羅에서 이미 선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면 중복시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참여하지 않았다면 즉시 별도로 100척을 만들게 하라.
2	1273년 (원종 14)	해마다 공부는모시포 백필이다.
3	1276년 3월 (충렬왕 2)	윤3월. 元에서 林惟幹과 回回人 阿室迷里兒를 보내어 耽羅에서 진주를 채취하였다.
4	1276년 6월	임신, 林維幹이 耽羅에서 眞珠를 채취하다가 얻지 못하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100여 개를 취하여 元으로 돌아갔다
5	1283년 1월 8일 (충렬왕 9)	계해, 元이 伯刺介를 보내와 耽羅의 香樟木을 요구하였다
6	1289년 8월 12일 (충렬왕 15)	무오, 耽羅安撫使 忽都塔兒가 元에서 돌아왔는데, 中書省이 牒文을 보내어 靑砂 향아리(甕)와 盆·瓶 요구하였다.
7	1291년 (충렬왕 17)	탐라사신이 貢賦로 동저포 100필을 보냈다.
8	1294년 5월 5일	탐라인 曲怯大, 蒙古大, 塔思拔都 등이 元으로 가서 말 400필을 바쳤다.
9	1294년 11월 4일 (충렬왕 20)	11월 경술 탐라왕자 文昌裕와 星主 高仁브에게 紅鞵과 牙笏, 모자, 蓋, 신발을 각 1개씩 하사하였다. 탐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하사한 것이다.
10	1295년 3월 26일	경오, 元이 伯帖木兒를 보내어 탐라에서 말을 징발해갔다.
11	1295년 4월 26일 (충렬왕 21)	경오, 中郎將 趙琛을 元에 파견하여 濟州의 토산물과 苧布 100필, 木衣 40벌, 脯 6상자, 獾皮 76장, 野猫皮 83장, 黃猫皮 200장, 麂皮 400장, 말안장 5벌을 바치게 하였다.
12	1296년 5월 12일 (충렬왕 22)	將軍 李連松을 元에 보내어 耽羅의 가죽 물화를 진헌하고, 右副承旨 吳仁永은 苧布를, 大將軍 南挺은 탐라의 말을, 上將軍 崔世延은 새매를 진헌하도록 하였다.
13	1296년 5월 27일	갑오, 大將軍 南挺을 元에 파견하여 탐라마를 바쳤다.
14	1297년 1월 19일 (충렬왕 23)	임오, 郎將 黃瑞를 元에 파견하여 金畫甕器와 罍 및 탐라의 쇠고기를 바쳤다.
15	1297년 11월 19일	11월 무인, 上將軍 金延壽를 元에 파견하여 인삼과 탐라의 酥油를 바쳤다.
16	1298년 11월 1일 (충렬왕 24)	11월 갑신 초하루, 將軍 李白超를 元으로 보내어 탐라의 쇠고기를 바쳤다.
17	1339년 8월 5일 (충숙왕 후 8)	신묘, 元이 사신을 파견하여 耽羅의 酥油를 구하였다.
18	1347년 8월 8일 (충목왕 3)	무인, 元 太僕寺에서 李家奴帖木兒와 安伯顏不花를 보내와서 耽羅의 말을 수집하였다.
19	1349년 8월 15일 (충정왕 원년)	계묘, 元이 사신을 파견하여 濟州에 酥油를 요구하였다.

위 표를 참고하면, 원은 탐라에서 말 외에도 토산물이 아닌 물품들을 징발하였다. 1276년(충렬왕 2)에는 回回人을 파견하여 탐라의 진주를 징발해 갔으며⁵²⁾, 毛施布⁵³⁾, 東紵布와 白苧

布⁵⁴), 철⁵⁵), 향장목⁵⁶), 청자⁵⁷) 등을 징발하였다. 이 물품들은 ‘탐라산 소고기와 우유’와는 달리 탐라에서 나지 않았던 물품으로⁵⁸) 1290년대 전반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 되었으며 이는 원이 탐라에서 나는 물자보다는 타지에서 들어와 탐라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물자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⁵⁹) 탐라가 남송, 원, 고려, 일본, 서역 등의 국가들의 해상교류의 중간 기착지로 교역의 거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원 또한 처음 군사적 목적에서 점차 물류교류의 거점 중 하나로 탐라를 운영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1276년(충렬왕 2) 원은 몽고말 160마리를 가져와 동쪽 수산평(서귀포 성산을 수산리 일대)에 방목하면서 탐라 목마장을 만들기 시작하여 다음해에는 서쪽 한경면 고산리 일대에 설치하면서 동·서 아막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목마장에서는 말 외에도 소, 양, 낙타, 나귀, 고라니 등 여러 종류의 가축과 원 황실의 마구간 말도 방목하였다.⁶⁰) 원은 전문목축 기술자인 ‘하치(哈赤)’들을 보내 몽고의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하였다. 1300년(충렬왕 26) “말이 크게 번성해 산야에 가득하다”⁶¹)는 내용이나, 1374년(공민왕 23) 명이 원 시기 탐라에 20,000~30,000필을 두고 사육하여 지금은 많이 번식했을 것이라고 언급면서 2,000필의 탐라말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⁶²)으로 보아 탐라는 교역의 중심 역할 뿐 아니라 원의 목마장으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원에게는 중요한 장소였다.

⑥ (충렬왕) 14년 2월 馬畜滋長別監을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말을 여러 섬에 방목하여 이들을 번식시켜서 건장한 것을 가려내어 尙乘局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諸王·宰輔·文武臣僚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耽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역적의 난리가(삼별초의 난) 있고부터 元이 섬사람들을 육지로 나아가 살게 하고 탐라는 따로 元에 소속시키니 말 사육이 번성하지 못하여 歲貢이 매우 적어졌다. 나라에서는 親朝하는 일이나 정벌을 도울 일이 있으면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게 하고 또 百官에게는 官品에 따라 거두며 심지어 지방의 좋은 말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니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다.⁶³)

⑥은 삼별초의 난 이후 탐라가 원의 직할령이 되면서 고려정부로 들어오는 말의 歲貢이 현저

52)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윤3월. “閏月 丁酉 元遣林惟幹及回回阿室迷里, 來採珠于耽羅.”
 53) 『원사』 권208, 열전95, 외이1, 탐라, 지원10년 6월. “平之 於其地立耽羅國招討使 屯鎮邊軍天七百人. 其貢賦歲進毛施布百匹.”
 54) 『원사』 권16, 본기16, 세조 至元28년 11월 丁未. “耽羅遣使貢東紵百匹.”
 55)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8월 癸酉.
 56)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9년 1월 癸亥.
 57)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5년 8월 戊午.
 58)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土貢, 土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탐라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59) 이강한, 앞의 논문, 2017, 92쪽.
 6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고적조, 수산평 제주.
 61) 『탐라기년』 권1, 충렬왕 26년조.
 62)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 4월 13일. “戊申 帝遣禮部主事林密, 蔡牧大使蔡斌來, 中書省咨曰, “欽奉聖旨, ‘已前征進沙漠, 爲因路途遠, 馬匹多有損壞. 如今大軍又征進, 我想高麗國, 已先元朝, 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蔡生儘多. 中書省差人, 將文書去與高麗國王, 說得知道, 教他將好馬揀選二千匹送來.’” 於是, 遣門下評理韓邦彥往耽羅, 取馬.”
 63) 『고려사』 권82 志36, 兵2, 馬政. “十四年二月 置馬畜滋長別監. 先是, 放馬於諸島, 使之蕃息, 簡出壯者, 以充尙乘, 其餘, 班賜諸王宰輔文武臣僚, 而耽羅之出居多. 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馬畜不繁, 歲貢甚少, 國有親朝助征之事, 令外官獻馬, 又品斂百官, 而至奪外郡良馬, 內外苦之.”

히 감소하여 필요시 마필을 科斂해 온 상황을 타개하고자 馬畜滋長別監이 설치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로 여기에는 탐라의 재원에 대한 경제적 관할권을 복구하려는 고려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당시 여러 섬의 말 가운데 탐라의 말 납부량이 가장 많았으며 원의 직할령으로 소속된 이후에는 탐라의 말을 거둘 수 없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말 수요량 충당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탐라는 목마장 설치 전에도 이미 중앙 정부에 공마를 진상하고 있었으며 비중도 타지역에 비해 컸음을 알 수 있다. 원은 이런 환경을 파악하여 탐라를 목마장 및 향실목장으로 운영하였다.

1294년(충렬왕 20) 탐라가 고려에 복속된 후 1295년(충렬왕 21) 탐라를 濟州牧으로 격상시키고 崔瑞를 濟州牧使로 파견하여⁶⁴⁾ 탐라의 지위를 계수관급으로 격상시켜 운영하였다. 그리고 1300년(충렬왕 26)에는 탐라의 14개 村을 縣으로 승격시켜 제주목과 동·서도현으로 편제하였다.⁶⁵⁾ 제주목사는 정3품의 지위였으며 이는 고려정부도 탐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탐라의 진상물과 수량 등 진상과 貢賦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는 고려정부의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牧’ 단위로 설정하여 목사, 부사, 판관, 현령, 현위 등 지방관 파견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파견된 지방관들과 탐라의 토호세력들 사이의 마찰이 지속되었고, 탐라가 고려로 복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말 징발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탐라의 입장에서는 원과 고려의 이중적인 물자수탈이 이뤄졌으며 1368년(공민왕 18) 명이 건국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명도 탐라의 말을 요구하여 1362년(공민왕 11) ‘牧胡의 亂’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1294년 탐라가 고려로 반환되었지만 13세기 말 까지도 탐라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14세기 공민왕 이후 목호의 난을 진압하면서 비로소 고려정부는 탐라에 대한 행정관리 및 재원을 장악할 수 있었다.

- ⑦ 辛亥, 濟州 사람들이 투항하여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⁶⁾
- ⑧ 壬寅, 濟州星主가 와서 말을 바치자 왕이 그에게 붉은 가죽 허리띠와 쌀 30석을 하사하였다.⁶⁷⁾
- ⑨ 戊申, 耽羅萬戶 文阿但不花가 동생 文仁富를 보내 양과 말을 바쳤다.⁶⁸⁾
- ⑩ 임신에 大護軍 金甲雨를 파견하여 탐라말 50필을 바치게 했다.⁶⁹⁾
- ⑪ 갑진에 判繕工寺事 周英贊을 명에 파견하여 千秋節을 축하하고 濟州의 牧胡 肖忽 禿不花가 바친 말 19필과 나귀 2필을 진상하게 하였다.⁷⁰⁾
- ⑫ 濟州萬戶 金仲光이 말 140필을 바쳤다. 우왕이 좋은 말 39필을 선별하여 가지고,

64)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1년 윤4월 9일. “癸丑 以判秘書省事崔瑞爲濟州牧使.”
 65) 『고려사』 권57, 志11, 地理2, 전라도 탐라현.
 66)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6년 2월 6일. “辛亥 濟州來降, 獻方物.”
 6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6년 7월 29일. “壬寅 濟州星主來獻馬, 賜蓋紅鞵, 米三十石.”
 68)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6월 11일. “戊申 耽羅萬戶文阿但不花遣弟仁富, 獻羊馬.”
 69)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 11월 20일. “壬申 遣大護軍金甲雨獻耽羅馬五十匹.”
 70)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2년 7월 5일. “秋七月 甲辰 遣判繕工寺事周英贊如京師, 賀千秋節 并獻濟州牧胡肖忽禿不花所獻馬十九匹, 驢二匹.”

나머지는 모두 嬖幸·閹豎들에게 하사하였다.⁷¹⁾

⑬ 前 判事 韓仲寶가 이전에 濟州에 按撫하러 가서, 왕명을 위조하여 사육을 채우다가 巡軍獄에 갇혔다.⁷²⁾

⑭ 畜馬別監 邊伐介가 濟州에 가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말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의 臧獲를 빼앗고 尙乘局의 田租도 훔쳐서 사용하였다. 憲府가 탄핵하여, 먼 곳으로 유배 보냈다.⁷³⁾

고려말 원·명이 교체되는 대외적 상황 안에서 탐라는 고려의 영향 아래 다시 복속되었고 탐라 성주는 말을 매개로 고려 정부와 원활한 사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사료 ⑦⑧⑨⑫) 더불어 명나라도 탐라를 요구하였으며(사료 ⑩⑪), 정부에서 탐라에 파견된 지방관들도 불법적인 수탈을 자행하였다.(사료 ⑬⑭) 이렇듯 탐라는 매 시기별로 당시 대내외 정세에 적응하면서 탐라의 물품을 적극 활용하여 생존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IV. 맺음말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 양상과 성격에 대해 고려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려전기 정부의 탐라 정책은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 이뤄졌는데 정치적으로는 토호 세력에게 성주와 왕자의 지위를 주었고 탐라의 위격을 승급 또는 강등시키거나(郡-縣-牧(州)-郡) 타 지역에 비해 위상이 높은 이를 외관 또는 안무사로 파견하였으며, 지방으로 편입한 후에도 일정기간 蕃國으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외국의 지위로 고려 건국초부터 방물을 진상하고 하사품을 받는 진헌 무역의 형식으로 교류를 하였다. 이는 팔관회의 조하의식을 통해 구현되었는데 건국후 ‘內王外帝’을 지향했던 고려의 천하관을 드러냄과 동시에 팔관회의 경제적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교류방식이었다.

12세기 중반 탐라는 고려의 지방으로 복속된 후 탐라의 진상은 貢賦가 더해져 혼재된 성격으로 진상과 공물이라는 이중적 수취구조가 만들어지고 탐라민들은 과중한 부세의 부담에 저항하여 ‘良守의 亂’ 등 수차례 민란이 일어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무인집권기를 거치면서 공물 수취는 더욱 심해졌다. 고려후기 탐라는 원의 직할령으로 복속되면서 원과 고려에게 진상이 이루어졌고 탐라의 지리적 위치와 원의 목축기술로 인한 耽羅馬의 번성은 탐라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원은 탐라를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무역 거점으로 삼아 탐라의 물자들을 수탈해 갔다. 더불어 원의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원이 목축문화가 유입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제주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원의 목마장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한라산 중산간에 十所場이 만들어지고 국영목장으로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

71)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0년 8월. “濟州萬戶金仲光, 貢馬一百四匹, 禍選留良馬三十九匹, 餘皆賜嬖幸·閹豎.”

72)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9년 5월. “前判事韓仲寶嘗安撫濟州, 矯旨縱欲, 下巡軍獄. 其弟上護軍仲良, 素與仲寶不友, 至是喜仲寶得罪, 疏其過惡, 投匿名書于李存性第. 并下仲良獄, 並杖流邊地.”

73) 『고려사』 권136, 열전49, 우왕 12년 12월. “畜馬別監邊伐介至濟州, 多受人馬, 又奪人臧獲, 盜用尙乘田租, 憲府劾, 流遠方.”

다.

耽羅馬는 고려 전·후기를 불문하고 원·명·고려·조선시대까지 탐라의 중요한 진상품품이었으며 조선은 明末까지 거의 매해 種馬 500필을 진상하였다. 고려말 원이 망하고 탐라가 고려의 영향 아래 복속되는 시점에서 탐라성주는 말을 매개로 고려 정부와 원활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에 대해 고려 전 시기를 배경으로 다루다보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살핀 부분이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토론을 통해 조언을 참고하여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완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탐라기년』

2. 논문 및 저서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54~456쪽.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양수의 난」, 『역사와 교육』 25집,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고려는 특수했는가?
: 몽골제국 부세 체제와 고려

설배환(전남대학교)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품목

이승호(경희대학교)

〈목차〉

I. 머리말
II. 5~6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涉羅의 ‘珂’
III. 7~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耽羅鰓’
IV. 맺음말

I. 머리말

3세기 무렵 『三國志』 東夷傳에서 ‘州胡’라는 이름으로 역사 상에 첫 등장을 알린 제주의 고대 사회는 곧 ‘耽羅’¹⁾라는 국명을 가진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며 동아시아의 여러 세력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기록에 보이는 州胡와 耽羅를 통해 고대 제주 사회의 역사 전개와 대외교류 양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²⁾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진전 속에 고대 제주 사회의 역사 전개와 발전 방향 및 그 역사에 내재한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그 역사의 顛末은 여전히 많은 부분 베일에 쌓여 있으며, 전하는 기록이 희소한 만큼 관련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예컨대, 기록에서 州胡가 교류·교역하였다고 전하는 ‘中韓’에 대한 해석 문제나 대략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에 고구려에 ‘珂’를 진상하였다는 ‘涉羅’의 정체, 6~7세기에 걸쳐 耽羅國이 교

1) 耽羅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와 『日本書紀』 등에 ‘耽羅’ 혹은 ‘耽羅’로 확인된다. 또 『三國遺事』에는 ‘毛羅(托羅)’로 전하며, 『魏書』 고구려전에서는 ‘涉羅’, 『隋書』와 『北史』 百濟傳에서는 각각 ‘身冉牟羅國’과 ‘耽牟羅國’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新唐書』 劉仁軌傳에는 ‘儋羅’로, 『高麗圖經』에서는 ‘聃羅’로 전한다. 가 제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89쪽).

2) 森公章 「耽羅方朮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 『続日本紀研究』 239, 1985 ;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 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영남고고학보』 58, 2018a ;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 ;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 본 발표 또한 이상의 연구 성과에 의지한 바가 큼을 밝힌다.

섭하였던 백제·신라·일본과 耽羅國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고 8세기 무렵 일본 측 사료에 보이는 ‘耽羅鰻’에 담긴 역사상 등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지점에서 여러 연구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³⁾ 이에 본 발표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 의지하여 5~8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을 개관해 가며 각각의 쟁점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진상·조공품을 통해서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라는 본 학술회의 주제에 맞추어 당시 耽羅國의 대외교류 과정에서 활용된 진상·증여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그동안 耽羅國의 대외교섭에 대한 검토는 백제사나 신라사 혹은 일본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백제의 질서에 의존하고, 백제에 의한 王位の 보호에 의해서만 결집할 수 있었던 탐라 지배층은 백제의 위기에 임해서 일본에 사자를 파견했다. 백제의 위기는 곧 탐라의 위기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가케이 도시오[筧敏生]의 언급은 그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⁴⁾ 물론 전하는 기록만 놓고 보면 耽羅國의 대외관계는 7세기 중반까지는 백제에, 백제 멸망 이후로는 신라에 종속된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탐라인은 그들 스스로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후세인들은 탐라인이 아닌 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탐라 역사의 흔적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전하는 기록만을 가지고 탐라국의 역사가 이처럼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백제나 신라 중앙으로부터 바다를 두고 격절되어 있는 탐라국의 지리적 특성상, 그 시기 탐라국의 대외교섭사는 탐라국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 전개 양상과 교류 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실 고대 탐라의 대외교류 및 物品 교역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본 발표가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음을 잘 안다. 다만 본 발표를 통해 5~8세기 耽羅國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탐라국의 주체적 대외 활동이라는 시선에서 환기해볼 수 있다면, 목적인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5~6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涉羅의 ‘珂’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3세기 무렵 고대 제주 사회는 주변 세력과 교류를 전개하였는데, 아래의 사료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료 (가) :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또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비교적 키가 작고 언어는 韓과 같지 않다. 모두 鮮卑와 같이 髡頭를 하고, 오직 옷은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 옷은 上衣만 있고 下衣는 없는데,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中韓과 [물건을] 사고팔았다.⁵⁾

3) 각각의 쟁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진영일, 앞의 논문, 2000 및 장창은, 앞의 논문, 2018에 잘 정리되어 있다.

4) 筧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記研究』 262, 1989 ; 「耽羅王權과 日本」, 『탐라문화』 10, 1990, 266쪽.

5)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보이는 ‘州胡’를 지금의 제주도로 보는 데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하며,⁶⁾ 특히 기사 마지막 구절 “市買中韓”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州胡’가 ‘韓’과 교역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제주도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⁷⁾ 그런데 “市買中韓”의 풀이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中韓’에 대해 일찍이 이병도가 “특히 馬韓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뒤로⁸⁾ 이러한 시각을 계승하는 연구가 많았지만,⁹⁾ 한편으로는 1928년 제주시 山地港 공사에서 출토된 五銖錢·貨泉 등 중원지역 화폐와 출토 토기의 양상 등 고고 자료를 근거로 하여 『三國志』에서 지칭하는 ‘中韓’을 弁韓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¹⁰⁾ 또 영산강 유역의 新彌諸國이 그 대상일 것으로 지목하는 견해도 근래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¹¹⁾ ‘中韓’을 중국과 三韓의 합칭으로 보고 州胡가 중국 및 한반도와 해상교류를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¹²⁾

그런데 5세기 무렵 편찬된 『後漢書』 東夷列傳에서 위의 기사와 대응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范曄은 이 부분을 “貨市韓中”으로 고쳐놓았음을 볼 수 있다.¹³⁾ 이에 『三國志』의 모든 판본이 “市買中韓”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後漢書』의 “貨市韓中”과 『三國志』의 “市買中韓”도 판본의 차이라고 보아 『三國志』의 “市買中韓” 또한 “市買韓中”의 뜻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⁴⁾ 그러나 『三國志』의 여러 판본을 대조해보면, “市買中韓”을 “市買韓中”으로 교감한 중화서국본을 제외한 소흥본·소희본·축각소자본·남감본·급고각본·무영전본·백납본 등 현전하는 모든 『三國志』 판본에서 “市買中韓”으로 쓰고 있는 만큼¹⁵⁾ “市買中韓” 구절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市買中韓”에서의 ‘中韓’을 ‘중국과 三韓’으로 풀어보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市買中韓” 구절을 단순히 “韓과 [물건을] 사고팔았다” 혹은 “韓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라고 풀기에는 ‘中’의 해석에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 굳이 ‘中’을 풀이한다면 문맥상 어조사격의 “~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그렇게 보아도 “市買中韓”보다는 “市買韓中”이어야 해석이 자연스럽다. 또 “中韓”을 “중앙의 韓” 등으로 거칠게 이해하여 目支國 등과 연결시키려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中韓”을 ‘중국과 三韓’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1928년 제주시 山地港 공사에서 출토한 五銖錢·貨泉·大泉五十·貨布 등 18점의 화폐를 비롯하여 제주 각지에서 확인되는 漢式 유물¹⁶⁾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大泉五十과 貨布가 남한지

6)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영남고고학보』 58, 2018a, 27~28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92~93쪽.

7)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93쪽.

8) 이병도, 「第4篇 三韓問題의 研究 ; 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299쪽.

9) 이정규,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18~319쪽 및 334쪽. 진영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州胡의 교섭 대상을 新彌國 중심의 영산강 유역 사회로 본 바 있다(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219쪽).

10)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34~37쪽.

11) 진영일, 앞의 논문, 2000, 218~219쪽.

12)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 서경문화사, 2017.

13)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韓 條,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14)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93쪽.

15)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中國正史 東夷傳 校勘』, 2018, 41쪽.

16)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125쪽 <표 1> 참조.

역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지적¹⁷⁾도 주목되는데, 이는 이들 출토 화폐가 한반도 남부의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건너온 유물이 아닐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市買中韓”의 “中韓”은 곧 ‘중국과 韓’, 구체적으로 ‘낙랑·대방군 및 三韓’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한다.¹⁸⁾

아무튼 1세기 초에 사용된 중원지역의 화폐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三國志』의 “市買中韓” 구절을 통해 고대 제주 사회가 바다를 통해 일찍부터 주변 여러 지역과 교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시 탐라는 한반도 서남해안과 일본 규슈 지역로 연결되는 교역로 상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위세품을 수입하며 낙랑→한반도→일본으로 연결되는 교역 루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고 본다.¹⁹⁾ 그리고 이와 같은 대외교류의 전개는 3세기 무렵 ‘州胡’에서 ‘耽羅’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⁰⁾

하지만 이러한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은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南遷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료 (나)-①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夏4月 條

[文周王 2年(476)] 여름 4월, 耽羅國이 方物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며 使者를 恩率로 삼았다.²¹⁾

사료 (나)-②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8月 條

[東城王 20年(498)] 8월, 王이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자 親征에 나서 武珍州에 이르렀는데, 耽羅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비니 곧 그만두었다. [耽羅는 곧 耽牟羅이다.]²²⁾

위의 사료 (나)-①·②의 기록은 5세기 후반 탐라국과 백제의 교섭 기사이다. 특히 사료 (나)-①은 476년 탐라국과 백제가 처음 통교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기 후반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처음 성립하였고, 이때부터 탐라는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속국으로 위치하였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이다.²³⁾ 하지만 아래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이해와 반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료 (다) : 『日本書紀』 卷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2年 12月 條

17)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94쪽.

18) 이와 관련하여 당시 탐라 사회가 마한·변한을 매개로 낙랑군과 간접교섭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랑군 자체와도 일정한 교역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참고가 된다(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55~156쪽).

19) 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55쪽.

20) 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30~31쪽 및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b, 47~52쪽. 3세기를 전후하여 제주에는 마한·변한 지역과의 교섭을 통해 철기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문물이 도입되고, 원거리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읍락[거점 취락]과 정치체가 등장하며 수장층이 출현한다고 한다. 특히 대외교역의 거점으로서 제주도 서북지역의 외도동·용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國邑’에 비견되는 거점 취락이 형성되면서 ‘탐라정치체의 출현’을 상정케 하는데, 곧 이와 같은 사회적 진전이 ‘州胡’ 사회가 ‘耽羅’로 나아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2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夏4月 條,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2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8月 條,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即耽牟羅.”

23)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0쪽.

[繼體天皇 2年(508)] 12월, 南海 가운데 耽羅人이 처음으로 百濟國과 통교하였다.²⁴⁾

위에서처럼 『日本書紀』에서는 백제와 탐라의 첫 교섭을 508년의 일로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료 (나)-①·②의 ‘耽羅國’ 혹은 ‘耽羅’를 제주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개진된 바 있다. 즉 사료 (다)의 『日本書紀』 기록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 사료 (나)-②에서 東城王이 이끄는 군대가 도착한 지역이 武珍州였으므로 그의 군대가 제주로 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日本書紀』 「神功紀」의 삼한 정벌 기사를 백제 근초고왕 시대의 일로 치환하여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전남 지역을 영유했다는 주장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사료 (나)-①·②의 탐라를 해남 강진 일대의 忱彌多禮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⁵⁾ 그리고 최근까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연구도 여러 편 제기된 바 있다.²⁶⁾

하지만 사료 (나)-①·②의 耽羅國 혹은 耽羅를 忱彌多禮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료 (다)에서 보듯 “南海 가운데 耽羅人”이라는 『日本書紀』의 기사는 당시의 耽羅가 곧 오늘날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료 (다)에 보이는 『日本書紀』의 ‘耽羅’를 제주도로 보아야 한다면, 사료 (나)-①·②의 耽羅國·耽羅 또한 제주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476년 무렵까지 백제의 영향력이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에 까지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료 (나)-①·②의 기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료 (나)-①에서 耽羅國이 백제에 方物을 바치는 조공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나)-②에서도 東城王이 耽羅 정벌을 기도하며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의 두 기사는 곧 탐라국이 당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맹주의 지위에 있었던 백제에 대한 조공 외교를 전개한 사실을 전할 뿐, 이것이 곧바로 백제의 탐라 복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⁷⁾ 특히 사료 (나)-①에서 탐라와 백제의 첫 교섭 기록이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바로 그 이듬해에 일어난 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탐라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던 국제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료 (나)-①의 탐라-백제 교섭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진행된 탐라의 능동적인 외교 행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탐라가 백제에 조공을 바쳤던 배경을 백제의 남해안 진출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각은 온전히 백제사 중심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탐라의 對백제 교섭 기록은 탐라의 입장에서 주체적인 행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²⁸⁾

또한 사료 (나)-①을 기점으로 성립된 양자의 관계가 그리 오래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

24) 『日本書紀』 卷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2年 12月 條, “十二月, 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國.”

25)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5~7쪽.

26) 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36~38쪽 및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2~103쪽의 논의를 참조.

27) 진영일, 앞의 논문, 2000, 238~240쪽. 이 시기 탐라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용관계’로 바라보거나(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40쪽), 탐라가 백제의 ‘속국’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118쪽), 대체로 정치적 구속성이 크지 않은 조공관계로 바라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 이근우, 앞의 논문, 2006).

28) 이 시기 탐라와 백제의 교섭이 이루어진 동인을 탐라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즉 “탐라 자체 내에 지배엘리트가 있어, 인접 大國에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朝貢外交를 펼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청규, 앞의 논문, 1996, 40쪽).

는다. 이어지는 사료 (나)-②에서처럼 탐라가 조공을 오지 않자 東城王이 정벌을 결심했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즉 탐라국의 對백제 조공외교는 양자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의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일회성이 강한 일시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단순히 조공국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親征을 결심했다는 것도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 결국 탐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백제 측의 침공 명분일 뿐, 東城王 20년의 군사 행동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움직일만한 또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아래의 사료이다.

사료 (라) :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 條

正始 연간(504~508)에 世宗이 東堂에서 그 사신 芮悉弗을 引見하니, [芮]悉弗이 전언하기를, “高麗의 이어지는 정성은 하늘에 닿고, 여러 대에 걸쳐 진실로 성실하여,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이 공물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珂는 涉羅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어, [고려] 國王인 臣 雲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도리를 생각하여, [부여와 십라 백성들을] [고려의] 경내로 옮겼습니다. 두 가지 물품이 王府에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 두 도적들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²⁹⁾

위의 기록은 6세기 초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北魏로 가서 자신들의 조공품 가운데 황금과 珂가 품목에서 빠진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이 위의 밑줄 친 부분으로 珂는 涉羅에서 생산되는데 涉羅가 백제에게 병합되면서 고구려가 더 이상 珂를 조공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 등장하는 涉羅에 대해서는 현재 耽羅, 즉 제주도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³⁰⁾와 함께 최근에는 이를 신라의 다른 표기로 보는 견해가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³¹⁾

그리고 이렇게 涉羅를 耽羅로 볼지 신라로 볼지 의견이 갈리면서, 涉羅가 고구려에 바쳤다는 ‘珂’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기록에 보이는 ‘珂’에 대해 처음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던 진영일은 『大漢和辭典』에 정리된 ‘珂’의 용례를 인용하며 “①옥 이름(玉銘), ②소라 종류(바다에서 나며 큰 것을 珂라 하며 검고 노란 색깔을 띠며 그 뼈는 희며 말을 장식한다), ③조개로 만든 말 재갈 장식, ④재갈(馬勒), ⑤흰 마노(白瑪瑙)” 이렇게 다섯 가지 용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珂를 “탐라에서 산출되는 소라 등 종류로서 말 재갈 장식을 의미한다.”고 보고, 唐代 5品 이상의 관인이 사용하였던 말 재갈을 치장하는 옥조개[玉珂]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唐代의 귀족에게도 제주산 옥가가 귀중한 필수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²⁾ 반면, 涉羅를 신라로 보는 견해에서는 珂에 대한 위의 ①번 혹은 ⑤번 용례에 따라 ‘白瑪瑙’로 보며, 사료 (라)에 보이는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을 나제동맹에 대한 고구려 입장에서의 외교적 修辭 정도로 해석한다.³³⁾

29)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 條,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30) 이러한 견해는 조선후기 학자인 韓鎭書로부터 장도빈, 이흥직, 고창석, 이청규, 진영일, 이도학 박남수 등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6~108쪽).

31) 이러한 견해는 현재 노태돈, 김현숙, 후보돈, 정재윤, 장창은, 井上直樹, 김진한 등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9~113쪽).

32) 진영일, 앞의 논문, 1994, 28~29쪽.

33)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9쪽.

그런데 사료 (라)의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언급과 관련하여서는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북위로 건너간 正始 연간(504~508)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이때의 사행은 文咨明王 13년(504)의 일이었다고 한다.³⁴⁾ 그리고 사료 (라)에 전하는 대로 勿吉에 쫓겨 부여 왕실이 고구려에 귀부한 것은 고구려 文咨明王 3년(494)의 일이다.³⁵⁾ 그렇다면 고구려는 芮悉弗이 북위로 간 504년 이전, 그리고 夫餘가 勿吉에 쫓겨 고구려로 내투한 494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료 (나)-②에서 東城王이 耽羅 정벌을 기도했던 498년은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³⁶⁾

즉 사료 (라)에서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은 사료 (나)-②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보아 涉羅는 곧 耽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5세기 후반 백제와 첫 교섭을 진행하였던 耽羅는 곧 대외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고구려와 접촉하였고, 고구려에 ‘珂’를 헌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역측해보자면, 476년 백제와 첫 교섭을 진행했던 탐라가 고구려의 강공을 받고 남천할 수밖에 없었던 백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구려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³⁷⁾ 탐라는 백제보다도 당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던 고구려에 조공하는 것이 자국의 외교적 보복을 넓히고 국제적인 교류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료 (라)에서 탐라가 이때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백제의 군사적 압력으로 인해 탐라가 더 이상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자 芮悉弗이 그러한 상황을 과장하여 북위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②에서 耽羅가 東城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다는 대목에서 백제에 대한 耽羅國의 일정한 외교적 굴복이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즉 芮悉弗의 언급에 다소 과장은 개재되어 있을지언정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 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498년에 東城王이 주도한 군사 행동으로 백제는 탐라에 대한 직접적인 병합은 아니었지만, 탐라와 고구려의 연결을 확실히 차단하고 탐라를 외교적으로 종속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탐라가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고구려와 접촉하는 상황을 인정한 백제 입장에서 이를 가만히 묵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으로 고구려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배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고구려의 남하로 동요하는 남해안 일대 諸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고구려와 연결을 도모한 耽羅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필수적이었다. 결국 東城王 20년의 親征 시도는 배후에 위치한 탐라와 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Ⅲ. 7~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耽羅腹’

앞서 사료 (나)-②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탐라는 498년 백제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면서

34)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3年 條,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35)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年 條, “三年, 春正月, 遣使入魏朝貢. 二月, 扶餘王及妻孥, 以國來降.”

36)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 36쪽.

37) 이청규, 앞의 논문, 1996, 39쪽.

다시 백제의 조공국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이 이후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사서 상에 탐라의 대외교섭 기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데,³⁸⁾ 이것은 당시 탐라의 주체적인 대외 활동이 백제의 감시와 견제 속에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³⁹⁾ 특히 백제 聖王 16년(538)에 사비 천도가 단행되고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까지 백제의 지배력이 강하게 미치게 되면서, 탐라 또한 그러한 백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아래의 사료(마)-①은 당시 그러한 탐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마)-① :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文武王 2年(662) 春 2月]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와서 항복하였다. 耽羅는 武德[618~626] 이래로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佐平으로써 官號를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⁴¹⁾

사료 (마)-② :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條

[齊明天皇 7年(661) 5月] 丁巳 耽羅가 처음으로 왕자 阿波伎 등을 보내 貢物을 바쳤다. 伊吉連博得의 書에 말하기를 “신유년(661) 정월 25일에 돌아와 越州에 도착하였다. 4월 1일에 越州로부터 上路로 동쪽으로 돌아왔다. 7일에 행렬이 櫻岸山 남쪽에 도착하였다. 8일 닭이 울 무렵(새벽)에 서남풍을 타고 배는 大海로 나왔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여 큰 고통을 겪었다. 8박 9일 만에 겨우 耽羅嶋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섬사람 왕자 阿波伎 등 9인이 불러 위로하고, 함께 客船을 타고 帝朝에 바치려 하였다. 5월 23일에 朝倉의 조정에 奉進하니, 耽羅가 조정에 들어온 것이 이때에 시작되었다. 또 智興의 僉人 東漢草直足嶋의 참소를 당해 사신 등이 寵命을 받지 못하였다. 사신 등이 원망하여 하늘의 신에게 아뢰니, 足嶋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 당시 사람들이 칭하여 말하기를 ‘大倭 天神의 양갈음인가’라고 하였다.”고 하였다.⁴²⁾

사료 (마)-③ :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流鬼 條

龍朔[661~663] 초에 僭羅가 있었는데, 그 왕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38) 다만, 『隋書』 東夷列傳, 百濟 條 및 『北史』 列傳, 百濟 條에서는 隋 開皇(581~660) 初에 陳을 평정한 隋의 戰船이 표류하여 ‘耽牟羅國’을 거쳐 백제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의 耽牟羅國은 곧 탐라를 말한다. 특히 제주도에 표류한 隋 선박이 백제를 경유하여 돌아갔다는 점과 이 귀항길에 백제 사신이 함께 동행하였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사건의 해결은 백제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당시 백제가 耽羅의 대외교섭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日本書紀』에서 백제와 탐라의 첫 통교가 있었다고 전하는 508년 이후로 탐라의 대외교섭 대상이 백제로 일원화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으며(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38쪽), 武寧王 4년(504) 국세를 회복한 백제가 서해 중부 이남의 제해권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탐라와 고구려의 내왕이 막혔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박남수, 앞의 논문, 2018, 37쪽).

40) 당시 백제는 탐라에 대해 조공관계에 기반한 간접지배 형태의 복속관계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42쪽).

4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42)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條,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櫻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即招慰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又, 爲智興僉人東漢草直足嶋, 所議, 使人等不蒙寵命. 使人等怨, 徹于上天之神, 震死足嶋. 時人稱曰, 大倭天報之近.”

[그] 나라는 新羅의 武州 남쪽 섬에 居하는데, 습속은 朴陋하며 大豕皮로 옷을 해입으며 여름에는 革屋에 거주하고 겨울에는 窟室[에 거주한다]. 그 땅은 五穀이 나고 밭갈이에 소를 사용할 줄 모르며, 鐵齒杷로 땅을 일군다 처음 百濟에 부용되었다가, 麟德 [664~665] 연간에 酋長이 내조하고 황제를 좇아 太山에 이르렀고, 후에는 新羅를 에 부용되었다.⁴³⁾

위의 사료 (마)-① 文武王 2년 2월 조 기사에서는 탐라가 백제에 ‘臣屬’한 시기를 唐 武德 연간(618~626)이라고 전하고 있다. 탐라가 백제와 처음 통교한 시점에 대해 앞서 사료 (나)-①에서는 476년으로, 사료 (다)에서는 508년으로 전했던 반면, 다시 여기서는 7세기 초반 무렵에 탐라가 백제에 臣屬하였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처음 성립하는 시점에 대해 기록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해당 사서마다 취득한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⁴⁴⁾ 사료 (마)-①에 전하는 ‘武德’을 ‘武寧’이나 ‘威德’의 오기로 보거나 양자를 아울러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⁴⁵⁾ 그런데 (마)-①의 기사는 7세기 전반에 이르러 탐라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기사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전까지 탐라국은 백제에 대한 조공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7세기 초에 이르면 탐라국의 왕이 ‘佐平’ 官位를 받으며 백제왕의 신하로 위치하게 되고, 이와 같은 관계 설정에 따라 그만큼 백제의 간섭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던 사정을 반영⁴⁶⁾하는 기사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그러한 양자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660년 백제의 멸망을 기점으로 탐라국은 백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독자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위의 사료 (마)-①·②·③을 보면 탐라국은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듬해인 661년에 일본과 접촉하였고, 662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고 한다. 또 사료 (마)-③에서 보듯 같은 시기 儋羅[탐라]의 왕 儒李都羅가 唐에 입조하였으며,⁴⁷⁾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종결된 麟德 연간에는 그 酋長이 내조하여 황제를 좇아 太山 封禪儀式에도 참여하였다고 한다.⁴⁸⁾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간 백제 이외의 대외창구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탐라국이 백제 멸망을 계기로 대외교섭을 다각도로 전개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⁹⁾

한편, 사료 (마)-①에서는 탐라국이 신라 측에 먼저 사신을 보내 자진해서 속국이 될 의사를 표했다고 전하는데, 이는 이전에 탐라국이 백제와 처음 교섭할 때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때 탐라국이 신라의 ‘속국’을 자처하였던 것은 단지 외교적 수사일 뿐 이를 계기로 실제 신라

43)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流鬼 條,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44) 박남수, 앞의 논문, 2018, 36쪽.

45) 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39~40쪽.

46) 김경주, 앞의 논문, 2018b, 76쪽에 따르면, 백제에 신속한 상태에서 탐라국은 반자치적인 國체제를 유지하였지만, 대외교섭과 교류 창구는 백제를 통해 일원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7) 『唐會要』 卷100, 耽羅國 및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15, 朝貢에 따르면 이는 龍朔 원년(661)의 일이라 한다.

48)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5年 秋8月 條에 따르면, 이는 이른바 ‘就利山 회맹’을 마친 뒤 劉仁軌가 신라·백제·탐라·왜 4국의 사신을 거느리고 唐으로 돌아가 泰山에서 제사를 지낸 일을 말하는 것이다(歆訖,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我之宗廟.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資治通鑑』 卷201 麟德 2年 8月 條 및 『唐會要』 卷95 新羅傳에도 같은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49) 이에 대해 탐라가 백제 멸망 이후에도 기존 교역루트의 재건과 대외교섭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매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41쪽).

가 탐라를 통제 아래 두거나 지배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663년 백제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이 白村江 전투에서 패하면서 항복한 인원 중에는 백제·일본 측 인물들과 함께 ‘耽羅國使’가 보이므로,⁵¹⁾ 662년 이후로도 탐라는 백제 유민 및 일본 측과 긴밀한 연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660년대 탐라국은 신라에 稱臣하는 한편, 일본 측에도 수 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대외교섭의 루트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다. 즉 사료 (마)-①의 내항 기사는 백제 멸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탐색하는 한편,⁵²⁾ 당시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던 신라군의 공세가 자칫 탐라국에까지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임기응변적 사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바)-①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4年 秋8月 條
[天智天皇 4年(665) 秋8月] … 耽羅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⁵³⁾

사료 (바)-②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6年 秋7月 條 및 閏11月 條
[天智天皇 6年(667) 秋7月] 己巳에 耽羅가 佐平 椽磨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 [閏11月] 丁酉에 錦 14필, 纈 19필, 緋 24필, 紺布 24端, 桃染布 58端, 斧 26, 鈿 64, 칼 62개를 椽磨 등에게 주었다.⁵⁴⁾

사료 (바)-③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8年 3月 條
[天智天皇 8年(669) 3月] 3월 己卯朔 己丑에 耽羅가 王子 久麻伎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 丙申에 耽羅의 왕에게 5곡의 종자를 주었다. 이날 王子 久麻伎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⁵⁵⁾

사료 (바)-④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2年 閏6月 條 ; 同 8月 條
[天武天皇 2年(674) 閏6月] 壬辰에 耽羅가 王子 久麻藝·都羅·宇麻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 [同 8月] 戊申에 등극을 축하하는 [新羅] 사신 金承元 등 中客 이상 27인을 京으로 불렀다. 그리고 大宰에 명하여 耽羅의 사신에게 詔를 내려 말하기를, “天황이 새로 천하를 평정하고 처음 즉위하였다. … 그러므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국왕과 사신 久麻藝 등에게 처음으로 爵位를 주었다. 그 爵은 大乙上이었고 또 錦繡로 장식하였는데, 그 나라의 佐平의 관위에 해당한다. 곧 筑紫에서 귀국하였다.⁵⁶⁾

50) 660년 백제 의자왕의 항복에 따라 백제의 속국으로서 唐과 신라에 대한 항복의 의사를 표한 것이 탐라국의 당나라 조공과 신라에 대한 내항이었다는 의견도 있다(박남수, 앞의 논문, 2018, 39~40쪽).

51) 『舊唐書』 卷84, 列傳 34, 劉仁軌傳, “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并耽羅國使, 一時並降. 百濟諸城, 皆復歸順. 賊帥遲受信據任存城不降.”

52) 진영일, 앞의 논문, 2007, 224쪽.

53)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4年 秋8月 條, “…耽羅遣使來朝.”

54)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6年 秋7月 條, “己巳,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 同 閏11月 條, “丁酉, 以錦十四匹·纈十九匹·緋廿四匹·紺布廿四端·桃染布五十八端·斧廿六·鈿六十四·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55)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8年 3月 條, “三月己卯朔己丑, 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 丙申, 賜耽羅王五穀種. 是日, 王子久麻伎等罷歸.”

56)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2年 閏6月 條, “壬辰, 耽羅遣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 ; 同 8月 條, “戊申, 喚賀騰極使金承元等, 中客以上廿七人於京.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

사료 (바)-⑤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天武天皇 4年(676) 秋8月] 8월 壬申 朔에 耽羅 調使 왕자 久麻伎가 筑紫에 이르렀다.⁵⁷⁾

사료 (바)-⑥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9月 條
[天武天皇 4年(676) 秋9月] 9월 壬寅 朔 戊辰에 耽羅王 姑如가 難波에 이르렀다.⁵⁸⁾

사료 (바)-⑦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5年 2月 條 ; 同 7月 條
[天武天皇 5年(677) 2月] 癸巳에 耽羅의 사신에게 배 1척을 주었다. ... [同 7月] 甲戌에 耽羅의 사신이 돌아갔다.⁵⁹⁾

사료 (바)-⑧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天武天皇 6年(678) 秋8月] 戊午에 耽羅가 왕자 都羅를 보내 조공하였다.⁶⁰⁾

위의 사료 (바)에서 보듯 665부터 678년까지 탐라는 일본에 총 7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63년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막을 내리고 이어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였으며, 676년 나당전쟁이 신라 측의 승리로 귀결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무렵 탐라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사료 (사)-① :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9年 2月 條
[文武王 19年(679)] 2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略하였다.⁶²⁾

사료 (사)-② :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 冬10月 條
[哀莊王 2年(801) 冬10月] 耽羅國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⁶³⁾

한편, 사료 (사)-①에서처럼 신라는 이와 같은 탐라의 행보에 제동을 걸며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사실 文武王 19년(679)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탐라국을 ‘略’하였다는 구절은 좀처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신라의 군사적 경략으로 탐라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기도 하며,⁶⁴⁾ 사신을 파견하여 ‘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의 조공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即位. 由是, 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亦時寒浪險. 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 肇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自筑紫返之.”

57)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八月壬申朔,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58)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9月 條, “九月壬寅朔戊辰, 耽羅王姑如到難波.”

59)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5年 2月 條, “癸巳, 耽羅客賜船一艘.” ; 同 7月 條, “甲戌, 耽羅客歸國.”

60)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6年 秋8月 條, “戊午, 耽羅遣王子都羅朝貢.”

61)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 『탐라문화』 58, 2018, 76쪽.

62)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9年 2月 條, “二月, 發使略耽羅國.”

6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 冬10月 條, “耽羅國遣使朝貢.”

64) 森公章, 앞의 논문, 1986, 139쪽.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⁶⁵⁾ 또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신라가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국주의 항복을 받아내고 속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⁶⁶⁾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略’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신라가 탐라에 대해 외교적 굴복을 받아내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탐라국은 679년 이후로도 일본과 통교를 지속하며 신라에 의해 강제되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는데,⁶⁷⁾ 그마저도 693년 11월의 사신 파견을 끝으로 탐라의 對日 외교가 중단되고 만다. 이는 이미 지적된 바 있듯 탐라의 對日 외교가 신라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사료 (사)-②에서 보듯 신라에 대한 탐라의 조공 기사도 그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⁶⁸⁾ 이후 8세기 무렵 탐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 (아)-① :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 11月 條

또 今月 3일에 軍曹海犬養五百依를 보내어 逆人 廣嗣의 從三田兄人 등 20여 人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아뢰기를 ‘廣嗣의 배가 知駕嶋에서 출발하여 東風을 만나 4일을 가다가 섬을 보았습니다. 배 위의 사람이 ‘저것은 耽羅嶋’라 하였습니다.⁶⁹⁾

사료 (아)-② :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9年(778) 11月 條

壬子에 遣唐使의 제4船이 薩摩國 甌嶋郡에 다다랐다. 그 判官 海上真人三狩 등은 표류하다가 耽羅嶋에 도착하여 섬사람에게 노략질당하고 억류되었다. 다만 錄事 韓國 連原 등이 몰래 밧줄을 풀고 도망갈 것을 모의하여 남은 무리 40여 명을 거느리고 돌아왔다.⁷⁰⁾

사료 (아)-③ :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5月 條

丁巳 朝堂에서 唐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中納言 從3位 物部朝臣宅嗣가 勅을 선포하여, “唐朝의 天子 및 公卿과 國內의 백성은 평안하신가. 또한 海路가 험난하여 한두 使人이 혹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고, 혹은 耽羅에 노략질당하였다는데, 朕이 그것을 들으니 마음이 슬프고 한탄스럽다. …⁷¹⁾

65) 진영일, 앞의 논문, 2007, 225쪽.

66) 박남수, 앞의 논문, 2018, 41~43쪽.

67)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7年(679) 春正月 條, “己卯, 耽羅人向京.”; 同書 卷29, 天武天皇 8年(680) 9月 條, “庚子, 遣高麗使人, 遣耽羅使人等, 返之共拜朝庭.”; 同書 卷29, 天武天皇 13年(685) 冬10月 條, “[辛巳] 是日, 縣犬養連手織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同書 卷29, 天武天皇 14年(686) 8月 條, “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同書 卷30, 持統天皇 2年(688) 8月 條, “辛亥,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同 9月 條, “戊寅, 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同書 卷30, 持統天皇 7年(693) 冬11月 條, “[十一月 丙戌朔] 壬辰, 賜耽羅王子·佐平等, 各有差.”

68) 박남수, 앞의 논문, 2018, 46~51쪽.

69)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 11月 條, “… 又以今月三日, 差軍曹海犬養五百依發遣, 令迎逆人廣嗣之從三田兄人等二十餘人. 申云, 廣嗣之船, 從知賀嶋發, 得東風往四箇日, 行見嶋. 船上人云, 是耽羅嶋也.”

70)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9年(778) 11月 條, “壬子, 遣唐第四船, 來泊薩摩國甌嶋郡. 其判官海上真人三狩等, 漂着耽羅嶋, 被嶋人略留. 但錄事韓國連原等, 陰謀解纜而去, 率遺衆卅餘人而來歸.”

71)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5月 條, “丁巳, 饗唐使於朝堂. 中納言從三位物部朝臣宅嗣宣勅曰, 唐朝天子及公卿國內百姓平安以不. 又海路艱險, 一二使人, 或漂沒海中, 或被掠耽羅, 朕聞之悽愴於懷. …”

사료 (아)-①·②에서 보듯이 이 무렵 일본 측에서는 탐라를 ‘耽羅島’로 표기하면서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아닌 신라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8세기 중반 이후 제주도에서 통일신라 양식의 토기 출토량이 급증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8세기에 접어들면서 탐라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은 점차 강화되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⁷²⁾

이상에서 살펴본 바, 7세기 후반까지 탐라국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백제와 신라 그리고 唐과 일본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섭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7세기까지 탐라국의 대외관계는 주로 자신들보다 국력이 우위에 있었던 주변국을 대상으로 ‘獻方物’ 혹은 ‘貢獻’ 형태의 교섭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탐라국과 주변 세력의 교섭 과정에서 탐라국이 상대국에게 전달한 진상·조공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涉羅가 고구려에 진상하였던 ‘珂’를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조개로 만든 말재갈 장식[玉珂]’이라는 진영일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는데, 海産物이 풍부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당시 탐라의 교역 물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일본 측 기록에 확인된다. 잘 알려진 “耽羅方脯”와 “耽羅鯪”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모리 기미유키[森公章]의 상세한 연구가 있었다. 그는 「天平十年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를 단서로 하여 당시 耽羅와 일본의 교류상과 교역 품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天平 10년(738) 10월 ‘耽羅島人’ 21인이 來日하여 周防國을 지나 平城京으로 가던 중에 周防國이 이들로부터 “耽羅方脯”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마리 삼아 관련 사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당시는 탐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通交가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이때 來日한 耽羅島人は 외교사절이 아니라 漂流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리고 “耽羅方脯”는 鹿·牛·猪 등으로 만든 乾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와 함께 『延喜式』 主計上式에서 肥後國이 “耽羅鯪” 39斤을, 豊後國이 “耽羅鯪” 18斤을 각각 調로서 貢進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또 平城京 유적에서 출토된 木簡에서 天平 17년(745)에 “耽羅鯪” 6斤을 貢上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음을 소개하면서 이 “耽羅鯪”의 명칭이 산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鯪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결론내렸다.⁷³⁾

이후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었는데, 진영일은 이들 탐라인 21명이 표착한 사람들이었다면 周防國이 외국 사신에 대한 식료공급액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거나 일본 조정이 이들을 번거롭게 平城京까지 불러들일 이유는 없으며, 이것은 일본 정부가 탐라인 21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보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우연한 표착이었다면 공물로 진상할 정도의 고급 물품인 “耽羅方脯”를 배에 싣고 다녔을 리 없다고 보아, 이들 탐라도인은 일본 정부와 평소 무역 거래를 하던 민간 상인이었다고 이해하는 한편, “耽羅方脯”의 ‘方’이 국가를 뜻한다고 보아 이것이 “耽羅國에서 일본 조정에 貢上한 말린 고기(脯)”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耽羅方脯”는 앞서 언급한 『延喜式』 등에 나오는 “耽羅鯪”을 말하는 것으로 “탐라산 말린 전복살”로 풀이하였다.⁷⁴⁾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제시되었다. 박남수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2) 김경주, 앞의 논문, 2018a, 43쪽.

73) 森公章 「耽羅方脯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 」, 『続日本紀研究』 239, 1985.

74) 진영일, 앞의 논문, 1994, 31~32쪽. 한편, 耽羅鯪의 교역과 관련하여 수송기간과 운반수단 등을 고려할 때 건조된 형태의 干鯪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41쪽).

- ①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당시 大宰府로부터 周防國으로 발송된 첩에서 대금 지출을 요청한 물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대금 지출 요청서는 天平 10년(738) 4월 19일 大宰府에서 이첩한 것이다.
- ② 당시 대금 지출 요청 물품은 造蘇 4升, 納壺 4口, 乳牛 6頭, 飼稻 48束을 비롯하여, 交易御履料 牛皮 2領(價 稻 170束), 交易鹿皮 15張(價 稻 61束), 耽羅方脯 4具(價 稻 60束), 市替傳馬 11匹(價 稻 2750束) 등이었다. 즉 이들 물품은 大宰府에서 天平 10년(738) 4월 19일 무렵에 매입된 것이다.
- ③ 이와 관련하여 738년 정월에 大宰府에 도착한 金想純 등 147명의 신라 사신단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平城京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재부에 머물다가 같은 해 6월 24일 대재부의 향응을 받고 放還되었는데, 체류하는 동안 교역을 진행하였다.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바로 이 신라 사신단과의 교역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
- ④ 더불어 正稅帳에 “耽羅方脯”와 함께 적혀있는 “交易御履料牛皮”와 “交易鹿皮” 등의 가죽 물품도 일찍부터 신라의 사신들이 일본 조정에 ‘조공품’으로 가져갔던 물품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金想純 일행이 耽羅方脯와 함께 교역한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 牛·鹿 또한 탐라의 특산품이므로, 耽羅方脯와 함께 거래된 牛皮·鹿皮 또한 탐라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 ⑤ 그렇다면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10월 21일 向京의 식료 제공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耽羅島人 21인은 牛皮·鹿皮 교역 및 耽羅方脯와 관련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결국 21명의 耽羅島人은 147명의 金想純 사신단 중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⁷⁵⁾

요컨대, 天平 10년(738) 무렵 신라는 탐라의 특산물을 일본과의 교역 내지 외교적 증여물로 활용하였고, 여기에 일군의 탐라인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사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 주장은 모리 기미유키와 진영일의 주장에서 진일보한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기록에 보이는 耽羅方脯와 함께 牛皮·鹿皮 등의 가죽 물품도 당시 탐라의 주요 교역 물품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牛皮의 경우에는 고려 문종 7년(1053) 2월 탐라의 진상품 중에도 보이며,⁷⁶⁾ 또 『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에서 제주의 주요 물산 중에 전복[全鮑]과 鹿茸 등도 보여 이후 시기에도 牛·鹿·鮑 등이 제주의 주요 산물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탐라 물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자료로서 『扶桑略記』에는 10세기 전반 무렵 신라인이 貪羅嶋에서 ‘海藻’를 교역하다가 표류하여 대마도 下縣郡에 표착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데,⁷⁷⁾ 여기서의 ‘海藻’ 또한 고려 문종 7년(1053) 2월 탐라의 진상품 목록 중에 보이고 있어 탐라의 주요 교역 물품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5) 이상 박남수, 앞의 논문, 2008, 54~55쪽 참조.

76) 『高麗史』 卷7, 世家 7, 文宗 7年 2月 條,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77) 『扶桑略記』 卷24, 延長 7年(929) 5月 17日 條, “이보다 앞서 지난 정월 13일에 貪羅嶋에서 해조를 교역하던 신라인이 對馬 下縣郡에 표착하였다. 嶋守 經國은 [이들을] 安存시켜 糧食을 공급해주고, 아울러 擬通事 長岑望通과 檢非違使 秦滋景 등을 보내 全州로 돌려보내게 하였다(先是, 去正月十三日, 新羅交易海藻於貪羅嶋之■, 飄蕩著對馬下縣郡. 嶋守經國加安存給糧食, 并差加擬通事長岑望通·檢非違使秦滋景等, 送皈全州).”

IV. 맺음말

지금까지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 전개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전달된 탐라국의 진상·조공품에는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보았다.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행 연구 성과에 의지한 채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러다 보니 부분부분 무리한 추정을 앞세우기도 하였음을 자인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을 약속하며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본 발표에서는 耽羅國의 대외교류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백제사나 신라사 혹은 일본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5~8세기 耽羅國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탐라국의 중심의 시선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5~6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은 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교섭의 동인과 전개 과정에서는 476년 백제와의 첫 교섭부터 탐라국의 독자적인 입장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5세기 후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탐라국이 5세기 말경에 백제가 아닌 고구려를 주요 교섭 대상으로 설정하고 ‘珂’를 진상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660년 백제 멸망을 기점으로 탐라가 신라와 일본 및 당을 상대로 다각적인 교섭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탐라국은 耽羅方脯·耽羅鰵 등의 자국 특산물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함께 牛·鹿·鰵·海藻 등이 당시 탐라의 주요 산물이자 대외 교섭에 활용된 진상·조공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 서경문화사, 2017.
- 筧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記研究』 262, 1989(「耽羅王權과 日本」, 『탐라문화』 10, 1990).
-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영남고고학보』 58, 2018a.
-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b.
- 김희만, 「신라와 탐라의 관계기사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8, 2018.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中國正史 東夷傳 校勘』, 2018.
-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
- 森公章 「耽羅方朮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 『続日本紀研究』 239, 1985.
-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 이병도, 「第4篇 三韓問題의 研究 ; 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 『탐라문화』 58, 2018.
- 이청규,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 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 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향로」, 『탐라문화』 58, 2018.

조선시대 阿膠와 魚膠의 진상과 소비

김병모(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목차〉

- I. 서론
- II. 아교와 어교의 종류
- III. 아교와 어교의 공납 지역
- IV. 아교와 어교의 생산과 소비지로의 이동
- V. 아교와 어교의 용처와 소비량
- VI. 결론

I. 서론

아교와 어교는 접착제와 약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젤라틴이라는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아교가 짐승의 가죽과 뼈 등으로부터 추출되는데 비해 어교는 물고기의 부레와 껍질 등으로부터 얻어진다. 양자 모두 물에 끓여 성분을 추출한 후 응고의 과정을 거쳐 제품화하며, 사용 시에는 다시 물에 풀어 액화 상태로 사용한다.

조선시대에 이들 두 물품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란히 함께 등장하며, 이후 줄곧 국가의 稅目을 이루는 재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교는 약재로, 어교는 공물로 구분, 기록됨으로써 稅源으로서 서로 다른 범주에서 인식되었다.

양 물품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구성 성분, 접착의 강도 및 특성, 약리적 효능, 제조법 등을 분석하는데 주목했으며¹⁾, 세원의 대상으로서 생산과 이동, 그리고 소비 등과 관련된 연구는

1) 이영규·황현득·김현중 등, 「어교(魚膠)의 접착특성」, 『목재공학』 32호, 2004; 이준호·유지아·정용재 등, 「제니핀을 첨가한 아교의 접착 특성과 물성 변화 연구」, 『보존과학회지』 34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8; 김지은·유지아·한예빈·정용재 등, 「전통 편금사에 사용된 붉은 접착제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4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김은경·안선아·장성운 등, 「우루시올과 아교를 배합한 천연 접착제의 투명성 및 접착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1권 2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5; 강영석·정혜영·고인희 등, 「백토안료의 전통제법 중 아교수 영향에 관한 연구」, 32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한규정·신수정, 「교착제 종류에 따른 단청의 도막 성능」, 『목재공학』, 2007; 강영석·정혜영·고인희 등, 「백토안료의 전통제법 중 아교수 영향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32권 3호, 보존과학회, 2016; 신광호, 안덕균, 「아교류의 사용과 제법에 대한 문헌조사」; 박지선,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동악미술사학』 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이소연, 윤덕형 등 외 3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7권 3호;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5권 2호; 채미영, 「고구려 벽화무덤의 바탕재에 관한 고찰」, 『고구려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접착제라는 중간소비재적 성격이 강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상품과 소비자 간 밀접성을 적극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세원으로 간주된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국가에서 간행하는 기록물에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세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논쟁의 대상이자 담론의 대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드러냈다. 즉 일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표지로서, 일면 부패의 표지로서 다양한 맥락에서 해당 시대의 정신을 공유하고 반영했다.

본 연구는 이들 물품의 이와 같은 쓰임 및 역할에 주목하고 진공 및 진상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전반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 물품이 조선시대라는 공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성을 갖고 나름의 충격 요소로 기능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II. 아교와 어교의 종류

1) 동아시아 膠의 종류와 명칭

아교와 어교에 공유된 膠는 젤라틴, 즉 난용성 콜라겐으로부터 분리해낸 가용성 콜라겐을 말하며, 이와 같은 젤라틴의 가장 이른 출현은 기원전 1500년 전 이집트 벽화에서 확인된다.²⁾

동아시아에서 젤라틴을 통칭하는 아교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출현 시기는 한대까지 소급된다. 한대에 저술된 『神農本草經』은 그와 같은 소급의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오늘날의 산동성에 속한 東阿縣이라는 지역의 아교 품질이 매우 뛰어난 것에서 그러한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교는 추출되는 원료에 따라 명칭을 달리했다. 짐승의 가죽이나 뼈 등으로부터 추출한 젤라틴은 아교로, 물고기의 부레와 껍질 등으로부터 추출해낸 젤라틴은 어교로, 수생 식물인 海藻로부터 추출해낸 젤라틴은 해조(sea algae)³⁾ 혹은 도박 등으로 불렸다.

아교는 다시 짐승의 종류에 따라 牛膠, 鹿膠, 驢膠, 猪膠, 狗膠, 駝膠, 馬膠, 騾膠 등으로 세분되었다. 어교 역시 부레의 종류에 따라 연어교, 민어교, 석수어교 등으로, 그리고 물고기 껍질로 만들어진 경우 皮膠, 魚鱗 등으로 세분, 지칭되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문헌의 대부분은 짐승으로부터 추출한 교를 ‘아교’로, 물고기의 부레로부터 추출한 교를 ‘어교’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였다. 따라서 이들 기록으로부터 교의 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아교의 원료는 주로 어떤 것이 쓰였을까?

앞서 소개한 동아현의 경우 소와 당나귀 가죽을 이용한 것으로 언급된다. 牛皮와 驢皮는 품질이 우수한 아교를 얻고자 할 경우 유용한 원료에 해당하는데, 동아현의 경우 최상품 약재의 제조 처로 주로 언급되기 때문에 우피와 驢皮에 한정된 원료 제시는 정황에 부합한다. 그리고 『圖經草本』은 동아현에서 제조된 우교에 대해 黃明膠라는 별도의 명칭을 더하고 있는데 이 역

발해연구』9, 고구려발해학회, 2000 등.

2) 기원전 1500년 토토메스 3세 시기 벽화에서 아교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묘사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李鍾祥, 「韓國美術史에서 차지한 高句麗壁畫의 位置」-材料技法을 中心으로-, 2003, 376쪽).

3) 宋中煥, 「고구려 벽화 材料의 物性 및 結合關係 연구-바탕벽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제56집, 고구려발해학회, 2016, 11, 157-158쪽.

시 동아현 우교의 뛰어난 품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우교의 경우 대개 투명한 황색 아교가 상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牛皮와 驢皮에 한정된 아교 원료의 기록은 기타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圖經草本』의 경우 牛皮와 鳥驢皮로, 『本草綱目』(1765, 趙學敏)의 경우 準牛皮, 水牛皮, 驢皮 등으로, 『東醫寶鑑』의 경우 牛皮와 驢皮 등으로 기록한다.

아교의 원료로 牛皮와 驢皮가 주로 언급되지만 그렇다고 전근대시기 아교의 원료가 우피와 驢皮 위주였다고 한정시키기는 어렵다. 앞서 소개한 기록들은 최상품 아교만을 소개하는 의학서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당연히 牛皮와 驢皮 위주의 소개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本草綱目』은 의학서이지만 아교 원료를 상품, 차품, 하품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아교의 원료를 소개하고 있다. 상품 아교의 원료로 牛皮와 驢皮, 차품 아교의 원료로 猪皮, 馬皮, 騾皮, 駝皮 등, 하품 아교의 원료로 舊皮, 鞋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 접착제에 쓰인 차등급 아교의 경우 牛皮와 驢皮 이외의 다양한 원료들이 사용되었음을 드러낸다. 약재를 제외한 접착용 아교 제조에 고가의 소와 당나귀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의 명칭이 어떠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거쳐 정착, 분화되었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다만 아교, 어교, 도박, 진분풀 등의 출현 용례는 이미 고구려벽화와 삼국시대 석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⁴⁾ 고구려벽화에서는 개를 원료로 한 狗膠의 용례도 확인되며,⁵⁾ 고려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鹿角膠의 유입 사실도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다.⁶⁾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駝膠, 驢膠, 騾膠, 水牛膠 등 보다 다양한 아교 용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어교의 경우 관련 기록 자체가 매우 소략하여 여러 면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차이로 인해 중국에 비해 다소 단순한 면모를 내보이면서 膠의 기반을 형성, 전개시켜왔을 것으로 사려된다.

2) 조선시대 출현한 아교와 어교의 종류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아교의 종류는 馬膠, 鹿角膠, 牛膠 등이고, 어교의 종류는 연어교, 석수어교, 민어교 등이다.

馬膠의 제조는 조선 초기 기록에서 확인되며, 죽은 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언급된 내용이어서 마교가 항시적으로 제조, 사용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⁷⁾ 다만 갑작스럽게 죽은 말의 마피를 아교로 제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마치 정해진 제조 절차가 마련된 듯 매우 간략하게 하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마교 제조가 어느 정도 상시적 시스템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갑작스럽게 죽은 마피에 대한 아교의 제조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마교 제조와 관련하여 누가 어느 곳에서 제조를 담당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하달되었을 것이다.

鹿角膠는 마교에 비해 훨씬 빈번한 기록을 보인다. 조선초기부터 줄곧 관련 기록이 나타나며

4) 宋中煥, 앞의 논문, 157쪽; 채미영, 「고구려 벽화무덤의 바당재에 관한 고찰-석회 모르타르를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第9輯, 고구려발해학회, 2000, 55-56쪽; 손환일, 「삼국시대 石碑의 제작과 樣式的 변모」, 『한국사상과 문화』제9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124쪽.

5) 채미영, 앞의 논문, 6쪽.

6) 『고려사』 권9, 문종(文宗) 33년 7월조.

7)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26일 계사조, “各收場死馬皮, 請依舊例, 煮阿膠...(각 목장의 죽은 말 가죽은, 청컨대 옛 전례대로 구워서 아교(阿膠)를 만들거나...)”

비교적 중요한 공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牛膠은 우피를 이용한 제조 사실이 확인된다.⁸⁾ 다만 우피를 사용한 제조 내용의 기록 빈도가 극히 적어 조선시대에 제조된 아교 전체에서 우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 아교에 관한 기록을 할 때 대부분 ‘아교’라는 용어로서 통칭,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우피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면 조선시대에 제조된 아교는 대부분 우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품 약재와 특별한 곳에 사용할 경우 주로 우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교 위주의 아교 생산 가능성은 사실 작지 않다. 다만 우피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다 저가인 猪膠 등의 제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猪膠 등의 제조량 역시 낮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저교에 관한 기록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어교의 하나인 연어교의 경우 부레가 아니라 껍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가 확인된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당시에 생산되던 어교에 비해 품질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피교를 제조, 사용한 이유는 고급 어교의 수급에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⁹⁾

연어교의 경우 문헌 기록의 빈도수가 극히 적어 다량 생산 가능성을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차등 어교의 활용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양의 제조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석수어교는 조기의 부레로 제조된 것이며, 조선시대에 민어교보다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⁰⁾ 하지만 이 역시 기록의 빈도수는 매우 적다. 어교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석수어교의 제조를 주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조선시대 어교 생산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어교는 민어의 부레를 사용하여 제조한 어교이다. 다만 문헌에서 민어 부레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은 찾아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어교의 대부분이 민어 부레를 사용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문헌기록에서 ‘어교’로 통칭, 표현한 경우 대부분 민어교로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교는 다양한 어종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 가능하고, 반드시 부레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헌에서 ‘아교’로 표현된 경우를 민어 부레 어교에 한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경상도 동래현의 경우 민어나 석수어 등의 포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교의 공납 대상 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어교의 원료에 해당하는 어피가 공납 품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민어 부레로 제조된 민어교가 상품 어교의 하나로서 특수 분야에 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어종 혹은 부위로서 제조된 차품 어교의 생산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하겠다.

Ⅲ. 아교와 어교의 공납 지역

1) 貢賦 대상으로서 아교와 어교

8) 『성종실록』 권4, 성종 1년 3월 16일 을미조, “則阿膠所造牛皮不下五六張(아교(阿膠)를 만드는 쇠가죽 5, 6장(張)이 되고)”

9)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27일 정해조, “今依受教, 以年魚皮作膠造弓, 雖不及魚膠, 勝於阿膠, 請自今造弓, 亦用年魚皮膠(이제 수교(受教)에 의하여 연어피(年魚皮)로써 아교(阿膠)를 만들어 활을 만드는데, 비록 어교(魚膠)에는 미치지 못하나 아교보다는 나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활을 만드는데는 또한 연어피의 부레를 쓰게 하소서)”

10) 『세조실록』 권21, 세조 6년 7월 1일 을해조, “魚膠出於石首魚者, 最宜造弓”.

조선시대에 아교와 어교는 모두 貢賦 대상에 해당했다. 단, 『세종실록』지리지의 아교는 주로 약재로서, 어교는 주로 土貢 대상으로 다르게 구분, 기록했다. 아교의 하나인 鹿角膠 역시 주로 약재로 구분, 기록했다.

아교의 경우 주로 접착제와 약재 2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가능하면 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기록방식에 따라 접착제가 아닌 약재 부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공품은 주로 세공 대상으로, 약재의 경우 상품은 주로 進上 대상으로 다르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아교를 약재 부문에 포함시켰을 가능성, 접착제로서의 상공 수량과 약재로서의 상공 수량을 고려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쪽으로 분류했을 가능성 등도 제기될 수 있다.

2) 어교의 공납 대상 지역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 초기 어교의 공납지역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등이 포함되었고, 경기도, 강원도, 함길도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어교의 주요 원료로 판단되는 민어, 석수어 등이 토공품으로 확인되지만¹¹⁾ 근거리라는 지정학적 여건상 숲과 같은 공물이 과도하게 부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교의 공납을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원도와 함길도의 경우 민어, 석수어 등의 포획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 貢稅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전라도의 목에 해당하였던 제주도는 어종 문제도 있었겠지만 열악한 환경 조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충청도의 경우 홍주목,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등 4개의 목 가운데 내륙에 위치한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등에 대해서는 공납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바다를 낀 홍주목에 한정시켜 공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홍주목에서는 아래에 속한 3개 군과 8개 현 가운데 태안군, 해미현, 당진현, 보령현, 결성현 등 바다를 낀 지역을 중심으로 공납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어교가 공세로 부과된 지역의 경우 민어, 석수어 등의 어종이 토공품으로 기록되고 있어 어교 원료로서 민어 및 석수어 등의 사용 가능성을 좀 더 적극 고려케 한다.

경상도의 경우 경주부, 안동 대도호부, 상주목, 진주목 등 2개 부와 2개 목 가운데 바다를 끼고 있는 경주부와 진주목을 중심으로 공세 의무가 부과되고, 내륙 쪽에 위치한 안동대도호부와 상주목은 공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경주부의 경우 1개 부와 5개 군, 10개 현 가운데 부산지역인 동래현에 한정시켜 공세 부담을 부여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바다를 낀 울산현을 포함하여 대부분지역이 공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동래현에서도 민어, 석수어 등의 어종은 확인되지 않고 대구, 청어, 방어 등 다른 어종이 확인되고 있어 민어 및 석수어 이외의 어종을 이용한 어교 제조 가능성을 고려치 않을 수 없게 한다. 바다를 넓게 끼고 있는 진주목의 경우 2개 도호부, 3개 군, 12개 현 가운데 김해도호부, 창원도호부, 고성현, 사천현, 진해현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역시 공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민어나 석수어 등은 산출되지 않고 있어 기타 어종의 어교 생산 가능성을 고려케 한다. 일례로 사천현

11) 『世宗實錄』지리지에는 경기도 전체의 토공품을 소개하는 항목과 경기도에 속한 일부 지역 토공품 항목에서 민어를, 지방 토공품 항목에서 민어, 석수어 등의 경기지역 어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부평도호부 교동현의 경우 토공품으로 송어와 민어가 기록되어 있다. 『輿地勝覽』(1481)을 수정·보완하여 1531년에 완성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경기지역 어종으로 민어와 석수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신편한국사』).

산출 어종으로 홍어, 문어, 황어, 은구어, 대구어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거제현의 경우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인구가 423명에 불과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공납 대상에 해당된 지역의 경우 대개 인구가 1000명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구가 가장 작은 진해현이 953명이고 나머지의 경우 사천현 1817명, 고성현 2885명, 김해도호부 6642명 등으로 2000명을 상회한다.

전라도의 경우 전주부, 남원도호부, 장흥도호부, 나주목, 제주목 등 1개 부와 2개 도호부, 그리고 2개 목 가운데 나주목에 대해서만 어교 공납을 부과하고 있다.

전주부의 경우는 만경현, 김제현, 부안현 등 바다를 낀 다수의 현에 대해 공납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민어는 산출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만경현의 경우 부레 어교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조기를 포함하여 청어, 상어 등 기타 어종이 토산품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부안현 역시 어업기반의 기초가 되는 어량소 2개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교 공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어교를 공물로 부과한 나주목 역시 여러 지역이 바다에 접해 있지만 오늘날 조기로 유명한 법성포가 속해있는 영광군에 한정하여 어교 공납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목포가 속한 무안현, 완도 등이 포함된 강진현 등의 경우도 어족이 풍부한 지역으로 예상되는데 어교의 공납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의 경우 토공 혹은 토산품으로 다양한 어족의 확인이 어려우며, 민어, 석수어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어교 공납 대상인 영광군의 경우 민어, 석수어 등의 산출은 확인되지 않지만 어량소가 13개소에 이르러 어량소가 없는 강진현 및 무안현 등에 비해 풍부한 어업 문화 기반을 예상케 한다.

황해도의 경우 아래에 속한 황주목, 해주목, 연안 도호부, 풍천군 가운데 연안도호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어교 공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주목의 경우 4개 군과 1개 현, 1개 도호부 가운데 유일하게 토공품으로 송어 등 포획 어종이 확인되는 안악군에 한정하여 어교 공납이 부과되고 있다. 풍천군의 경우 4개 현 가운데 어족 자원 확보가 안되는 문화현, 송화현을 제외하고 1개소 어량소가 각각 조성된 은율현과 장연현에 어교 공납이 부과된다. 해주목의 경우 토공품으로 어교, 토산품으로 석수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래에 속한 재령군, 웅진현, 장연현, 강령현, 신천현 등 1개 군과 4개 현의 토공품 중에서는 어교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웅진현과 장연현은 바다를 끼고 있어 어족이 풍부한 지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교 산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지만 어느 곳에서도 어교 생산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평안도의 경우 평양 평양부, 안주목, 의주목, 삭주 도호부, 강계 도호부이 속해 있지만 어교 공납 대상이 된 지역은 의주목에 속한 용천군과 철산군뿐이다. 용천군의 경우 여러 어종을 포함하여 민어와 석수어가 토산품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철산군의 경우 민어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토공품으로 상어껍질(沙魚皮)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교 원료로서 상어껍질의 소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기타 의주목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래에 속한 선천군의 경우 민어와 송어 등이 토공품으로 기록되고 있음에도 토공품으로 어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면 어교의 원료로서 민어 이외에 다른 어종의 부레의 사용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경우들이 다수 나타나고, 심지어 어피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케 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3) 阿膠와 鹿角膠의 공납 대상 지역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아교를 약재로서 포함시킨 곳은 8도 가운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등 6개 도이다. 어교의 공부 대상 지역 가운데 평안도가 제외되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더해지고 있다. 아교의 경우 어교와 달리 육지의 짐승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교에 비해 생산지역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아교에 대한 기록은 어교와 달리 도 전체의 공물을 포괄, 소개하는 도 단위 산출품 항목에서만 다루고 있다. 즉 도에 속한 지방 단위의 항목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도에 속한 광주목과 양주, 수원, 철원, 부평 등 4개 도호부에서는 아교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의 경우 토공품과 약재 등의 기록이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민어와 같은 토공품의 경우 도 단위 기록과 지방 단위 기록에서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재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 태도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아교의 경우 지방 단위의 기록 부재 및 생략으로 인해 산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鹿角膠의 경우, 전체 8도 가운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등 5개 도에서 산출 기록이 확인된다. 아교와 마찬가지로 주로 약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출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우 기대와 달리 약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鹿角膠 산출 지역에 포함된 5개 도 가운데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의 경우 도 단위 약재를 소개하는 항목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지방 단위 약재 항목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지방단위에서 鹿角膠 산출에 관한 기록을 한 경우는 전라도와 강원도뿐이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의 기록을 통해 鹿角膠 산출 기반을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도의 경우 전주부, 남원도호부, 장흥도호부, 나주목, 제주목 등 전 지역에서 鹿角膠 산출 기록이 확인된다. 전주부의 경우 4개 군과 11개 현 가운데 금산군, 태인현, 고산현 등 3개 군현에서 약재 항목에 록각교가 포함되었으며, 남원도호부의 경우 1개 군과 9개 현 가운데 무주현, 곡성현 등 2개 현에서, 장흥도호부의 경우 2개 도호부, 3개 군, 7개 현 가운데 화순현과 옥곡현 2개 현에서, 나주목의 경우 3개 군과 8개 현 가운데 흥덕현과 장성현 2개 현에서 약재에 포함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릉 대도호부, 원주목, 화양도호부, 삼척도호부, 춘천도호부, 간성군 가운데 강릉대도호부와 원주목 등의 지역에서 鹿角膠 산출기록이 확인된다. 강릉대도호부의 경우 양양도호부와 정선, 평창 2개 군 가운데 정선군에서, 원주목의 경우 영월군과 횡성, 홍천 2개 현 가운데 영월군에서 각각 鹿角膠 산출 기록이 확인된다.

지방행정 단위에서의 록각교 기록이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鹿角膠 산출 기반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전라도의 경우를 근거로 할 경우 총 48개 지방 행정 구역 가운데 9개 군현에서 록각교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와 달리 비교적 광범위한 鹿角膠 산출 기반을 예상케 한다.

이상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초하여 조선 초기 아교와 어교의 공부 대상 지역 및 산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지역을 표로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초한 조선 초기 아교와 어교의 공부 대상 지역 및 산출지

구분	어교	아교	녹각교	비고
경기도				
충청도	홍주목의 태안군, 해미현, 당진현, 보령현, 결성현 등	*	*	*표시; 도 단위 약재 항목에 한정시켜 기록한 경우
전라도	나주목의 영광군	*	전주부의 금산군, 태인현, 고산현 등, 남원도호부의 무주현, 곡성현 등, 장흥도호부의 화순현, 옥과현 등, 나주목의 흥덕현, 장성현 등	
경상도	경주부의 동래현, 진주목의 김해도호부, 창원도호부, 고성현, 사천현, 진해현 등	*	*	
황해도	황주목의 안악군, 해주목, 풍천군의 은율현, 장련현 등	*		
평안도	의주목의 용천군, 철산군 등		*	
강원도		*	강릉대도호부의 정선군, 원주목의 영월군	
함경도				

IV. 아교와 어교의 생산과 소비지로의 이동

1) 어교와 아교의 稅目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토공품에 기록된 어교와 약재에 기록된 아교 및 鹿角膠는 분류 기준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납제 대상, 즉 모두 공물에 해당했다. 공납제이란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고 현물을 수취함으로써 국가 수요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이때 납부하는 현물이 바로

공물에 해당한다. 조선 초기 공물은 常貢과 別貢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常貢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 歲貢, 혹은 元貢 등으로 불렸다. 이에 비해 別貢은 상공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목으로 別卜定貢物로도 불렸다. 이외에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이나 국가 제사에 사용하도록 진헌하는 진상제도가 있었으며, 주로 귀한 약재와 음식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진상품은 처음에 공물과는 구분되는 것이었으나 점차 물목(物目), 수량, 상납기한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세공과 거의 다름없는 범주로 자리를 잡았다.

어교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공물로 분류되고, 조선 초기에 이미 歲貢品으로 京納된 사실도 확인된다.¹²⁾ 아교와 鹿角膠의 경우 약재로 분류되어 공납품으로서의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역시 태종 17년(1417)에 황해도에서 한성의 군기감에 아교를 봉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모두 건국 당시부터 공납품의 하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아교와 鹿角膠의 경우 약재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접착제로서 광범위하게 쓰이며 소비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 공납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 최상품의 어교 및 아교를 포함하여 워낙 귀한 약재에 해당했던 鹿角膠 등은 때때로 진상품의 하나로도 기능했다. 세종 22년조에 이민족이 바친 물품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가끔 어교를 증여하는 자가 있어, 빛이 깨끗한 것은 진상하고 깨끗지 못한 것은 영중 군기(營中軍器)를 수선하도록 예비하는바...”라는 내용에서 진상품으로서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¹³⁾ ‘진상’이라는 명칭은 세종대 이르러 ‘왕에게 받치는 행위’에 한정되어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된 바 있으므로 이 기사의 ‘진상’이라는 표현은 표현 그대로 진상제도로서의 진상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태종 17년조에도 “농사일에 방해가 되고 또 절요(切要)한 약(藥)도 아니니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¹⁴⁾ 이 역시 좋은 약재의 경우 공상, 즉 진상의 대상으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실례를 제공한다.

아무튼 조선은 건국 직후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전세를 비롯한 각종 貢物, 進上, 賦役 등에 관한 稅入表를 제정함으로써 공납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15여년이 지난 1408년에는 함길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개 도에, 다시 5년이 지난 1413년에는 함길도와 평안도를 포함한 전국에 그러한 제도를 확대, 시행했기 때문에¹⁵⁾ 어교, 아교, 鹿角膠 등은 건국 직후 즈음부터 줄곧 공납제 대상 품목으로서 공물의 하나로 취급되었다고 하겠다.

2) 어교와 아교의 分定과 생산

그렇다면 지방 군현에 부과된 아교와 어교의 공물 수량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정되었을까?

조선 초기 각 군현에서 납부해야 할 공물 수량은 대체로 군현의 토지 넓이와 사람의 수에 기초하여 중앙 조정에서 분정을 진행했으며, 공물 수량, 즉 貢額이 정해지면 이를 각 군현에 분정하고, 군현은 다시 이를 민호에 분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⁶⁾ 따라서 아교와 어교의 분정도

12)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조, “用阿膠造弓, 不如魚膠, 近以黃海道歲貢輸平安道. (諸)(請) 依此例, 量送魚膠. 且弓房及軍器監諸道歲貢甚多, 請除京中所用外量數入送, 以爲常法(아교를 써서 활을 만드는 것이 어교를 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근래 황해도의 세공(歲貢)을 평안도에 수송하고 있으니, 모두 이 예에 의하여 어교를 적당히 보내게 하소서. 또 궁방(弓房)과 군기감에는 여러 도의 세공이 심히 많으니, 청컨대 경중(京中)에서 소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적당한 숫자를 들여보내어, 이로써 상법을 삼으소서)”.

13) 『세종실록』 권 90, 세종 22년 7월 17일 정사조, “有贈魚膠者, 色潔則進上, 不潔則備修營中軍器...”

1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9일 갑자조, “有妨農務, 且非切要之藥. 除供上外...”

15) 金鎭鳳,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22호, 한국사학회, 1973, 2~3쪽.

16) 김창희, 「태조~세종대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 『사학연구』123호, 한국사학회, 2016, 21-23쪽.

기본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 및 과정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군현에 분정된 아교와 아교의 수량, 즉 공역에 관하여는 자료 미비로 인해 현재로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다.

각 군현은 할당된 공물액을 마련하여 중앙에 보내게 되는데, 각 군현이 분정된 공물을 마련하는 방식은 대개 민호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수공업 제품의 경우 대개 所와 같은 곳에서 전문인에 의해 마련되었다.

아교와 어교, 그리고 녹각교의 경우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섬세하고 정제된 전문적 가공 공정 및 과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자의 방식을 거쳐 생산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다만 군현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량소, 도자기를 굽는 도자소, 소금을 생산하는 염소 등의 설치는 확인되지만 어교 및 아교 제조와 관련된 소의 설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재난이나 전쟁 등 특별 수요가 발생하여 군현에서 공납한 물량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철과 같이 군현에서 일반 백성이 제조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국가가 직접 각도에 공장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모아 제조케 함으로써 국가 수요에 대응했다.¹⁷⁾ 즉 관찰사의 관할 하에 外工匠으로서 冶匠, 木匠, 漆匠, 石匠, 彫刻匠 등 여러 유형의 工匠을 수십 명씩 정원을 두고 운영했다.¹⁸⁾ 일례로 大典會通(1785)에 규정된 경상도 지역 외공장 정원의 경우 冶匠 121명, 木匠 69명, 漆匠 73명 등이 배정되었다. 하지만 외공장으로서 어교장과 아교장에 관한 정원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생산체제하에서 어교와 아교의 생산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군현에서 중앙 조정에 납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아교와 아교의 생산 주체와 생산 방식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이해가 쉽지 않다. 더구나 대동법 실시 이전에도 군현에서 현물 준비가 어려울 경우 포 등으로 대납하거나 공납을 대신하는 방납 등이 출현한 상황이었으므로¹⁹⁾ 어교와 아교에 대해 군현단위 현지 생산을 전제하여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황해도, 평안도 등에서 중앙에 공납할 어교 등을 직접 함길도로 이송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방납보다는 현물 제조 혹은 대납 가능성 비중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교와 아교는 공납을 위해 어떤 상태로 제품을 생산했을까?

어교와 아교, 그리고 녹각교의 공납에 관한 기록은 모두 ‘어교’, ‘아교’, ‘녹각교’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역시 예외없이 ‘어교’, ‘아교’, ‘녹각교’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젤라틴을 추출하여 응고시킨 완제품 형태의 공납을 예상케 한다. 실제로 지방에서 공납되는 어교 및 아교의 수량을 ‘斤’으로 계량하기 때문에 완성품 형태의 공납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교의 주 재료로 언급되는 牛皮의 경우 계량 단위로서 ‘斤’이 아닌 ‘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방식의 공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황해도에서 한성의 군기감에 납부하는 아교의 경우 阿膠皮 상태로 봉납한 사례 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²⁰⁾ 이 사례의 경우 계

17) 김창희, 위의 논문, 23쪽.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권10 조선편, 1979.

19)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2015; 조순규,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歷史學研究』제72집, 2018; 김진봉, 「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 『사학연구』26, 한국사학회, 1975, 68-69쪽;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의 특징」, 『인문학연구』13-5,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강제훈, 「조선 세조대 공물대납정책」, 『조선시대사학보』36, 2006 등.

20)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9일 갑자조, “豐海道陳言內一款, 軍器監納阿膠皮, 不擇厚薄大小, 以其斤兩, 定數捧納(풍해도의 진언 내용에 있는 한 조항에, ‘군기감에 납부하는 아교피(阿膠皮)는 후박과 대소를 가리지 말고 근량으로 수량을 정하여 봉납하게 하소서’)”

량단위로서 張이 아닌 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족상태로서 봉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남긴다.

특히 어교와 아교를 대량 관리, 소비하는 군기시와 선공감의 경우 조선초기부터 줄곧 아교장이 임명되어 있어 아교 제조자로서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들 아교장이 직접 아교 제조를 담당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1785년 간행된 『대전통편』에는 당시 군기시에 배정된 아교장 정원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조보다는 관리 혹은 성형한 아교를 사용할 수 있게 온수에 浸水시켜 액화하는 사전 준비 작업 등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교의 경우 선공감과 군기시에서 대량 사용, 관리하면서 각 관사에서 요구하는 아교의 지급 등도 관장하였기 때문에 아교를 전문으로 보관, 관리하는 인원 역시 필요했다. 또 1904년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보낸 國血에 소요된 물품 명세서에 阿膠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청한 숯의 양이 1兩 가격 정도의 비교적 소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교장은 아교 제조보다는 성형된 아교의 액화와 같은 일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²¹⁾ 아교뿐만 아니라 어교 역시 군기시에서 상당량을 보관, 소비하는 구조였는데²²⁾ 어교장은 아예 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기시에서 어교를 직접 제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다만 1785년 당시 군기시에 배치된 漆匠의 경우 12명, 弓人의 경우 90명, 冶匠의 경우 130명에 이르기 때문에 군기시에 배치된 장인들이 모두 관리 혹은 사전 준비작업 정도의 간단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일부 건조된 부레 및 가족 상태의 공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3) 군현에서 소비지로의 이동

그렇다면 군현에서 공납품으로 준비한 어교와 아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중앙 각 관사로 이동이 이루어졌을까?

군현에 분정된 공물이 군현단위에 모이면 지방관사는 송부 날짜와 물건의 수량 등을 적은 송장을 중앙의 호조에 보냈다. 호조는 송장을 받아 송부한 날짜와 물건의 수량을 기록한 후 공물을 수령한 중앙의 각 관사에 문서를 보내 수령을 명했다. 한마디로 지방, 즉 외방에서 올리는 모든 공물은 문서상으로는 호조가 총괄하는 체제였다.²³⁾

호조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중앙 각 관사의 관리는 외방에서 올라온 공물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수령 즉시 문서 내용과 실제 공물의 종류 및 수량이 맞는지를 대조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즉시 호조에 보고하여 다시 한번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면 호조는 다시 공물을 납부한 지방관사, 즉 貢吏에게 각 관사가 수령한 공물 현황을 기록하여 내려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지방 공리는 보낸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공리가 중앙에 공물을 상납할 때도 수령이 발급한 진성을 받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공납품이 사사로이 유출되거나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상황들을 방지했다.²⁴⁾

어교와 아교 역시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1차 소비지인 중앙 각 관사로 보내졌을 것이다. 물론 중앙 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 최종 소비지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출현했다. 특히 함길도와 같은 변방에서 시급하게 무기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평안도나 황해

21) 『宮內府去來案文牒』 6. 〈照會〉. 照會는 문서명에 해당하며 출전은 각사등록임.

22) 군기시에서 어교 사용의 용례는 군기시에서 지방에 화피(자작나무껍질)를 지방에 보내 어교로 교환하는 안건을 다룬 비변사등록 인조 2년(1624) 5월 28일조 참조.

23) 김삼기, 「朝鮮前期 종이 貢納制 研究」, 『역사민속학』 15호, 한국민속역사학회, 2002, 86-87쪽.

24) 김삼기, 위의 논문, 86-87쪽.

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직접 어교와 아교를 이송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앙 관사 가운데 어교와 아교를 대량으로 수령, 관리, 사용하는 기관은 군기시와 선공감이었다. 군기시는 병기 제조 등을 관장한 관청이었고, 선공감은 토목·영선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청으로서 양 기관 모두 어교와 아교의 최대 소비처이자 유일하게 전문 아교장이 두어진 2개 관부에 해당했다. 다만 양 기관에 아교장은 배정했으면서 어교장은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교의 공납량 및 소비량이 아교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교장으로 하여금 어교 관련 업무까지 관장시킨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

군기시와 선공감 이외에 내궁방이나 상의원 같은 기관은 필요한 어교와 아교를 진상 등의 방식을 통해 지방으로부터 직접 공납 받아 사용했다.²⁵⁾ 뿐만 아니라 임시 설치된 도감의 경우 尙衣院, 訓局, 禁衛營, 御營廳 등과 같은 관사에 어교와 아교를 분정하여 수령, 사용하기도 했다.²⁶⁾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 관사는 군기시와 선공감으로부터 필요한 아교와 어교를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임시기구인 국장도감 역시 기물제작에 필요한 어교 및 아교를 대부분 군기시와 각 군문을 통해 확보했다.²⁷⁾ 지방 관사 역시 간혹 군기시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어교와 아교를 수령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체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공납품으로 京納된 어교와 아교의 경우 비교적 일목요연한 유통 및 이동의 소비체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어교와 아교가 주로 공납 형태로 진행될 경우를 토대로 하여 생산 및 소비자의 이동 과정과 방식 등에 관하여 대략을 검토한 것이다. 방납을 통한 경우 혹은 17세기 초 대동법 실시 이후 중앙 및 지방 각 관사에 이루어진 어교 및 아교의 수급 과정 및 방식은 군현에서 현물로 공납하는 체제와는 다르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소급, 이해하기는 어렵다.

V. 아교와 어교의 용처와 소비량

1) 어교의 용처와 소비량

접착제와 약재로 사용된 어교와 아교 및 녹각교의 구체적 사용처는 주로 어디였을까?

먼저 어교의 경우 지방에서는 주로 병기 제작에 쓰였다. 그 가운데서도 활의 제작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다. 활에 대한 대량 소비는 무엇보다도 아교에 비해 접착성과 유연성에서 뛰어난 특질을 갖춘 것으로 인식, 이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각궁, 즉 짐승 뿔을 활용한 활 제작에서 매우 특화된 물품으로서 소비되었다. 각궁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ㄷ’자 만곡형 활로서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등에서도 이미 그 기본 유형을 주지시킨 바 있다.

25) 충청도에서 표피, 호피 등을 포함하여 매년 어교 60근을 내궁방(內弓房)에 직접 진상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이에 관하여는 『비변사등록』 36책 속종 8년(1682) 12월 05일조 참조).

26) 이에 관하여는 승정원일기 235책(탈초본 12책) 현종 14년 8월 21일 무오조의 ‘大輦의 着筋과 長杠 수리에 들어가는 牛筋과 魚膠가 부족하므로 尙衣院 등에서 취용할 것을 청하는 安嬪의 계’와 『영조 국장도감의계(英祖國葬都監儀軌)』 등을 참조.

27) 이에 관하여는 『승정원일기』 573책 (탈초본 31책) 영조 즉위년 9월 15일 을묘조, 『승정원일기』 301책 (탈초본 15책) 속종 9년 12월 24일 신유조의 “大輦長杠의 수리에 필요한 牛筋魚膠 등을 各軍門에서 取用하기를 청하는 國葬都監의 계” 등을 참조

만곡형 각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뿔이다. 짐승의 뿔은 V자형 섬유질로 되어 있어 현을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좌우 비틀림을 막아 준다. 즉 활이 본래 모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 기능을 한다.²⁸⁾ 이를 위해 뿔을 활의 오금에 덧대어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유효사거리를 확보했다. 각궁 이외에 목궁(木弓), 철궁(鐵弓), 죽궁(竹弓) 등 여러 가지 활이 출현해 있었지만 각궁이 보여준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만곡형 각궁은 여러 부자재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활의 골격과 강도를 결정하는 대나무, 탄력성과 세기를 조절하는 소등힘줄(牛背筋), 복원시 충격을 완화하는 참나무(橡), 화살 속도를 지속 유지시키는 뽕나무(桑), 통풍성을 돕는 자작나무껍질(樺皮) 등을 뿔과 함께 서로 접합, 합성시킬 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²⁹⁾ 따라서 이들 부자재들을 견고하게 접착시키고, 나아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케 할 수 있는 접착제가 핵심 관건에 해당하는데, 부레에서 추출한 어교는 그러한 쓰임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발휘했다. 다시 말해 균함과 풀림이 자유롭게 기능하는 접착제, 즉 어교가 만곡 형태의 활 모양과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접착제로 기능했던 것이다.³⁰⁾

이러한 만곡형 각궁은 조선시대에 중요한 병기 가운데 하나로 위치해 있었다. 특히 작은 크기에도 사거리와 세기에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북방 변경의 기마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여진 및 명과 대립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이시대의 변란까지 이어갔던 조선 초기 상당기간 동안 어교의 수급 문제는 늘 군사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중앙 조정 역시 지방으로부터의 어교의 수급이 충분치 않았고, 따라서 어교를 제때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변방의 병영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에 종종 직면했다.

조선 초기 북방 변경무역에서 어교가 중요한 수입 물품의 하나에 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³¹⁾ 바로 그와 같은 긴요성과 시급성 역시 하나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즉 전투력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어교는 금은 등을 지불하면서까지 확보해야만 하는 긴요하고 시급한 재원의 하나에 해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긴요성과 시급성은 국내적으로는 경남용 공물인 어교를 황해도 등의 지역에서 직접 평안도 및 함길도 등으로 이송시키는 상황을 출현시키기도 했고, 각 관사에 남아있는 어교를 차출하여 이송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교 수급 문제는 단순히 북방지역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었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병사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어느 병영에서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늘 대두했다. 즉 양질의 활 제작에 있어서 어교는 언제나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재원의 하나로 인식되고 기능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보낼 선물용으로 그리고 왕실 행사에 기여를 하거나 뛰어난 학자들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 별조궁이라는 또 다른 활도 제작했다.³²⁾ 검은색 뿔을 사용한 합성궁으로서 뿔은 주로 나가사키나 남만 등에서 들여왔으며,³³⁾ 최고의 장인들을 선발하여 내궁방에서 제작

28) 최석규·정희석, 「국궁의 고대사적 전통」, 『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4- 2, 한국스포츠인류학회, 2009, 125-149쪽.

29) 최석규, 「각궁의 제작의 특성 연구: 경기 부천·경북 예천 계열을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제22권 제2호, 대한무도학회, 2020, 5쪽.

30) 최석규, 「각궁의 제작의 특성 연구: 경기 부천·경북 예천 계열을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제22권 제2호, 대한무도학회, 2020, 2쪽; 최석규, 『조선시대 궁술의 사회·문화적 기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31) 李相佰, 『韓國史 -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1962, 134~141쪽.

32) 장경희, 「조선 후기 내궁방(內弓房) 궁내인(內弓人)의 별조궁(別造弓) 제작실태」, 『東方學』42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207쪽.

33) 『承政院日記』숙종 18년 11월 23일 무진조, 12월 2일 병자조, 3일 정축조; 『承政院日記』숙종 15년

했다. 접착제는 당연 상품 어교만을 사용했다.³⁴⁾ 내궁방은 처음에 선공감에 속해 있다가 세종 20년(1438)에 상의원으로 분속되었는데 분속의 배경도 상품 어교의 사용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국대전이 편찬된 성종 당시 이곳에서는 弓人 20명과 矢人 18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1년에 1인당 약 50장의 활을 제작하면서 총 150근의 상품 어교를 소비했다.³⁵⁾

화살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화살촉 반대편에 깃털을 장착하여 날개(깃)를 만드는 과정에 어교가 상품의 접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³⁶⁾ 화살의 깃은 화살의 무게중심을 화살촉이 있는 앞쪽으로 이동시켜 화살이 전방으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주로 꿩이나 학의 깃털로 제작했다. 이와 같은 깃의 제작에 아교보다 어교를 선호했던 것은 어교 사용 시 화살의 비행 성능 유지가 좀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화살 제작을 위해 변방에 箭竹과 雜羽를 보낼 때 대부분 어교가 함께 보냈던 이유의 하나였다.³⁷⁾

어교는 활과 화살 제작 이외에 기타 주갑이나 칼 등을 여러 병기의 제작에도 소비되었다. 물론 왕이나 장수 등 고위직 주갑을 제작할 때 사용했고 일반 병사의 주갑을 제작할 경우에는 주로 아교를 사용했다. 활과 화살을 중심으로 하는 병기 제작이외에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의 제작 및 보수에서도 상당량의 어교가 소비되었다. 아래 표는 1905년 치러진 국장에서 여러 기물 제작에 소비된 어교의 양이다.

【표 2】 1905년 국장에서 소요된 어교의 양

기물 종류	어교 소비량	비고
대여	8냥	
神帛腰輦一坐	2냥	
滿頂骨平牀一坐	3근 4냥(52냥)	1근=16냥
長足兒二坐	2냥	
排案牀五坐	10냥	
讀冊牀三坐	3냥	
紅紗方燈四坐	3냥	
服玩函外櫃一坐所入	3냥	
寶盞一部朱盞一部	3냥	
贈玉一端	1냥	
贈帛十端	1.5냥	
進上印本粧貼二件分兒粧貼十三件	3.5냥	
進上印本簇子二件分兒印本粧貼十三件	6냥	
內櫃一坐外櫃一坐臺一坐倚几一坐造成	2냥	

1근은 16냥이므로 총 100냥, 즉 6.25근의 어교가 기물의 제작에 소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왕실행사의 경우 대개 수십 근의 어교가 소요되었다. 일례로 숙종 9년(1683) 大輦와 長杠의 수리를 위해 국장도감에서 올린 계에는 100근,³⁸⁾ 1688년에 국장도감에서 올린 계에서는 70근

12월 19일 신사조 등 참조.

34) 장경희, 앞의 논문, 208쪽.

35) 『承政院日記』 숙종 18년 12월 14일 무자조 참조.

36)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2월 6일 무오조, “今後依此例製造, 須用魚膠接翎(금후로는 이 예(例)에 의하여 만들고, 모름지기 어교로 살깃(翎)을 붙일 것입니다)”.

37)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6일 신해조, “今送箭竹三萬箇、魚膠三百斤, 分諸本營及諸鎮, 以(修)〔備〕兵用”.

의 어교를 요청하고 있다.³⁹⁾ 심지어 1673년 遷陵都監에서 올린 계에 의하면 지급된 200근 가운데 104근을 소비한 경우도 확인된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기타 기물의 제작과 수리에도 적지 않은 양의 어교가 지급, 소비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17세기 함길도 변방 전체 鎭堡의 병기 제작 및 수리에 지급한 어교의 1년 지출량은 300근 정도였다.⁴¹⁾ 비변사등록에는 전례에 따라 효종 7년(1656) 300근의 어교를 지급하고, 명년에도 동일하게 300근의 어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시대적 가감이 있겠지만 17세기 중엽 함길도에 지급된 1년 어교량 300근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어교가 중앙 관사에서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접착제로서 어교의 소비는 묘실 벽화에서도 쓰임 가능성 등이 고려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묘실벽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았지만 묘실벽화를 다수 제작하던 고구려시대에는 조지벽화 제작에 어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²⁾ 조지벽화란 석재 위에 회를 칠하지 않고 맨 바닥에 직접 채색을 가하는 벽화 제작법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거친 석면 위에 안료를 접착시키는 공정에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중간재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아교보다 접착력이 강하고 습기에도 잘 견디는 어교의 활용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거친 환경에 어교의 접착성과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약재로서 어교의 소비는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북방 변경에 파견된 장수들이 여진족으로부터 받은 어교 가운데 빛이 깨끗한 것은 진상하고 깨끗지 못한 것은 무기 수선을 위해 예비한 것으로 보아 약재로서의 어교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⁴³⁾

어교의 전체 소비량에서 약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효의왕후책례도감의궤(孝懿王后冊禮都監儀軌)에서는 工人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으로 어교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확인된다.⁴⁴⁾ 그리고 중국에서 온 칙사들이 사용할 화살 역시 상품 어교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특별한 선별하였다는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는 기록도 확인된다.⁴⁵⁾ 어교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18세기 부정부패의 온상으로서 어교군과 어교계의 출현⁴⁶⁾에는 바로 이와 같은 어교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하나의 토대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38) 『승정원일기』 301책(탈초본 15책) 숙종 9년 12월 24일 신유조의 ‘大輦長杠의 수리에 필요한 牛筋 魚膠 등을 各軍門에서 取用하기를 청하는 國葬都監의 계’ 참조.

39) 『승정원일기』 331책(탈초본 17책) 숙종 14년 9월 24일 계사조의 ‘大輦의 長杠에 소용되는 筋膠를 각 군문에 비축된 것을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는 國葬都監의 계’ 참조.

40) 『승정원일기』 235책(탈초본 12책) 현종 14년 8월 21일 무오조의 ‘大輦의 着筋과 長杠 수리에 들어가는 牛筋과 魚膠가 부족하므로 尙衣院 등에서 취용할 것을 청하는 安嬪의 계’ 참조.

41) 『비변사등록』 18책, 효종 7년 11월 13일조의 ‘北道에 箭竹과 魚膠를 들이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와 『비변사등록』 18책, 효종 7년 11월 20일조의 ‘北道에 魚膠를 추가 分定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등 참조.

42) 채미영, 앞의 논문.

43)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조, “但忽刺溫兀狄哈往往有贈魚膠者, 色潔則進上, 不潔則備修營中軍器”.

44) 임금대신 지급된 물품은 어교를 포함하여 強鐵, 唐朱紅, 松脂 등이다.

45) 『승정원일기』 60책(탈초본 3책) 인조 15년(1637) 8월 7일 임인조의 ‘勅使가 올 때에 所用되는 白樺皮 등이 생산되는 감영 등에 前規대로 分定하여 上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軍器寺의 계’ 참조.

46) 『승정원일기』 657책(탈초본 36책) 영조 4년(1728) 3월 10일 경신조의 ‘朴文秀의 上疏에 대한 批答’ 참조.

2) 아교의 용처와 소비량

어교에 비해 아교는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특화된 소비성을 발휘했을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아교를 약재로 구분했다. 어교와 마찬가지로 공납대상에 해당했지만 공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어교가 약재로서 특화된 영역에 위치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약재로서의 아교는 최상품만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어진의 면부를 채색할 때 내의원예 보관 중인 주사를 가져다 쓴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접착제로서의 기능은 어교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교가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을 자신의 아우라로 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교가 약재로서 쓰일 때 대개 阿膠煎藥이라는 표현을 쓴다. 계량 단위도 斤이 아니라 홉(盒)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1637년 인조가 종친부, 홍문관, 예문관 등에 아교탕을 사급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⁷⁾ 뿐만 아니라 약재로 쓰일 때는 ‘阿膠珠’, 즉 구슬 형태로 만들었다.⁴⁸⁾ 약재로 쓰이는 상품 아교의 경우 구슬 모양으로 제조하여 차별화했다는 것을 읽게 하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조제의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점도 읽게 한다.⁴⁹⁾

오늘날 아교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는 폐(肺), 간(肝), 콩팥(腎)에 작용하여 주로 보혈, 즉 적혈구를 증강시키고 전신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⁵⁰⁾ 하지만 동의보감은 폐와 대장의 치료에 주로 처방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승정원일기』에는 폐를 다스리는 寧肺湯의 약재로 자주 처방된다.⁵¹⁾ 주로 불안,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처방약으로 잘 알려진 ‘黃連阿膠湯’ 역시 아교를 위주로 사용한 처방약이다.⁵²⁾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아교는 어교와 달리 왕실 처방약으로서의 쓰임을 포함하여 내상 치료제로서 비교적 광범위한 사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비량 역시 적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접착제로서 아교의 쓰임은 어교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활의 제작에서도 각궁을 제외한 목궁, 죽궁, 철궁 등 대부분의 활은 대부분 아교를 사용했다. 심지어 각궁을 제작할 경우에도 어교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전투와 무관한 활을 제작하는 경우 등은 어교 대신 아교를 사용했다. 화살의 제작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활을 포함한 각종 병기류에 칠장식을 할 경우에도 아교는 가장 널리 사용된 중간재였다.

접착제로서 아교의 쓰임은 무엇보다도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의 제작 및 채색 장식에 가장 광범위하게 소용되었다. 일례로 1901년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署理 度支部協辦 李容翊이 議政府議政 尹容善에게 진연 준비 과정에서 각종 기물의 채색에 필요한 아교를 청구했는데 수량이 935근에 달했다.⁵³⁾ 이들이 모두 채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4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7일 신미조, “傳于金光煜曰, 宗親府·儀賓府·忠勳府·弘文館, 阿膠煎藥 缺一合, 政院·藝文館, 竝一合賜給”.

48) 『승정원일기』 157책(달초본 8책) 현종 즉위년 8월 24일 임자조, “鄭維岳以爲, 成後龍所言寧肺湯元材, 去阿膠珠·川芎·當歸·熟地黃·五味子等五種”.

49)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5권 2호, 86쪽.

50) 김재현, 정종길, 위의 논문, 80쪽.

51) 『승정원일기』 157책(달초본 8책) 현종 즉위년 8월 24일 임자조의 ‘寧肺湯에 약재를 가감하여 3첩을 지어서 들이겠다는 藥房의 계’ 참조.

52) 이소연, 윤덕형 등 외 3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7권 3호, 590쪽.

없지만 함께 청구한 안료의 양 역시 천여 근에 이르고 안료와 같은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이 채색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안료 자체는 접착력이 없어 채색에는 반드시 접착제가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902년도 고종의 60세 생일 진연을 위해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金聲根이 議政府參政 金奎弘에게 청구한 아교량 역시 469근에 이르렀으며, 함께 청구한 안료량 역시 수백근에 달했다.⁵⁴⁾ 조선초기 여진족 등과 한참 전쟁이 진행될 때 무기제작을 위해 북방 변경에 보낸 아교가 많아야 300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채색의 주류를 이루는 각종 그림, 즉 일반회화, 어진을 포함한 각종 초상화, 불화, 삽화 등에도 상당량의 아교가 소요되었다. 특히 강한 접착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어교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아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⁵⁵⁾

접착제로서 아교의 쓰임은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도 찾아진다. 비석 제작에서의 쓰임은 그러한 실례 가운데 하나이다. 오랜 세월의 풍파로 인해 오늘날 과거 비석에서 아교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의외의 쓰임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비석에 하분을 넣고 글자를 새기고 나면 글자 위에 붉은 색 안료인 주사와 아교를 섞어 발랐다.⁵⁶⁾ 주로 선명함 제고와 장기 보존 등을 의도한 것이다. <여주신록사대장각기비(1383)>는 조선 건국 당시 즈음 입비 실례로서 심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하나의 실례이다. 상품 아교의 사용을 통해 이와 같은 보존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실례는 신라 비석에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풍우와 햇빛에 의해 결락되거나 탈색되면 아교와 주사를 섞어 다시 칠하여 보수를 진행했다. <정림사지5층석탑미석각자(660)> 상단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⁵⁷⁾ 아교와 주사를 섞어 바른 후 채색 층이 건조하고 나면 비면 전체에 아교로 도포를 하여 화강암 석회질에 습기 침습을 차단시키는 과정도 거쳤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아교 이외에 송지(송진) 및 밀랍 등도 사용되었지만 아교가 가장 상급의 도포 재료에 해당했다. 오늘날 옛 비석에서 아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 유한 계층은 오늘날 생각지 못했던 곳에 아교를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아교의 소비처는 금사이다. 금사란 자수 등 전통 섬유공예 장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금속 실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편금사와 연금사 형태로 제작, 사용했다. 편금사란 도1과 같이 종이, 가죽 등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얇은 편모양의 금박을 붙여 제작한 것이고, 연금사란 도2와 같이 가는 섬유질 실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박을 붙여 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금박을 붙이는데 아교는 중요한 접착제로 기능했다. 소비량은 많지 않았겠지만 조선시대 공예 장식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교는 매우 긴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접착제로서 아교의 쓰임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경우는 ‘가짜 인삼 만들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53) 『各部請議書存案』 19, “磊碌二百四十六斤 每六匁 一百四十七兩六匁, 丁粉三十斤 每六匁 十八兩, 石礪朱六百七十四斤 每六匁 四百四兩四匁, 阿膠九百三十五斤 每五匁 四百六十七兩五匁, 石紫黃六斤 每六兩 三十六兩, 洋礪八十八斤 每四兩 三百五十二兩, 朱紅五十五封 每十兩 五百五十兩”(출전, 『각사등록』 근대편).

54) 『各部請議書存案』 22, “洋礪一百六十封 每封六兩式 九百六十兩, 朱紅六十三封 每封十二兩式 七百五十六兩, 石礪朱一百七十七斤 每斤八匁式 九十三兩六匁, 丁粉五十斤 每斤八匁式 四十兩, 磊碌二十八斤 每斤八匁式 二十二兩四匁, 阿膠四百六十九斤 每斤七匁式 三百二十八兩三匁”(출전, 『각사등록』 근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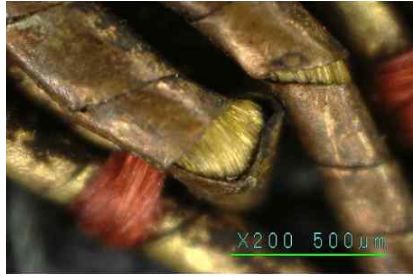
55) 박지선,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동악미술사학』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56) 손환일, 앞의 논문, 123-124쪽.

57) 손환일, 앞의 논문, 123-124쪽.



도1 편금사의 실레, 중국 청해 두란 출토 龜甲文織金錦帶, 8~9세기(출처, 『紡織品考古新發現』, 101쪽).



도2 연금사의 실레, 경운박물관 소장 雙鶴紋刺繡胸背, 19세기 말(출처, 『직금자수에 사용된 금사의 형태와 특징 비교 고찰』, 84쪽).

“4월 14일(숙종 37년, 1711)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부제조 유집일(兪集一)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의약(醫藥)이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비록 의술이 전만

못해서 그렇다고 하겠으나 약재가 정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노상 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을 듯합니다. 약재 중에서는 인삼이 가장 긴중하고 독삼탕(獨參湯)에 있어서는 병세의 경중이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게 된 만큼 더욱 심분 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진상으로 바치는 인삼 중에도 역시 아교(阿膠)로 붙인 것이 있으니 어찌 놀라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이는 몸통이 굵은 것을 얻기가 어려운 소치이겠으나 아교로 붙여 크게 하여 속에다 잡것을 넣느니보다는 차라리 몸통은 적어도 독삼(獨參)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북의 인삼에 있어서는 삶아서 연하게 하여 도라지에 입히기도 하고 노두(蘆頭)를 조삼(造參)에다 붙이기도 하여 이익만 많이 보려고 하여 잘못 먹고 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짓거리가 참으로 극히 놀랍고 통악스럽습니다.....중략”“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이 폐단은 말해온 지 이미 오래이나 아직까지 변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북의 인삼에 탄 물질을 섞은 일은 전부터 있어 왔으나 어공(御供)의 소용에게까지 어떻게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내의원(內醫院) 의관의 말을 들으니 간혹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빚깁과 불품을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겠으나 이 뒤로는 크고 작은 것은 물론하고 반드시 독삼으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상하는 인삼은 의례히 고을 표시가 있으니 만일 간계를 부렸다가 적발 되면 조사해 내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서북 인삼에 간계를 부린 것도 뒤라서 적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논상하면서 고발하라고 하여야만 이 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집일이 은화를 사주한 율을 쓰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 법률에 속하는 일인 만큼 졸연히 정할 수 없으므로 대신에게 하문하셔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⁵⁸⁾

“9월 23일(1753) 약방의 입진에 비변사당상·형조판서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도제조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관동(關東)의 공삼(貢參)은 보아서 좀 나은 것을 받으므로 변변이 세삼(細參)을 아교(阿膠)로 붙여서 상납하니 정결에 흠이 되고 좀에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이 연전에 삼을 붙이지 말고, 세삼이라도 모두 날 뿌리로 올려 보내도록 진달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 후에 삼의 품질이 완연히 좋아져 의관들이 모두 편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지금 들으니 해가 오래되면서 해이해진 탓으로 붙인 삼이 다시 많아졌다 합니다. 지금은 공삼의 상납이 머지않아 변경할 형편이 못되나 명

58)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1711) 4월 15일조.

년부터는 불인 삼을 금하고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날 뿌리로 봉진하라고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⁹⁾

가짜 인삼 만들기에 아교가 사용된 것은 진상에 지친 일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어교가 이미 일반인들에게 소용될 정도의 비교적 광범위한 수급 기반을 마련했음을 짐작케 한다. 즉 관사 위주의 소비 이외에 민간인의 소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대외 교역품으로서의 쓰임도 확인된다. 1603년 일본의 徳川家康이 우리나라에 약재를 요청하는 리스트의 물목에서 확인되는 것으로⁶⁰⁾ 비록 수량은 적지만 우리나라 아교에 대한 일본의 높은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VI. 결론

이상으로 접착제와 약재로 소용된 아교와 어교를 중심으로 종류, 공납지역, 공납에 대응한 생산 방식, 군현에서 중앙 관사로의 이동, 이후 전개된 다방면으로의 소비와 소비량 등에 관해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를 적요하여 결론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아교 종류로는 馬膠, 鹿角膠, 牛膠 등이, 어교 종류로는 연어교, 석수어교, 민어교 등이 확인되며, 자연 환경의 차이 때문인지 중국에 비해 좀 단순한 면모를 내보였다.

아교와 어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공물과 약재로서 서로 다르게 기록되지만 건국 초부터 양자 모두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되는 歲貢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간주되었다.

공납지역의 경우 어교는 강원, 함길 2개 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함했으며, 원료의 수급 환경을 고려하여 주로 바다를 낀 지역이 포함되었다. 다만 공납지역과 어족 자원의 상관관계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어교의 원료를 반드시 민어의 부레에 한정시킬 수 없는 일면을 드러냈다. 녹각교를 포함한 아교의 공납지역은 함경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기대와 달리 녹각교의 공납지역 역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교와 어교는 생산 공정의 특성상 전문 장인을 위주로 하는 생산체계를 고려하게 하지만 염소, 도자소와 같은 所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고, 冶匠, 木匠, 漆匠 등과 같은 외공장의 설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군현에서의 납공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일부 어피나 우피 등으로 납공되었을 가능

59) 『비변사등록』 126책, 영조 29년(1753) 9월 25일(음)조의 ‘都提調 金在魯 등이 입시하여 關東의 貢蔘을 각 덩이 별로 封進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참조.

60)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1603) 6월 14일 기해조 ‘화호에 관한 평조신의 서계’, “제가 이달 17일에 왕경(王京)에서 대마도로 왔는데, 일본의 사세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속히 큰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첨부한 목록(目錄)의 약재(藥材)는 내부(內府) 덕천가강(徳川家康)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는 사자 굴지정이 현재 머물러 있으니 그만한 물건을 따져 보내겠습니다. 만일 그 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물건을 뒤따라 준비해 보내겠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꼭 믿고 있겠습니다. 비단은 귀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뒤에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약재의 목록은 우황(牛黃) 5냥(兩), 사향(麝香) 1근, 백렴(白蘘) 2근, 백랍(白蠟) 1근, 진사(辰砂) 2근, 옹황(雄黃) 1근, 장연동(自然銅) 2근, 아교(阿膠) 2근, 광명주사(光明朱砂) 30근, 무문대전통필단(無文大傳通匹段) 홍색(紅色) 50여 단(端), 무금선대홍필단(無金線大紅匹段) 20단, 자녹반(煮綠礬) 1근 【이상 12가지】입니다. 오홍국(烏紅菊)은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경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 토산품이 없어서 조총(鳥銃) 2자루를 봉진(封進)하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조신은 보냅니다.”

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중앙 관사로의 공납 절차는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문서 상으로는 호조가 총괄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납 물품의 이동은 내궁방 등과 같은 관사로 직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공감과 군기시에 납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방을 포함한 각 관사로의 지급 역시 선공감과 군기시 이외의 관사에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호조의 지시 하에 선공감과 군기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에 있어서 어교는 각궁에서 가장 특화된 쓰임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왕실 및 중앙 관사의 기물 제작 과정에서도 기대를 넘어서는 양의 소비를 내보였다. 다만 약재로서의 소비는 아교에 비하면 크게 미약한 면모를 보였다. 기타 공인들의 임금 지급 수단으로 소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어교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적극 고려해 하였다.

아교의 소비는 어교와 달리 약재 부문에서 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왕실 처방약으로서의 쓰임을 포함하여 내상 치료제로서 어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비 형태를 드러냈다. 접착제로서의 아교의 소비는 더욱 광범위하고 대량 사용되는 면모로 나타났다.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의 제작 및 채색, 그리고 어진의 제작과 기타 일반회화 및 불화 등에 많은 양이 소용되었으며, 어교를 훨씬 뛰어넘는 소비량을 내보였다. 뿐만 아니라 비석의 도포, 금사의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용되는 모습도 내보였다.

한마디로 어교와 아교는 각각 자신의 특화된 소비처를 구축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소비문화를 형성시켜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세조실록』
『선조실록』
『세종실록』
『태종실록』
『단종실록』
『문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新增東國輿地勝覽』
『宮內府去來案文牒』
『各部請議書存案』

2. 논문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해안, 2015
李相佰, 『韓國史-近世前期篇』, 震檀學會, 1962.
최석규, 『조선시대 궁술의 사회·문화적 기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영규·황현득·김현중 등, 「어교(魚膠)의 접착특성」, 『목재공학』 32호, 2004.
이준호·유지아·정용재 등, 「제니핀을 첨가한 아교의 접착 특성과 물성 변화 연구」, 『보존과학회지』 34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8.
김지은·유지아·한예빈·정용재 등, 「전통 편금사에 사용된 붉은 접착제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4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김은경·안선아·장성운 등, 「우루시올과 아교를 배합한 천연 접착제의 투명성 및 접착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1권 2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5.
강영석·정혜영·고인희 등, 「백토안료의 전통제법 중 아교수 영향에 관한 연구」, 32권 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한규정·신수정, 「교착제 종류에 따른 단청의 도막 성능」, 『목재공학』, 2007.
강영석·정혜영·고인희 등, 「백토안료의 전통제법 중 아교수 영향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32권 3호, 보존과학회, 2016.
신광호, 안덕균, 「아교류의 사용과 제법에 대한 문헌조사」.
박지선,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동악미술사학』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이소연, 윤덕형 등 외 3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7권 3호.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5권 2호.
채미영, 「고구려 벽화무덤의 바탕재에 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9, 고구려발해학회, 2000.
李鍾祥, 「韓國美術史에서 차지한 高句麗壁畫의 位置」-材料技法을 中心으로-, 2003,
宋中煥, 「고구려 벽화 材料의 物性 및 結合關係 연구-바탕벽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高句麗

- 渤海研究』第56輯, 고구려발해학회, 2016.
- 손환일, 「삼국시대 石碑의 제작과 樣式의 변모」, 『한국사상과 문화』제9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9.
- 金鎭鳳,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22호, 한국사학회, 1973.
- 金鎭鳳, 「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 『사학연구』26, 한국사학회, 1975
- 김창희, 「태조~세종대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 『사학연구』123호, 한국사학회, 2016.
- 조순규,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歷史學研究』제72집, 2018.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의 특징」, 『인문학연구』13-5,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강제훈, 「조선 세조대 공물대납정책」, 『조선시대사학보』36, 2006.
-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5권 2호.
- 장경희, 「조선 후기 내궁방(內弓房) 궁내인(內弓人)의 별조궁(別造弓) 제작실태」, 『東方學』42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 최석규, 「각궁의 제작의 특성 연구: 경기 부천·경북 예천 계열을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제22권 제2호, 대한무도학회, 2020.
- 최석규, 정희석, 「국궁의 고대사적 전통」, 『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4- 2, 한국스포츠인류학회, 2009.
- 김삼기, 「朝鮮前期 종이 貢納制 研究」, 『역사민속학』15호, 한국민속역사학회, 2002.

近世 동북아시아 海域과 ‘全鰓’의 길

-제주도 특산품 全鰓을 중심으로-

임경준(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목차〉

- I. 문제의 소재
- II. 15세기 이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속 ‘전복’의 길
- III. 明初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전복’의 길
- IV. 맺음말

I. 문제의 소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는 서남쪽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화산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야를 동북아시아 해역세계로 넓혀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황해와 동해가 남쪽으로 흘러 들다가 동중국해로 합류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한 제주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한반도, 중국대륙, 타이완, 류큐열도, 일본열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해역의 연안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해 왔다. 동북아시아 해역의 지역간 교역·상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역사·문화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각종 海難 사고도 빈발하여 선박의 침몰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멀리 異國으로 漂流·漂着하는 사례가 다양한 문헌기록에 전하고 있다.¹⁾

종래의 연구는 전근대 동북아시아 속에서 제주도가 갖는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1)제주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海民이 전개한 해상활동의 실태²⁾, (2)우발적으로 발생하는 漂流·漂着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검증해 왔다.³⁾ 다른 한편으로 (3)제주도

1)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의 표류 표착을 전하는 주요한 사료는 다양하다. 朝鮮에서는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사료를 비롯하여 『濟州啓錄』이나 『漂人領來臚錄』과 臚錄을 통하여 풍부한 사례를 검출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의 표류와 관련된 연구성과와 사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劉序楓, 「표류, 표류기, 해난」, 桃木至朗(역음)/최연식(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참조.

2) 제주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海民이 전개한 해상활동의 실태에 관해서는 網野善彦와 高橋公明가 선구적으로 거론하였고 이후 한일 양국에서 후속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網野善彦,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日本の古代8 海人の伝統』, 中央公論社, 1987 ;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海と列島文化4 : 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등 참조.

의 독자적 王權이었던 耽羅가 종식된 이후 高麗·大元·朝鮮으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변동에 초점을 맞춰 그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작업 또한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지탱해 왔다.⁴⁾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사료집의 影印·譯註 또한 활발하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듯이 한국학계만이 아니라 일본학계에서도 對外關係史나 朝鮮史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련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견실한 연구 성과 위에 축조된 기왕의 ‘제주도像’에 대하여 東洋史學, 그 중에서도 滿洲인이 건설한 大清帝國의 정치사회사를 주로 전공한 발표자가 이렇다 저렇다 발언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한참 벗어나는 일일 뿐더러 되도록 각자의 전공영역에 깊이 전착할 것을 요구하는 학계의 상식에 비추어도 썩 바람직하지 못할 터이다. 다만 전근대 동북아시아의 해역질서가 중국본토China proper(=漢地)를 장악한 패권 국가의 정책 기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동양사학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속의 ‘제주도像’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반드시 학계의 상식에 동떨어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더군다나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친 동북아시아의 200여 년간은 元·明交替로 분수령을 이루는 육상국가의 변동에 발맞추어 해역세계 또한 격동과 부침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동시기 제주도의 역사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 사례연구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동북아시아 해역세계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부감하려는 시도는 管見이기는 하나 그다지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⁵⁾

이에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정된 사실들에 의지하면서 東洋史 연구자의 입장에 서서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제주도’의 역사를 조망할 때 새롭게 혹은 다르게 보이는 측면들을 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해역세계 속의 제주도’에 관한 하나의 試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발표가 겨냥하는 바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확정하는 데에 있기보다, 오히려 줄곧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던 事象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마리로서 본 발표에서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알려져 왔으면서 해상교역과 국가공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복’⁶⁾과 이를 채취하는 집단인 ‘鮑作人’이다.⁷⁾

‘전복’에 주목하는 본 발표의 의도는 단순히 이 물품의 기호적 측면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

-
- 3) 六反田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 『濟州啓錄』を中心に」, 『年報朝鮮學』 7, 1999 ;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경계』 69, 2008 등 참조.
 - 4)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青丘學術論叢』 19, 2001의 참고문헌을 참조.
 - 5) 이런 측면에서 허남린의 연구는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거시적인 지표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朝鮮 공권력의 제주도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朝鮮史라는 일국사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 31, 2007.
 - 6) 제주도산 전복의 민속학적 고찰로는 今村靉의 연구가 선구적인 업적에 속한다. 今村靉, 『濟州の鮑』,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그 외 역사학에서는 주로 고대 耽羅와 倭의 교류를 다룬 연구로 森公章,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 梁聖宗, 「木簡の『耽羅鮑』についての一考察 : 現存する最古の記録遺物を読む」, 『耽羅研究会報』 11,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朝鮮時代の 전복 進上에 관해서는
 - 7)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경계』 69, 2008.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에서 ‘전복’은 생계의 수단이자 수취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한 데 가진 물품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역품’으로서든 ‘진상품’으로서든 근세 동북아시아 해역을 가로 지르며 이동하던 ‘전복의 길’은 제주도의 역사적 위치와 그 주민의 생활양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전복의 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는 필경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복의 길’의 변화를 야기하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크게 (1)제주도를 지배하던 조선왕조, (2)제주도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 해역질서를 주재하던 明朝가 상정된다. 이중에서 조선왕조의 제주도 지배에 관해서는 이미 중후한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전착되어 온 주제이기에 제쳐두기로 한다.⁸⁾ 그 대신에 본 발표에서는 주로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전복의 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연동하여 추적하도록 하겠다.

II. 15세기 이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속 ‘전복’의 길

(1) 申叔舟가 본 15세기 이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속 제주도

朝鮮前期를 대표하는 유능한 재상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保閑齋 申叔舟(1417~1475)는 1469(睿宗元)년에 按撫使兼牧使로 제주도에 부임하게 된 金好仁⁹⁾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제주는 옛 耽羅國이다. 남쪽으로 바다 한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어 海上으로 수백리를 가야 다다른다. 奇材와 海産物[海錯]이 나며 商船이 끊임없이 왕래한다. 海賊도 중횡으로 활동하니 文武의 큰 재능이 없다면 다스릴 수 없는 땅이다. ……제주는 元末에 말을 방목하고 牧子를 두어 황제의 피난처로 삼으려 계획하기도 하였다. 몽골인과 漢人이 잡거[蒙漢雜處]하며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반항하곤 하였다. 우리 왕조에 이르러 烈성조의 '煦撫之恩'을 입게 되니 民人들이 동화되어 복속하였다. 그렇지만 商人들이 이곳으로 몰려 主客이 복적대니 땅은 황폐하고 民人은 빈곤하여 사나운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릇 엄정하게만 대하면 빈민이 버티지 못하여, 관대하게만 대하면 사나운 습속을 다스릴 수 없으니, 관대함과 엄정함에 균형이 없으면 民人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물며 제주는 서쪽으로는 中國의 明州를 두고, 동쪽으로 日本 九州에 해당하며, 남쪽으로는 琉球諸島와 통하고 있어, 海賊이 출몰하고 푸른 바다로 막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구원하기에 때가 맞지 않다. 반드시 사람들 사이의 화합으로 지켜야 한다.¹⁰⁾

8) 권인혁·김동전,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1997 ; 박찬식, 「耽羅巡歷圖 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2000 ;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 1986 등 참조.

9) 金好仁의 濟州牧使 부임은 『耽羅志草本』 卷3, 「官案」條를 참조.

10) 申叔舟, 『保閑齋集』 卷15, 「送金同年好仁安撫濟州序」: “濟州, 卽耽羅古國也. 在南海中絕遠, 浮海數百里而至. 産奇材海錯, 商舶絡繹. 海賊縱橫, 非文武大才, 莫能鎮之. ……濟州自元季, 放馬置吏卒, 爲避亂之計. 蒙漢雜處, 特險反覆. 至于我朝, 被列聖煦撫之恩, 民安於化, 同於內服. 然商販輻輳, 主客雜

본 사료는 15 세기를 살았던 저자가 제주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 통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당시 朝鮮 朝廷에서 申叔舟가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 위상으로 미루어 본다면, 명실공히 朝鮮王朝 최고 爲政者의 제주도 인식을 집약해 놓은 문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15 세기는 元·明 교체의 대변동 속에서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가체제와 국제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였으며, 이는 제주의 사회경제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 사료를 실마리로 삼아 15 세기를 전후한 시기 동북아시아 속의 제주도가 어떠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지속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2) “奇材”와 “海錯” :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

먼저 “바다 한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다(海中絶遠)”거나 “푸른 바다로 막혀 서로 통하지 않는다(滄波阻隔)”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의 전형적인 제주도관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金好仁보다 앞선 1404(太宗 4)년에 濟州牧使로 부임했던 李元恒¹¹⁾에게 陽村 權近이 주었다는 送別詩에도 “耽羅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니 …… 바람을 타고 가는 바다 길은 끝없이 아득한 데다가, 수 백리 건너는 데도 위험한 파도를 예측할 수 없다”¹²⁾라는 식의 서술이 보인다. 이처럼 제주도를 국가의 통제가 도달하는 邊境으로 보는 관점은 朝鮮王朝의 爲政者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제주도관을 공유하면서도 申叔舟의 견해가 갖는 차별성은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의 위치를 서술하는 지점이다. “서쪽으로는 中國의 明州를 두고, 동쪽으로 日本의 九州에 해당하며, 남쪽으로는 琉球諸島와 통”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申叔舟는 제주도를 국가의 邊境으로 보는 동시에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요충지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특성은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奇材와 海産物[海錯]이 나며 商船이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구절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海産物’이며 이를 商船을 통해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역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것이다.

문헌사료에서 제주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3 세기말에 편찬된 『三國志』 魏書東夷傳인데, 이에 따르면 제주도민을 가리키는 ‘州胡’가 “배에 올라 왕래하며 中·韓에서 장사한다”고 서술되어 있다.¹³⁾ 이를 뒷받침하듯이 제주도 山地港에서는 서기전 2 세기경에 주조된 五鑄錢을 비롯한 중국 동전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근래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서부 일대의 연안·도에서 발견된 중국 동전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查，地瘠民貧，遺風悍俗，尙有存者。一於猛，貧民無以存，一於寬，悍俗無以懲。不能以寬猛相濟，民何所賴。況州西值中國之明州，東當日本之九州，南通琉球諸島，海賊出沒，滄波阻隔，救援不時。是必人和可保。”

11) 李元恒의 濟州牧使 부임은 『耽羅志草本』 卷3, 「官案」條를 참조.

12) 『陽村先生文集』 卷20, 「送濟州牧使李君元恒詩序」: “耽羅在海中，……然以其飄風駕海，渺漫無際，涉數百里，驚濤不測之險。”

13)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乘船往來，市買韓中。”

다.14) 말하자면 고대부터 황해와 동중국해 연안을 하나로 묶어주는 광역적 해상교역 네트워크의 결절점 중 하나로 제주도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海東諸國記』(1471)의 찬자로서도 알려져 있는 申叔舟의 제주도 인식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응축되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商人들이 이곳으로 몰려 主客이 북적대니 땅은 황폐하고 民人은 빈곤하여 사나운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申叔舟의 서술은 農本主義에 입각한 유교 엘리트의 관점에서 제주도가 취약한 토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농업을 통한 식량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15) 실제 朝鮮時代에 편찬된 각종 지리서에서도 “땅이 척박하여 民人이 빈곤하다”는 문구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투구처럼 쓰이고 있다.16) 그런 까닭에 제주도의 주된 경제적 토대는 바다와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해산물의 채취와 교역에 의해 지탱되었다.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이야말로 제주도 경제구조의 基層 요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3) 大元의 유산 : “放馬置吏卒” 과 “蒙漢雜處”

다른 한편으로 申叔舟가 제주도 역사의 분기점으로서 大元의 지배를 거론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즉 “제주는 元末에 말을 방목하고 牧子를 두어 황제의 피난처로 삼으려 계획하기도 하였다. 몽골인과 漢人이 잡거[蒙漢雜處]하며 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반항하곤 하였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를 항목 별로 정리한다면, ①말 방목의 개시, ②大元 황제의 피난 계획, ③몽골인과 漢人의 잡거상태, ④牧戶의 亂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항목에는 이미 여러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주도의 大元 복속기에 개시된 말 牧場의 경영이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17)

먼저 시대의 추이를 살펴보자. 13~14세기 몽골제국~大元의 흥기와 유라시아 대륙의 대통합은 동북아시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였다. 高麗 역시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몇 차례의 저항을 거쳐 최종적으로 大元에 굴복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高麗에서 反元 세력을 대표하던 三別抄의 마지막 저항거점이 되었는데, 大元은 高麗와 연합하여 정벌군을 파병하였다. 이후 三別抄를 진압하자 1273(至元10·元宗14)년 제주도에 耽羅國招討司를 두어 직할령으로 개편하였고,18) 이후 제주도에 대규모 직할 牧場을 설치하여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19) 이에 따라 몽골인과 漢人을 비롯한 많은 수의 외지인이 제주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20) 이로써 제주도가 갖고 있던 동북아시아 해상교역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大元이

14) 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海村の視点から」,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2009 참조.

15) 허남린은 이러한 측면을 ‘경제의 페리페리’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pp.18~22.

16) “耽羅地瘠民貧”이란 표현은 이미 『高麗史』 卷8, 世家, 文宗12년8월乙巳條에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産, 乘木道, 經紀謀生.”에서부터 등장한다. 朝鮮 건국 이후 제주도민의 생계 문제에 관련해서는 [표 1]에서 관계사료를 정리하였다.

17) ①·②·③·④ 각 항목에 관해서는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pp.174-177(原載: 『國際基督教大學アジア文化研究論叢』1, 1958)가 개관하고 있으므로 참조.

18) 耽羅國招討司는 이후 1275(至元12·忠烈王元)년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되었다가 1284(至元21·忠烈王10)년에 다시 軍民按撫司로 개편하였다. 大元은 1301(大德5·忠烈王10)년에 耽羅萬戶府를 설치하여 高麗의 征東行省에 귀속시킨다.

19) 『高麗史』 卷28, 世家, 忠烈王2년 8월 丁亥條: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匹來牧.”

20) 이러한 제주도의 “蒙漢雜處”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이 ‘蘭秀山の 亂’이다. 藤田明良에 따르면, 1368년 明朝가 浙江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해상교통을 장악하려 하자 舟山列島를 근거지로 하던 해상

통합한 유라시아 네트워크 속에 맞물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大元의 지배는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에도 커다란 변동을 야기했다. 종래 제주도민의 생계 수단이 주로 해산물 채취와 그 교역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大元의 지배를 계기로 牧場 경영을 통한 말 사육이 또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1374(恭愍王23)년 明의 사신이 高麗에 와 “내가 생각건대, 高麗는 이미 元朝 때부터 말 20,000~30,000필을 耽羅에 두고 사육했으니, 지금은 필시 많이 번식해 있을 것이다”²²⁾라 한 발언에서 미루어 짐작한다면 제주도에는 최소 20,000~30,000필 규모 이상의 말 牧場이 운영되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아마도 제주도로 건너 온 몽골인이나 漢人 대다수도 이러한 말 목장 경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4) 두 갈래의 길 : ‘交易品の 길’과 ‘進上品의 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15세기 이전 제주도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전복으로 대표되는 해산물 채취·교역, 그리고 목장 경영을 통한 말 사육과 교역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제주도의 열악한 토지생산성과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어 사회경제의 기층을 이루게 되었던 반면에, 후자는 大元의 지배라는 인위적이고 역사적인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제주도 사회경제에서 또 하나의 층위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전복’과 ‘말’이라는 특산품의 유통 경로로는 크게 보아 두 갈래의 길이 상정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생계 수단으로서 ‘交易品の 길’이다. 이 길은 동북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제주도의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各국 海商의 활동한 교역활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길은 ‘進上品의 길’이다. ‘耽羅鰔’이나 ‘耽羅方脯’라 불리는 제주도산 전복은 古代부터 日本과의 대외교섭에서 중요한 물품으로서 이 길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百濟·新羅·高麗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大元의 말 목장 설치의 종래 전복이 중심적이었던 ‘進上品의 길’에 ‘말’이라는 새로운 물품이 추가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 이전 제주도는 이와 같이 ‘交易品’과 ‘進上品’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를 교차하는 ‘물품’들에 의해 사회경제의 기본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다. ‘물품’ 속에는 古代에서부터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이 기층에 자리하고, 여기에 大元의 유산으로서 ‘말’이 새로운 지층으로 덧붙여져 있었다. 그렇다면 元·明 교체라는 유라시아 규모의 지각변동은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나아가 그 속에서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는 다시 어떻게 변용하였을까.

세력, 이른바 ‘蘭秀山賊’이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국 패배한 이들은 ‘耽羅’로 도망하였고 그 중에는 耽羅 출신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蘭秀山の乱』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 1997). 이처럼 15세기 이전까지 동북아시아 해역에서는 바다를 넘는 이동과 교류가 빈번한 일이었으며, 제주도는 그러한 추세에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1) 이와 관련하여 漢地와 제주도의 교통 경로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육로+해로만이 아니라 江南에서 직접 해로를 통해 직행하는 경로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일찍이 岡田英弘는 1365년에 제주도로 건너갔다가 귀국 후에 『耽羅志略』을 저술한 浙江 출신 李至剛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교통 루트를 선구적으로 밝힌 바 있다(『元の惠宗と濟州島』, pp.165~171).

22) 『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23년 4월 戊申條: “我想高麗國, 已先元朝, 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孳生儘多.”

Ⅲ. 明初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전복’의 길

(1) 朝貢·海禁 체제의 성립과 제주도

14세기 중엽 이후 大元의 패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여 세계의 종말과 미륵부처에 의한 구제를 설파하는 白蓮教 일파가 봉기하며 전국 각지에서 반란의 불길이 번져나간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떠돌이 승려 출신 朱元璋이 군벌세력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어 1368년 南京에서 皇帝의 자리에 올라 大明(=明朝, 1368~1644)을 건국하니, 곧 太祖 洪武帝(재위: 1368~98)다. 같은 해 明軍이 北伐을 개시하여 長江을 넘어 華北으로 진군하자 大元 정권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수도인 大都를 뒤로 하고 몽골고원으로 후퇴한다. 이로써 漢地를 장악한 패권국가가 元에서 明으로 바뀌는 이른바 元·明交替가 이루어진다.

明朝 정권은 漢地를 장악한 즉시 高麗·日本·琉球 등에 사신을 파견하여 入貢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몽골고원에 건재한 大元 세력에 대항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승인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북방의 위협요소와 함께 동남 해상에서는 元末부터 倭寇(前期倭寇)가 횡행하고 있었다. 明朝는 倭寇에 대한 海防을 최우선시하여 민간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대외관계를 국가간의 朝貢·冊封 관계에 한정시키는 대단히 엄격한 대외 관계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明朝 정권의 주도 하에 海禁과 朝貢이 결합된 ‘海禁-朝貢 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또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²³⁾

海禁-朝貢 체제의 성립이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에 미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역 형태의 변화이다. 주지하듯이 大元 시기까지는 국가 주도의 公貿易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대외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海禁-朝貢 체제는 민간무역을 철저히 억누르고 대외무역을 明朝 정권 주도의 朝貢·冊封 관계에 얽어매는 체제였다. 외부세력이 명측에 무역을 요청한다 해도 明朝 우위의 국가 간 관계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 통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이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唐代 이래 오랫동안 朝貢과 冊封의 틀에서 벗어나 있던 日本이 다시 여기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元·明 교체의 혼란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1392년에는 高麗를 대신하여 朝鮮王朝가 건국된다. 高麗에서 朝鮮으로의 왕조교체에 의해 제주도의 영유권 역시 그대로 高麗에서 朝鮮으로 이전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 제주도의 내부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인가. [표1]은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朝鮮이 건국된 15세기를 중심으로 제주도민의 생계 문제에 관한 기사를 추출한 것이다.

【표 1】『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15세기 제주도민 생계문제 관련기사

	출전	관련기사
1	『世宗實錄』 卷4, 世宗 원(1419)년 7월 丙辰條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밀하여,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고, 水陸의 소산으로써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으므로, 밭의 조세를 받을 것이 없다(濟州土瘠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產, 商販爲生, 故不可以收田租).

23) 海禁-朝貢 체제’의 형성과 전개에 관해서는 檀上寬,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方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岩井茂樹, “朝貢·海禁·互市 : 近世東アジアの貿易と秩序方 名古屋大學出版會, 2020 등의 연구성과를 참조.

2	『世宗實錄』 卷5, 世宗 원(1419)년 9월 癸丑條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3	『世宗實錄』 卷28, 世宗 7(1425)년 4월 辛丑條	제주 사람들은 말을 팔아서 입고 먹는 자본을 삼는 까닭으로(濟州之人, 市馬以爲衣食之資).
4	『世宗實錄』 卷29, 世宗 7(1425)년 9월 庚子條	제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합니다(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5	『世宗實錄』 卷 36, 世宗 9(1427)년 6월 10일 丁卯條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다(濟州土地窄, 而畜產繁).
6	『世宗實錄』 卷39, 世宗 10(1428)년 1월 己丑條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牧場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禾稼에 손해가 많습니다. 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사운데(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居民專以賣馬爲生).
7	『世宗實錄』 卷64, 世宗 16(1434)년 6월 己未條	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8	『世宗實錄』 卷64, 世宗 16(1634)년 6월 甲子條	제주는 토양이 浮虛하여 갈마들며 묵혔다가 다시 갈고 종자를 뿌려야만 가을걷이의 희망이 있사운데, 오늘날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海菜·橡實 등의 물건으로 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濟州土壤浮虛, 互陳耕種, 然後可以有秋成之望. 今人多地窄, 雖曰豐年, 猶以海菜橡實等物, 得以資生).
9	『世宗實錄』 卷72, 世宗 18(1636)년 6월 戊午條	"제주 사람들이 牛馬를 도둑질하여 도살하여 생계로 삼는 까닭은 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밀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이며, 恒産이 없는 까닭입니다(濟州之人, 盜殺牛馬, 以資其生者, 專是地窄民稠, 不得耕種, 無恒産故也).
10	『世宗實錄』 卷72, 世宗 18(1436)년 6월 乙卯條	제주는 땅이 좁고 民家가 조밀하여, 소와 말을 도둑질해 죽이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자못 많사운데, 이로 인하여 말이 번식하지 않으니(濟州地窄民稠, 盜殺牛馬, 以資其生者頗多).
11	『世宗實錄』 卷73, 世宗 18(1436)년 윤6월 癸未條	제주라는 한 섬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그 습속이 흔히 草食으로 기아를 면하고, 이로 인하여 牛馬를 도둑질하여 도살하는데, 어찌 그의 천성이 나빠서 그러하겠습니까(濟州一島, 地窄人衆, 其俗類以草食充飢, 因而賊殺牛馬, 豈天性本惡而然歟).

12	『世宗實錄』 卷117, 世宗 29(1447)년 9월 壬子條	미역은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옵니다(夫藿者, ……處處皆有之. 濟州所產尤繁).
13	『世祖實錄』 卷11, 世祖 4(1458)년 2 월 7일 丙申條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여 왕래하고 販賣하는 것을 모두 전라도에 의지합니다(濟州壤地瘠薄, 往來販賣, 皆賴全羅).
14	『世祖實錄』 卷25, 世祖 7(1461)년 7 월 辛酉條	제주는 땅이 좁고 작는데, 근년에 마소를 사사로이 放牧하는 자가 매우 많고……(濟州壤地褊小, 近年私放馬牛者頗多).
15	『成宗實錄』 卷 178, 成宗 16(1485)년 윤 4 월 辛卯條	鮑作人의 일을 지난번에 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産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 오로지 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鮑作人之事, 往者命議宰相。此輩本濟州人也。濟州土地瘠薄, 産業不裕, 逃散全羅慶尙地面, 專事採海, 鬻販資生).
16	『成宗實錄』 卷 247, 成宗 21(1490)년 11 월 癸未條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 완전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三縣本土瘠, 民不能粒食, 生利專賴興販)
17	『成宗實錄』 卷 281, 成宗 24(1493)년 8 월 丁卯條	개간하여 경작할 만한 땅은 겨우 10분의 1이며 五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논이 드물어서 세 고을 수령의 供饋하는 쌀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기장·山菜·海菜로 보충합니다(開墾可耕之地, 僅十分之一, 五穀不成, 水田希罕, 三邑守令供饋之米, 只將魚藿, 陸地買遷, 方能僅足。民間則專以鬻馬爲生, 麥、稷、山海菜補之).

【표 1】을 사례별로 재분류하면 交易(1·2·3·4·6·7·8·12·13·15·16·17)과 牛馬賊(9·10·11·14)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高麗에서 朝鮮으로 영유권이 이전되었다 해도 제주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는 여전히 海産物 채취·교역과 말 牧場 경영을 통해 지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토지 생산성이 자리하고 있었음도 여러 기사(1·2·4·8·9·13·15·16·17) 속에서 변함없이 확인된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변화한 측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元·明 교체와 高麗에서 朝鮮으로의 영유권 이전이 발생한 15세기초에 제주도가 직면한 변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朝鮮의 제주도 지배가 진행됨에 따라 朝鮮의 수취체제인 貢納制가 정착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표1]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交易’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 변화이다. 양자는 각각 ‘進上品’과 ‘交易品’에 대응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貢納制 수취체제 하 ‘전복’의 길

주지하듯이 朝鮮의 국가재정은 田稅·良役·貢納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貢納은 다시 貢物(=現物稅)과 進上(=禮物)으로 구별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자연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중앙

에 상납하는 조세는 사실상 進上, 즉 禮物에 한정되었다.²⁴⁾ 朝鮮의 수취제도가 제주도에 뿌리 내림에 따라 종래 ‘交易品’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사회경제 구조에 ‘進上品’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申叔舟가 ‘奇材’와 ‘海錯’의 산지라 지적했던 대로 제주도에는 한반도 본토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진귀하고 독특한 물품이 풍부하였다. 말 뿐만 아니라 海産物·감굴·약재와 같은 특이한 토산물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의 島嶼로서의 입지조건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물품은 역시 海産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질에서는 海産物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해역·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표2]는 朝鮮時代의 각종 지리서에 등장하는 제주 토산물 중에서 해산물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특산으로 평판이 높았던 것은 해조류와 조개류였다. 특히 제주도산 미역[藁]은 오래전부터 교역품으로 이용되었는데, 高麗 말기에는 耽羅에서 나는 ‘海菜’의 명성이 멀리 중국인에게도 퍼져있었다고 한다.²⁵⁾ 이러한 경향은 [표1]의 12에서 “미역은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라 언급하는 것처럼 15세기 초기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조선시대 지리서에 보이는 제주도 특산 해산물

서명	『世宗實錄地理志』 (1454)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耽羅志』 (1653)	『南宦博物』 (1703)
물품명	玳瑁·全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布	海獺·蠙珠·玳瑁·貝·鸚鵡螺·無灰木·藁·牛毛·蟹·螺·鰻·黃蛤·海衣·烏賊魚·銀口魚·玉頭魚·鯊·刀魚·古刀魚·行魚·文魚	海獺·蠙珠·玳瑁·貝·鸚鵡螺·鰻·藁·牛毛·蟹·黃蛤·玉頭魚·銀口魚·鮫魚·刀魚·古刀魚·行魚·文魚·望魚·生魚·藁·牛毛·無灰木·	鮫魚·鰻魚·鯨魚·文魚·望魚·刀魚·古刀魚·行魚·生魚·玉頭魚·飛魚·銀口魚·秀魚·烏賊魚·魴魚·鰻·海蔘·紅蛤·蠙珠·玳瑁·貝子·鸚鵡螺·牡蠣·海獺·藁·靑角·黃角·牛毛

이어서 조개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眞珠다. 1079년에 耽羅勾當使가 高麗國王에게 眞珠를 헌상했는데, 그 빛나는 것이 마치 별과 같아서 ‘夜明珠’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⁶⁾ 또 1276년에는 大元에서 林惟幹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眞珠를 채취케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반 民人에게서 眞珠 100여개를 탈취해 갔다고 한다.²⁷⁾ 이로부터 제주도산 眞珠의 가치는 高麗 뿐

24) 제주도 수취체제의 특성에 관해서는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16, 1996 ; 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등 참조.

25) 명의 성립 직후에 漢地의 江南 일대에서 ‘蘭秀山의 亂’이란 무장 봉기를 舟山群島의 해상세력이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의 토벌군에 패배한 뒤 제주도로 도망한다. 그런데 이들 세력의 일부는 제주도에서 ‘海菜’를 매입하여 타지역에 行商으로 잠입하려 했다. 이에 관해서는 藤田明良의 전제논문을 참조.

26) 『高麗史方』 卷9, 文宗 33년 11월 壬申條 :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27) 『高麗史方』 卷28, 忠烈王2年 윤3월 丁酉條 : 元遣林惟幹及回回阿室迷里, 來採珠于耽羅. ; 『高麗史方』 卷28, 忠烈王2年 6월 壬申條 : 林惟幹採珠耽羅, 不得, 乃取民所藏百餘枚, 還元.

만 아니라 漢地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산 海産物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물품은 다름 아닌 ‘전복’이었다. 전복은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의 해상교역에서 주된 상품이었던 동시에 대외교섭에 수반되는 물품으로서도 중요시되었다.²⁸⁾ 이러한 경향은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표2]의 각 지리서에도 ‘鰓’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豆禿也只(頭禿也只)·頭無岳·鮑作人(鮑作干·鮑作輩·鮑作漢) 등으로 불리는, 전복 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以船爲家’라는 생활형태로 행용되는 이들 집단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충청도를 비롯한 한반도 연안을 무대로 전복을 채취하였다.²⁹⁾

이처럼 鮑作人과 같은 집단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서 전복을 채집한 까닭은 당시 朝鮮에서 전복이 중요한 공납품이었기 때문이었다. 金尙憲의 『南槎錄』에는 “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 늙어 죽는 자가 많다. 그 이유를 물으니 ‘本州가 공물로 바쳐야 할 鰓魚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公務를 빙자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됩니다. 浦作輩는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流亡하거나 溺死하여 열에 두셋만이 남게 되었습니다.”³⁰⁾라고 하여 당시의 과중한 부담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1489(成宗 20)년 전라도와 충청도를 순시하던 敬差官 李誼는 鮑作人과 당시 연안일대에서 횡행하던 水賊이 서로 표리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¹⁾ 전복 進上의 과중한 부담이 鮑作人의 流民化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朝鮮은 제주도에 대한 田稅 수취를 포기하는 대신 예로부터 특산으로 알려져 왔던 물품을 貢納制 속에 편입시켜 進上品으로 수취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겠다. 이 중에서 ‘전복’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계를 도모하는 수단 중 하나였지만,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왕조국가의 수취체계 속에 편입되어 제주도 고유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틀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물품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복이 이동하는 ‘길’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 시기에는 어떠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복의 길’에는 ‘交易品の 길’이 역사적 기층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위로 ‘進上品의 길’이 또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朝鮮의 제주도 지배가 관철되어 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進上品의 길’이 대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交易品の 길 또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된다. [표1]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이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의 교역으로 제주도민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明朝 정권의 성립 이후 海禁-朝貢 체제가 동북아시아 해역질서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시아 해상 교역은 철저하게 국가 간 公貿易에 한정되고 일체의 私貿易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교역 역시 공식적으로는 朝鮮이란 국가 내의 역내 교역에 국한되면서 이전과 같은 활발한 대외교역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許筠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屠門大嚼』(1611년)은 한반도 각지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식재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³²⁾ 여기에 ‘大鰓魚’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주에서 나는

28) 예를 들어 日本의 고대사료 “延喜式”이나 헤이조쿄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8세기 이후 肥後國(현재의 熊本縣 일대)과 본고국豊後國(현재의 大分縣)이 進貢品으로 ‘耽羅鰓’을 바쳤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耽羅鰓’이 전복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복의 産地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연구사상 논쟁이 있으나, 耽羅와 鰓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점 자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9) 高橋公明의 전계논문들을 참조.

30) “南槎錄方9월 22일조(p.100).

31) “成宗實錄方卷226, 成宗 20년 3월 癸酉條: “如此之人, 不知其幾千人也, 而一朝定爲常賦之役,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也.”

32) 許筠은 “屠門大嚼”기 서문에서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다가 강릉에서 기거하였고 이후 벼슬살이를 하면서 전국을 주유했는데, 이때 전국에서 나는 기이한 해산물과 별미를 골고루 맛보았다고 회고하고

것이 가장 크다. 맛은 작은 것보다는 못하지만 華人이 매우 귀히 여긴다³³⁾”라고 하여 당시 제주도산 전복이 중국인에게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海禁-朝貢 체제하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제주도산 전복이 중국에 알려진 계기는 제주도민의 자체적인 전복 교역이 아니라 明朝와 朝鮮 양국의 朝貢·冊封 관계를 통해서였으리라 추정된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전례에 濟州 全鮑를 구매하여 대접하는 것이 수천 貼에 이르렀는데, 사람을 보내 반값만 지불하고서 사 오곤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絶島의 백성들이 원망과 고통이 필시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구매하여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하물며 중국 사신이 반드시 全鮑를 찾는다든 보장도 없을진대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설령 중국 사신이 全鮑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대신 주면 될 것이니, 더 구매하는 일은 중지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미 보낸 절반의 물품 값 역시 환수하지 말도록 하여 전일에 억지로 팔게 했던 일을 보상해 주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광해가 따랐는데 그 뒤에 과연 전복의 용도에 부족한 점이 없었다.³⁴⁾

이 사료는 月沙 李廷龜(1564~1635)의 行狀에 실려있는 일화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반드시 전복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중국 사신측에서 전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중국인이 제주도산 전복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상 明朝와 朝鮮 양국 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산 전복이 朝鮮으로의 進上을 경유하여 외국과 접하게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이야말로 海禁-朝貢 체제하 ‘전복의 길’이 맞이한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종래 ‘交易品의 길’과 ‘進上品의 길’이란 두 갈래의 길에 의해 지탱되던 ‘전복의 길’은 이제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새로운 길로 재편된 것이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15세기의 元·明 교체를 기점으로 하여 제주도산 ‘전복의 길’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범박한 試案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5세기 이전 제주도의 사회경제는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이 기층에 자리 하면서 大元の 지배 이후 말 목장 경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말의 進上和 교역이 그 위에 표층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다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더하여 열악한 토지 생산성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15세기 이전 제주도는 ‘交易品’과 ‘進上品’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를 교차하는 ‘물품’들에 의해 사회경제의 기본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하였다.

(2)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가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는 元·明 교체에 의한

있다(“惺所覆瓿藁方卷25, 「屠門大嚼引」).

33) “惺所覆瓿藁方卷26, 「屠門大嚼」: “大鮑魚, 產濟州者最大. 味不及小者, 而華人極貴之.”

34) 趙翼, “浦渚集方卷34, 「議政府左議政諡文忠李公行狀」: 接待故事, 買濟州全鮑至數千貼, 差人給半價以貿. 公啓, 絶島之民, 怨苦必多. 前買餘儲, 亦足支用, 況天使不必求鮑魚, 設求之, 亦可代給他物, 請寢加買. 且所送半價, 亦勿還收, 以償前日抑買. 光海從之. 其後鮑魚用不乏.

朝貢-海禁 체제의 구축이다. 종래 국가 간의 公貿易 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私貿易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동북아시아 해역은 새롭게 성립된 明朝 정권의 강고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일체의 대외교역이 국가 간의 公貿易으로 일원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영유권을 차지한 朝鮮王朝은 이 지역에 貢納制에 기반을 둔 수취체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도 지배를 관철해 나간다. 그 결과 이제까지 제주도산 전복이 이동하던 주요한 ‘길’이었던 ‘交易品의 길’과 ‘進上品의 길’ 중에서 전자가 역내 교역으로 축소되며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 해상교역의 결절점으로서 제주도가 갖고 있던 지위 상실을 ‘전복의 길’의 변화를 통해 간취할 수 있다.

元·明 교체에 의한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와 대조적인 사례는 琉球王國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海禁 정책으로 인하여 명으로의 직접적인 도항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15세기에는 아시아 해역에서는 중국 물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중계무역거점이 번성하였다. 15세기초에 통일된 류큐왕국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국가로서 크게 번영하였다. 이를 가능케 한 전제조건은 朝貢-海禁 체제하에서 독자적인 왕권을 보유하면서 明朝를 종주국으로 인정하는 冊封國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 1609년 이후 日本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도 琉球가 일정 수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淸·日 양국이 통교관계를 맺지 않은 하에서 日本의 對淸 창구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었던 점이 주효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海域史 연구의 진전을 통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琉球王國·舟山群島·對馬島와 같은 동북아시아 해역 속 島嶼의 역사적 전개를 규명한 다양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元·明 교체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변동 속에서 각 島嶼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은 흥미로운 비교연구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 島嶼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물품’이 이동한 ‘길’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본고는 제주도산 ‘전복의 길’을 소재로 삼아 이를 위한 초보적인 시도를 해본 데 지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陽村先生文集』
『保閑齋集』
『耽羅志草本』
『高麗史』
『三國志』
『惺所覆瓿藁』
『浦渚集』
『南槎錄』
『南宦博物』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2. 한국어문헌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 1986.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김나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鮑作의 사회적 지위」, 『역사민속학』 29, 2009.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 2003.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1997.
박찬식, 「耽羅巡歷圖 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2000.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劉序楓, 「표류, 표류기, 해난」, 桃木至朗(유희)/최연식(유희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장혜련, 「조선후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경계』 69, 2008.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 31, 2007.

3. 일본어문헌

網野善彦,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日本の古代 8 海人の伝統』, 中央公論社, 1987.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海と列島文化 4 : 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今村鞆, 「濟州の鯨」,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檀上寛,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藤田明良, 『『蘭秀山の乱』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 一四世紀の舟山群島と高麗·日本』, 『歴史學研究』 698, 1997.

-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青丘学術論叢』 19, 2001.
- 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海村の視点から」,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2009
- 長森美信, 「18世紀濟州地域の凶年と賑恤策」, 『朝鮮學報』 193, 2004.
- 森公章, 『古代日本の対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 岩井茂樹, 『朝貢・海禁・互市：近世東アジアの貿易と秩序』, 名古屋大學出版會, 2020
- 六反田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濟州啓録』を中心に」, 『年報朝鮮學』 7, 1999.
- 梁聖宗, 「木簡の『耽羅鰐』についての一考察：現存する最古の記録遺物を読む」, 『耽羅研究会報』 11, 1994.

종합토론 토론문

■ 좌장

노대환(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토론

제1발표 토론자 : 박연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2발표 토론자 : 전영준(탐라문화연구원)

제3발표 토론자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4발표 토론자 : 신경미(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5발표 토론자 : 이승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고수미,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과 교류 양상」에 대한 토론문

박연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과 교류 양상」 고려사에 관한 대표적 문헌인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탐라의 진상을 중심으로 한 물품교류의 양상을 논의한 글이다. 특히 시기를 나누어 탐라가 고려에 대해 독립적이었던 고려 전기와 고려에 복속된 후기, 또 복속 이후 원(元)의 등장으로 인해 원과 고려로부터 이중으로 지배를 받고 물자를 수탈당했던 기간 등 시기별로 달라지는 진상의 양상을 고려사 관련 기록을 토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탐라의 물품교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물론, 고려시기 탐라의 위상이나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탐라를 비롯한 소위 ‘번국(蕃國)’에 대한 고려의 지배·통제방식의 일단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닌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겼고, 또 논문의 완성을 위해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으니 이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1. 탐라의 고려에 대한 진상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팔관회 참여에서 나타나는 進獻(獻貢方物) 기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려에 있어 팔관회의 정치적, 외교적 의미도 좀 더 깊이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팔관회와 같은 행사·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품의 진상이,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가 아닌 보다 일반적인 물자의 교류(진상을 포함해서)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
2. 고려에 있어서 탐라로부터의 진상과 공물이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었나에 대해 알고 싶다.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탐라의 고려에 대한 진상 품목의 종류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특히 탐라의 빈곤함을 거론한 대목, 또한 탐라는 사실상 고려에 조세를 바치지 않았다는 점(p.9)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탐라의 진상은 역시 그 경제적 기능이나 의미를 가늠하기 보다는 주로 고려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즉, 탐라의 고려에 대한 진상의 주요 목적과 기능, 그리고 고려에 있어서 탐라의 의미와 역할 등을 보다 상세히 밝혀준다면 훨씬 논지가 명확해질 것이다.
3. 한편 탐라로부터 진상받은 물품 자체가 고려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점은 없는지, 또 반대로 고려나 원으로부터 탐라로 유입된 물자들이 탐라의 문화, 또는 정치구조, 사회관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면 단지 수동적 도구나 매개로서의 역할을 넘어 인간사회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력과 요인으로서의 물품에 대해 조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령 맺음말에서 ‘...원의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목축문화가 유입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제주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듣고 싶다. 다양한 연구거리를 제공해주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4. 2, 3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본문과 맺음말에서 두어 차례 언급한 무역거점으로서의 탐라의 위상이다. 발표자는 탐라가 남송, 원, 고려, 일본, 서역과 같은 국가들의 해상교류의 중간 기착지로 교역의 거점 역할을 했다고 서술한 바, 그렇다면 이는 그야말로 동유라시아 해상 무역에 있어서 탐라가 그 거점이 되었다는 중대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어 다소 아쉽다.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탐라의 중요성 및 그 진상이나 공물의 중요성도 충분히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교역의 거점으로서의 탐라를 말해주는 (국내외)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벽란도와 같은 당대 국제무역의 거점과 비교했을 때 탐라의 무역거점으로서의 성격은 어떠한가 등을 밝혀주었으면 한다.

설배환, 「고려는 특수했는가? :
몽골제국 부세 체제와 고려」에 대한 토론문

전영준(탐라문화연구원)

이승호,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에 대한 토론문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최근 고대 耽羅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자의 증가로 인해 탐라의 실체가 조금씩 정립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5~8세기 탐라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에 대해 발표해주신 이승호 선생님의 발표내용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는 중요한 고견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두에서 탐라국의 대외교섭을 백제 혹은 신라사와 같은 외부의 관점에서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탐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외교섭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견해에 토론자 역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다.

한국고고학의 변방인 탐라고고학을 전공하는 토론자로서는 이와 같은 학문적 교류와 상호 토론의 기회를 통해 고대 탐라정치체의 실제적 규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구하고자 한다. 다만 토론자의 문헌적 지식이 부족하고 고고학적 자료에 치중하여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질문의 각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로 제주도와 영산강유역의 5~8세기대 고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다.

발표자께서는 「5~8세기대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에 대한 발표문에서 크게 3가지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주호의 교류대상인 中韓의 해석 문제, 6세기 초 珂를 고구려에 진상했던 涉羅의 정체, 7세기 이후 對日관계와 耽羅鯨의 교류문제로 요약된다. 이처럼 진상·조공품을 통해서 탐라가 한반도 정치세력 및 중원지역 그리고 왜와의 교류양상을 논의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이에 대응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三國志』에 등장하는 주호의 교류대상에 대한 논의이다. 발표자께서는 “市買中韓”의 대상을 중국과 삼한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향 출토 중국화폐와 제주전역의 한식 유물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大泉五十과 貨布가 남한지역에서 제주에서만 출토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화폐는 한사군(낙랑)과 한반도는 물론 제주도와 거문도 그리고 일본열도의 연안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는 지금의 US달러와 같은 재화의 가치로서의 교환이라는 기능을 인식하면 주변의 諸國간 국제무역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화폐는 위세품, 의례용, 청동기 원료, 분묘의 껍질, 문거리, 출입증의 역할, 군현 상인들의 교역권을 확장할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김경주, 2013: 143쪽).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수반한다면 화폐의 출토만으로 제작지 혹은 기원지와 연결하여 직접적인 수입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화폐가 주로 통용되는 기원전 1~기원후 1세기대는 삼한이 중원(낙랑)지역과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었고 특히 경남 사천 낙도 패총에서는 中原과 馬韓, 州胡, 倭에서 생산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예컨대 주호에서 제작된 토기 역시 경남 사천 낙도패총과 전남 해남 군곡리패총, 나주 수문패총과 북암리유

적, 광주 신창동유적 등에서 모두 확인된 바 있다. 반대로 제주에서도 늑도와 군곡리패총 등에서 제작·생산된 토기가 유입된 사례가 있다.

한편 한반도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남부지역과 일본열도에서도 漢式土器가 확인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한식토기의 출토사례가 없다. 따라서 고고학적 자료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주호와 한군현(낙랑) 상인간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주호가 국제무역항인 사천 늑도패총 집단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곳에서 거래되던 다양한 한식유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식유물의 유통과 도입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사군과 삼한의 교역에 관한 문헌사적 입장에서 발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

두 번째, “中韓”에서 韓은 삼한을 칭하고 “中”은 중국을 의미하여 중국과 삼한으로 해석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中”은 漢나라 중심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한사군 혹은 삼국과 서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느 국가를 비정하느냐에 따라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탐라가 중원지역과 직접적인 교역을 하였다면 중원지역의 다양한 토기가 유입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삼한과의 교류과정에서 기원지의 토기가 제주에서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문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愚問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셨으면 한다.

세 번째,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발표자는 우선 476년 백제 문주왕에게 방물을 바쳤다는 기사는 탐라의 능동적인 외교 행위의 결과로 인식하고 498년 탐라를 정벌하기 위한 무진주 진출은 부여가 물길에 쫓겨 고구려에 귀부한 문자명왕 3년(494)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의 남천이 고구려의 강공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탐라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하던 고구려와의 국제적 교류를 확장하고 珽의 조공을 통해 교섭을 강화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고자료를 살펴보면 5세기 후반 이전까지 무진주 일대에 백제취락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영산강유역이 6세기 중반까지도 백제계 묘제의 축조 역시 알려진바 없다. 이때까지도 서남해안의 마한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주 북암리와 반남고분군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에 전형적인 백제계토기가 출현하는 것은 5세기 후반 이후에 해당하지만 백제양식 보다는 왜계와 가야계토기가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영산강양식의 마한계토기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6세기 중엽 이후로 해석되고 있다(徐賢珠, 2006: 213~221쪽). 게다가 6세기 전반까지 제주지역에서도 백제양식의 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5세기 후반 동성왕의 무진주 진출과 관련되어 제주가 백제의 영역화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고자료로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물론 고고유물의 출현과 전세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백제계 유물의 이입이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7세기 이전의 백제토기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성왕 20년(498)에 탐라를 친정하기 위해 백제군이 무진주에 집결하는 것으로 보면 그 이북 지역은 대체로 백제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李鎔彬, 2002: 126~127쪽). 그러나 동성왕이 축조한 沙井城(498년)과 炭峴(501년)의 목적은 집권 후반기 신라와의 우호관계가 이완되면서 대신라 방어성을 구축하려는 성격이 짙다(張彰恩, 2016: 115~117쪽). 따라서 백제가 고구려는 물론이고 신라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왕이 직접 바다 건너 탐라를 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498년 동성왕의

무진주 진출은 탐라(제주)를 정벌할 정도로 위엄을 과시하면서 이 지역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고자 한 의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재운, 2008: 252쪽). 동성왕대 나제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방어했다면 무녕왕대 이후에는 백제 단독으로 고구려를 방어할 수 있었다(이희성, 2018: 13쪽). 이로 인해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한성지역 일부를 회복하고 남방경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러한 영역확장 과정에서 탐라를 간접지배의 영역화로 포함시키고 신속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5세기 후반(498년) 동성왕의 무진주 진출을 통해 탐라가 백제와 종속관계에 있고 당시 탐라는 제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백제의 영역확장 과정과 동성왕대 고구려의 남진 상황을 고려하면 탐라를 제주로 인식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위한 정벌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동성왕 무진주 친정설에 등장하는 탐라(탐모라)를 제주로 비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목표이며 사실은 무진주 아래의 나주와 영암을 비롯한 해남·강진지역의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논의한 바와 같이 동성왕의 직접적인 친정 대상이 탐라가 아닌 서남해안 지역에 자리하던 재지집단인 마한세력에 대한 군사정치적 장악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발표자는 고구려와의 외교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백제 동성왕이 바다 건너 탐라에 대한 압박을 통해 고구려와의 교섭을 차단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신라와 왜에 대한 군사적 동맹을 통해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발표자의 추가 의견을 듣고 싶다.

네 번째, 발표자는 섭라가 고구려에 진상했던 품목인 珮를 해산물이 풍부한 제주의 ‘조개로 만든 말재갈 장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공외교는 백제의 남침과 함께 고구려의 강공에 대한 탐라의 다각적인 외교적 교류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고자료에서도 고구려와 관련된 물질문화가 일부 드러나야 하지만 아직까지 탐라의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珮를 조개로 인식한다면 오히려 남해와 서해안 일대의 다종다양한 조개에서 찾는 것이 빠를 듯하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산출되는 조개의 종류는 한계가 있으며 그 수량에서도 타 지역에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5~9세기대 조개 패각류가 출토되는 유적은 그리 많지가 않다. 예컨대 종달리패총에서 수습된 이매패류를 살펴보면 자패가 41.4%, 대복은 31%로 가장 많이 출토된다. 다량 출토된 2종은 현재 제주도 동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나 자원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출토된 패류는 대부분 현재도 식용으로 이용되는 종들이다(강경표, 2015: 391~392쪽). 종달리패총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6층과 7층에서 자패의 패각이 다량 퇴적되어 있다. 같은 층위에서 동반되는 고고학적 유물조합을 살펴보면 대체로 5세기 중반경~9세기 전반 이전으로 파악되고 있다(朴宰賢, 2014: 58~60쪽).



제주지역에서 서식하는 조개류의 종류와 수량의 한계, 고구려계 유물의 부재 그리고 백제토기의 희소성은 당시 탐라의 활발한 직접적인 교류대상이 고구려와 백제를 가리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5~8세기대 탐라는 이전까지 영산강유역의 마한과 동남해안 지역의 남부가야 세력과의 지속적인 교섭관계를 유지하면서 백제와는 다소 느슨

한 정치적 신속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2년 2월조의 “武德(618~626년) 이래 백제에 신속하였기 때문에 佐平으로서 官號를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는 기사를 참고하여 탐라국이 이전까지 간접지배를 받는 조공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7세기 초반 무렵에 탐라국의 왕이 佐平 관직을 받으면서 백제의 직접지배 형태로 전환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헌기록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7세기 전반까지도 제주지역에서 전형적인 백제양식의 토기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백제계 묘제양식은 아직까지 전혀 축조된바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백제의 탐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연관된 고고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512년)한 이후 막바로 신라문화를 비롯한 신라화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이청규, 2016: 313~314쪽; 김경주, 2018: 39쪽). 따라서 직접지배의 형태로 전환되었다면 백제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고 이에 따라 백제식 규격을 갖춘 분묘의 축조와 백제토기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문헌기록에 바탕을 둔 고고자료의 정합적인 사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 번째, 섭라에 대한 논의이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13년(504) 여름 4월의 내용 가운데 涉羅를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제주도로 보는 견해는 이병도의 『國譯 三國史記』를 따르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섭라는 504~507년 사이에 백제에게 합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사에 魏나라의 世宗이 “부여와 섭라로 하여금 옛터를 회복케 하라”는 내용으로 볼 때 섭라는 제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섭라로 하여금 옛터를 회복케 하라는 내용은 백제에 병합하기 이전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04~507년까지 존속했던 섭라는 백제 주변에 있었던 小國이기 때문에 옛 땅을 회복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섭라를 제주로 비정할 경우 이미 504~507년경 백제에 병합되어 있었는데 다시 『日本書紀』의 508년 첫 통교를 하였다는 기록과 서로 상반된다.

이처럼 504~507년경 섭라가 백제에게 합병되었음을 알게 된 탐라가 508년에 처음으로 백제와 通交한 것은 아닌가 한다. 또한 倭國은 계체천왕 즉위 후 분열된 각 지역의 토착세력을 통합하여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서 대외관계를 부활시키고 선진문물을 도입하고자 계체천왕 즉위 3년 후인 509년에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朴珉慶, 2014: 46~47쪽). 이와 같이 섭라의 병합과 탐라의 첫 통교 그리고 왜국의 사신파견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모두 504~509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탐라의 신속과 관련된 문제도 이러한 사건들과 연계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일본서기』의 백제 관련기사는 백제유민이 『百濟三書』를 기반으로 찬술에 동참하였음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탐라와의 통교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백제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대로 중국측 사료인 『魏書』 「高句麗傳」의 경우 지리적 거리는 물론이고 정보수집과 외교적 입장을 심분 고려하더라도 『일본서기』의 백제계 찬자들이 기술한 내용보다 구체적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참고문헌〉

- 강경표, 2015, 「종달리 1819번지 유적 출토 패각류 분석」,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韓國文化財財團.
- 김경주, 2013,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김경주, 2018,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 朴珉慶, 2014,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朴宰賢, 2014, 「濟州島 耽羅時代土器 研究-종달리패총을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徐賢珠, 2006,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學研文化社.
- 李鎔彬, 2002, 『百濟 地方統治制度 研究』, 서경.
- 이청규, 2016,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景仁文化社
- 이희성, 2018, 「백제 성왕의 국호 개칭과 정치적 지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張彰恩, 2016,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 45.
- 정재윤, 2008, 「백제의 섬진강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김병모, 「조선시대 阿膠와 魚膠의 진상과 소비」에 관한 토론문

신경미(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김병모 선생님의 「조선시대 阿膠와 魚膠의 진상과 소비」는 아교와 어교의 공납, 이동, 활용처를 밝혀 아교와 어교의 ‘물품’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 못했던 아교와 어교에 대해 발표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표문의 종결에서 아교와 어교의 소비문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제가 선생님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 않고, 아직 배움이 짧아 발표문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후학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문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논문의 구성

현재 발표문은 아교와 어교의 종류/ 공납지역/ 생산과 소비지로의 이동/ 용처와 소비량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구성이 발표자의 논지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이 좀 더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아교와 어교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교와 어교의 경우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인 만큼 제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물품으로서의 아교와 어교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물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구조 속에서 아교와 어교가 주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아교와 어교의 활용

발표자께서는 아교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가능하면 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기록방식에 따라 아교의 경우 접착제가 아닌 약재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서두에 설명하셨는데,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교의 경우 접착제가 아닌 약재로서의 활용이 더 높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약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공부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녹각교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젤리와 묵과 같은 형태로 만든 약재인데 이 약재를 만들기 위해 녹각을 물에 끓여 여러 약재를 첨가하여 묵과 같은 원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각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녹각이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이 부스러기를 모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녹각교의 경우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접착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약재로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질의에서 밝혔듯이 제작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3. 제한적 사료 인용

발표자께서는 아교와 어교가 공부대상이었다고 하시면서 생산지역과 공납지역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발표문에 거론되지 않은 많은 어종이 어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는 결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들 알고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조선의 부세제도는 많은 폐단을 드러냅니다. 특히 공납의 문제는 더욱 크게 생겨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방 각 읍을 대상으로 分定하는 것이 상례였던 공물이 오랜 기간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되면서 민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공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조선시대 물품의 공납과 물품의 생산지가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발표자께서도 조선전기의 사료인 『세종실록지리지』 뿐 아닌 후대의 여러 자료를 활용하시어 세금대상으로의 아교와 어교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교와 어교의 소비문화와 관련해서도 의궤나 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료를 활용하시면 오히려 소비문화에 중점을 둔 논문 한편도 새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후학자의 자세로 선생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 제주도의 아교·어교

이번 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다보니, 글을 읽으면서 제주도의 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았는데요. 글에서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공납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제주도만의 아교와 어교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어류가 많이 잡히고 말이나 돼지가 많아서 이들을 활용한 제주도만의 아교와 어교가 있을 것도 같은데 발표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임경준, 「近世 동북아시아 海域과 ‘全鰓’의 길 -제주도 특산품 全鰓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승민(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1. 논문의 의의

그동안 제주사 혹은 제주해역사 연구에서 全鰓 혹은 전복을 잡는 鮑作人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 발표문은 ‘교역품의 길’에서 ‘진상품의 길’로 나아가는 ‘전복’이라는 물품의 이동경로를 고찰하여 근세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 한다면, 동양사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15세기를 전후한 시기 중국대륙에서의 원·명 교체와 이에 따른 朝貢-海禁 체제의 구축이 동북아시아 해역 속 제주도에 야기한 변동에 대하여 조망한 연구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머릿말에서 清朝史를 전공하는 비전공자가 제주도를 둘러싼 해역사에 관한 글을 발표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론자 역시 조선과 일본, 그중에서도 대마도와의 교역관계를 주로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 제주의 역사에 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라 개별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를 듣고 몇 가지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질문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朝貢-海禁 체제와 제주도

발표자께서는 원·명 교체로 성립된 명 정권이 취한 ‘朝貢-海禁’ 체제가 동북아시아 해역에 자리 잡은 것을 제주도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실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원나라가 국가 주도의 공무역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대외무역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하여, 왜 명나라는 민간무역을 철저히 억누르고 대외무역도 明朝 주도의 조공-책봉 관계에 얽매이는 폐쇄적인 정책을 견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발표문 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제주도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사실 논지를 따라가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밀무역의 가능성?

발표자께서는 [표1]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15세기 제주도민 생계문제 기사와 관련하여 조선왕조 성립 이후 제주도의 지리적 상황과 함께 제주도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를 영위하여 나가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셨습니다. 牛馬나 해산물과 관련된 교역 기사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교역이 중심을 이루던 것이 점차 진상도 하나의 충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교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공-해금’ 체제 하에 놓인 당시 특성상 동북아시아 해상교역은 철저히 국가 간 공무역에 한정되고 일체의 사무역은 위법행위로 간주되면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제주의 교역 역시 이것은 조선이란 국가 내의 역내 교역에 국한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밀무역을 통하여 제주가 외국과 교역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물론 밀무역이라는 특성상 기록의 한계가 있지만), 이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교역품의 길'에서 '진상품의 길'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진상·증여품을 통해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입니다. 제주도 특산품인 전복이 역사적으로 이동한 길이 '교역품의 길'이 역사적 기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위로 '진상품의 길'이 또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었는데, 조공-해금 체제가 정착되고 조선 제주도 지배가 관철되면서 점차 '진상품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발표자의 설명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교역품으로서의 전복에 비하여 진상품으로서의 전복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나 자료 제시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발표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동북아시아 속 島嶼의 위치

발표자께서는 맺음말에서 간단하게나마 원·명 교체에 의한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와 대조적인 사례로 류큐를 제시하셨습니다. 비교사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조선후기 쓰시마의 경우 독자적인 왕권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 막번 체제 하에서 對조선 외교·무역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도와 류큐의 중간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속의 각 島嶼의 위치에 관하여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밑그림이 있으시다면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역사의 전개·변화과정 속에서 각 島嶼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물품'이 이동한 '길'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혹시 본 발표에서 다루신 전복 외에 이러한 양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